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of New  
Zealand

2006. 12

연구책임자 : 장 지 원

## 연구과제자문위원회명단

###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종인 행정자치부 혁신정책관  
(가나다 순)

## 발 간 사

행정지식은 국내외의 행정관련 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행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와 조사가 행정과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개발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설립이후 다른 국가의 행정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정부조직을 시작으로 1997년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1998년 프랑스 중앙정부조직, 2000년에는 중국, 2002년에는 일본, 2004년에는 미국, 2005년에는 캐나다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뉴질랜드 연방정부조직에 대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2005년 이후 연방정부조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Cabinet Manual, State of the Development Goals Report 2006, Guidance to Departments in Relation to Crown Entities 2006, State Services Commission, Treasury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기초로 30개 중앙정부조직과 주요 소속기관, 42개 독립행정기관, 15개 공기업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췌록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조사가 행정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연구책임자인 장지원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韓國行政研究 院長 鄭 用 德



## 차 례

|                              |          |
|------------------------------|----------|
| <b>제1장 서 론</b> .....         | <b>1</b> |
| 제1절 연구목적 .....               | 1        |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 4        |
| 제3절 기대효과 .....               | 5        |
| <b>제2장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b> ..... | <b>6</b> |
| 제1절 뉴질랜드의 개관 .....           | 6        |
| 1.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         | 6        |
| 2. 인구 및 자연환경 .....           | 6        |
| 3. 사회문화적 특성 .....            | 7        |
| 제2절 주요역사 .....               | 10       |
| 제3절 뉴질랜드 통치기구의 개요 .....      | 13       |
| 1. 헌법 및 정치체제 .....           | 13       |
| 2. 정치체제 .....                | 14       |
| 3. 입법부 .....                 | 15       |
| 4. 사법부 .....                 | 19       |

|                                                                |           |
|----------------------------------------------------------------|-----------|
| 제4절 뉴질랜드 지방행정의 개요 .....                                        | 21        |
| 1. Regional Council .....                                      | 21        |
| 2. Territorial Authority .....                                 | 21        |
| 3. Special Authority .....                                     | 21        |
| 제5절 뉴질랜드의 정부개혁 .....                                           | 23        |
| <b>제3장 뉴질랜드의 중앙정부조직 .....</b>                                  | <b>26</b> |
| 1. 중앙관리기구(Central Agencies) .....                              | 32        |
| 2. 정책권고 부처(Mainly Policy Advice) .....                         | 32        |
| 3. 조세·이전관련부처(Mainly Taxes and Transfers) .....                 | 33        |
| 4.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Mix of Policy and Delivery) .....               | 33        |
| 5. 주요재화 및 서비스 제공부처 .....                                       | 34        |
| 제1절 내각사무처(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br>Cabinet) .....   | 35        |
| 1. 국가정보보안국(Government Communications<br>Security Bureau) ..... | 38        |
| 2. 대외평가국(External Assessments Bureau) .....                    | 41        |
| 제2절 공공관리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 .....                    | 42        |
| 1. 리더십 개발센터(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               | 46        |
| 2. 공무원 훈련기관(Public Sector Training Organization) .....         | 47        |

|                                                                 |    |
|-----------------------------------------------------------------|----|
| 제3절 재무부(The Treasury) .....                                     | 50 |
| 1. 수출신용청(Export Credit Office) .....                            | 55 |
| 2. 부채관리청(New Zealand Debt Management Office) .....              | 56 |
| 3.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Crown Company Monitoring<br>Advisory Unit) ..... | 58 |
| 제4절 문화유산부(The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br>.....       | 61 |
| 1. 문화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 .....                          | 65 |
| 2. 영화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                     | 68 |
| 3. 유적관리재단(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              | 69 |
| 4. 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                   | 71 |
| 5. 국립박물관(Museum of New Zealand Te papa<br>Tongarewa) .....      | 73 |
| 6. 방송표준원(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                | 75 |
| 7. 방송위원회(New Zealand On Air) .....                              | 77 |
| 8.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Sport and Recreation New<br>Zealand) .....       | 79 |
| 9.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Drug Free Sport New<br>Zealand) .....           | 82 |
| 제5절 환경부(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                 | 84 |
| 1. 환경위험관리청(Environmental Risk Management<br>Authority) .....    | 88 |

|                                                                         |         |
|-------------------------------------------------------------------------|---------|
| 2. 지역환경보존청(Environmental Bay of Plenty) .....                           | 90      |
| 3. 캔터베리환경청(Environment Canterbury) .....                                | 92      |
| 4. 남섬환경청(Environment Southland) .....                                   | 94      |
| 5. Waikato 환경청(Environment Waikato) .....                               | 99      |
| <br>제6절 건설주택부 .....                                                     | <br>101 |
| 1. 주택공사(Housing of New Zealand Corporation) .....                       | 104     |
| <br>제7절 과학기술·연구부(Ministry of Research,<br>Science and Technology) ..... | <br>108 |
| 1.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 .....                                           | 110     |
| 2.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br>& Technology) .....     | 112     |
| 3. 학술원(Royal Society of New Zealand) .....                              | 115     |
| 4. 벤처투자 재단(New Zealand Venture Investment<br>Fund) .....                | 117     |
| <br>제8절 마오리 개발부 .....                                                   | <br>119 |
| 1. 마오리 신용국(Maori Trust Office) .....                                    | 121     |
| 2. Maori 방송기금청(Maori Broadcasting Funding .....                         | 122     |
| <br>제9절 관세청(New Zealand Custom Services) .....                          | <br>125 |
| <br>제10절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 <br>129 |

|                                                                                        |         |
|----------------------------------------------------------------------------------------|---------|
| 1.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                                      | 133     |
| 2. 차단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 .....                                                | 136     |
| 3. 방역국(MAF Quarantine Service) .....                                                   | 139     |
| 4. 농산물 시장연구 및 개발기금(Agricultural and<br>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rust) ..... | 140     |
| <br>제11절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br>.....                              | <br>141 |
| 1.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br>Board) .....                          | 146     |
| 2. 광물국(Crown Minerals) .....                                                           | 148     |
| 3.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br>.....                         | 149     |
| 4. 관광청(Ministry of Tourism) .....                                                      | 151     |
| 5. 라디오 주파국(Radio Spectrum Management Group) .....                                      | 153     |
| 6. 기업사무국(Companies Office) .....                                                       | 154     |
| <br>제12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 <br>155 |
| 1. 보건지출·협정 및 규제순응국(HealthPAC) .....                                                    | 159     |
| 2. 임상훈련국(Clinical Training Agency) .....                                               | 159     |
| 3. 정보기술 공유서비스국(Information Technology Shared<br>Services) .....                        | 159     |
| 4. 국립검역국(National Screening Unit) .....                                                | 160     |
| 5. 안전의료장치청(Medsafe) .....                                                              | 160     |

|                                                                             |     |
|-----------------------------------------------------------------------------|-----|
| 6. 공공보건정보청(Public Health Intelligence) .....                                | 160 |
| 7. 뉴질랜드 보건정보 서비스청(New Zealand Health<br>Information Service) .....          | 161 |
| 8. 국립방사선연구국(National Radiation Laboratory) .....                            | 161 |
| 9. 국립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ttee) .....                                 | 162 |
| 10. 보건연구위원회(Health Research Council of New<br>Zealand) .....                | 162 |
| 11. 보건 스폰서십위원회(Health Sponsorship Committee)<br>.....                       | 165 |
| <br>제13절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                          | 166 |
| 1. 민방위 및 위험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se and<br>Emergency Management) ..... | 170 |
| 2. 인종관련 사무청(Office of Ethnic Affairs) .....                                 | 171 |
| 3. 자선사업위원회(Charities Commission) .....                                      | 171 |
| 4. 소방청(New Zealand Fire Service) .....                                      | 172 |
| 5. 영화 및 문학 등급분류 사무국 .....                                                   | 172 |
|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                        | 172 |
| 6. 영화 및 간행물 검열위원회(Film and Literature Board of<br>Review) .....             | 173 |
| 7. 뉴질랜드 복권보조금 이사회(New Zealand Lottery<br>Grants Board) .....                | 173 |
| 8. Kirk 기념재단(Norman Kirk Memorial Trust) .....                              | 174 |

|                                                                   |     |
|-------------------------------------------------------------------|-----|
| 9. Winston Churchill 기념재단(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 | 174 |
| 10. Chinese Poll Tax Heritage Trust .....                         | 174 |
| 11.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 .....                    | 175 |
| 12. 뉴질랜드 경정산업 위원회(New Zealand Racing Industry Board) .....        | 175 |
| 13. 환태평양 개발 및 보존재단 .....                                          | 176 |
| (Pacific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rust) .....                | 176 |
| 14. 평화 및 군비축소 교육재단 .....                                          | 176 |
| (Peace and Disarmament Education Trust) .....                     | 176 |
| <br>제14절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 177 |
| 1. 선거관리위원회(Chief Electoral Office) .....                          | 182 |
| 2. 범죄예방국(Crime Prevention Unit) .....                             | 183 |
| 3.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 183 |
| 4. 와이탕기재판소(Waitangi Tribunal) .....                               | 184 |
| 5. 마오리토지법원(Maori Land Court) .....                                | 184 |
| 6. 가정법원(Family Court) .....                                       | 184 |
| 7. 청소년법원(Youth Court) .....                                       | 185 |
| 8. 대법원(Supreme Court of New Zealand) .....                        | 186 |
| 9. 입법자문위원회(Legislation Advisory Committee) .....                  | 186 |
| 10.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 .....                                 | 187 |
| 11. 지역법원(District Courts) .....                                   | 187 |
| 12. 고등법원(High Court) .....                                        | 187 |

|                                                                               |     |
|-------------------------------------------------------------------------------|-----|
| 13.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                                              | 188 |
| 14. 판사행동조사국<br>(Office of the Judicial Conduct Commissioner) .....            | 188 |
| 제15절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                                          | 189 |
| 1. 노사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Service) .....                                  | 193 |
| 2. 국립여성고용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br>on the Employment of Women) ..... | 194 |
| 3. 직업안전 및 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br>Service) .....                | 194 |
| 4. 이민국(Immigration New Zealand) .....                                         | 195 |
| 제16절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 196 |
| 1. 직업 및 소득국(Work and Income) .....                                            | 202 |
| 2. 뉴질랜드 학생수당(StudyLink) .....                                                 | 202 |
| 3. 가족 및 지역사회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br>.....                         | 203 |
| 4. Heartland Services .....                                                   | 203 |
| 5. 장애인 사무청(Office for Disability Issues) .....                                | 203 |
| 6. 노인청(Office for Senior Citizens) .....                                      | 204 |
| 7.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Office for the Community<br>and Voluntary Sector) .....      | 204 |
| 8. 청소년 개발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                               | 205 |
| 9. 사회정책평가 및 연구위원회(Social Policy Evaluation                                    |     |

|                                                                                        |     |
|----------------------------------------------------------------------------------------|-----|
| and Research Committee) .....                                                          | 206 |
| 10. 가정지원국(Working for Families) .....                                                  | 206 |
| 제17절 환태평양지역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br>.....                              | 208 |
| 1. 오클랜드 지역사무소 .....                                                                    | 210 |
| 2.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사무소 .....                                                                 | 211 |
| 3. 환태평양사업신탁(Pacific Business Trust) .....                                              | 211 |
| 제18절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                                            | 212 |
| 제19절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 215 |
| 제20절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 219 |
| 1. 교직구인센터(TeachNZ) .....                                                               | 223 |
| 2. 교육심사청(Education Review Office) .....                                                | 223 |
| 3. 학력심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 223 |
| 4. 직업서비스청(Career Services Rapuara) .....                                               | 224 |
| 5.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 .....                                           | 225 |
| 제21절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                                                  | 226 |
| 1. 국립해양 및 대기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br>Atmospheric Research Limited) ..... | 229 |

|                                                                        |     |
|------------------------------------------------------------------------|-----|
| 제22절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
| .....                                                                  | 230 |
| 1. 뉴질랜드 남극연구소(New Zealand Antarctic Institute)                         |     |
| .....                                                                  | 233 |
| 2. 무역투자진흥공사(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     |
| .....                                                                  | 233 |
| 3.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                      | 234 |
| 4. 환태평양 협력재단(Pacific Cooperation Foundation) .....                     | 234 |
| 5.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New Zealand's International Aid<br>& Development) ..... | 235 |
| 제23절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 236 |
| 1. 항공안전국(Aviation Security Service) .....                              | 239 |
| 2.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                               | 240 |
| 3. 육상운송국(Land Transport New Zealand) .....                             | 241 |
| 4. 해상안전국(Maritime New Zealand) .....                                   | 241 |
| 5. 도로공사(Transit New Zealand) .....                                     | 242 |
| 6. 수송사고조사위원회(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br>Commission) .....     | 242 |
| 7. 항공조정공사(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br>Limited) .....         | 242 |
| 8. 기상공사(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br>Limited) .....        | 243 |
| 9. 철도공사(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                        | 243 |

|                                                           |     |
|-----------------------------------------------------------|-----|
| 10. 경찰청(New Zealand Police) .....                         | 244 |
| 11. 운송안전신탁(Road Safety Trust) .....                       | 244 |
| 제24절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              | 245 |
| 1. 자연보호청(New Zealand Conservation Authority) .....        | 249 |
| 2. 퀸 엘리자베스 2세 내셔널 트러스트(QEII National Trust) .....         | 249 |
| 3. 낚시 및 사냥협회(Fish and Game New Zealand) .....             | 250 |
| 4. 토착삼림 보존기금(Nga Whenua Rahui) .....                      | 250 |
| 5. 자연유적기금(Nature Heritage Fund) .....                     | 251 |
| 6.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 .....                                    | 251 |
| (Royal Forest and Bird Protection Society) .....          | 251 |
| 제25절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 .....                 | 252 |
| 1. 북부교정시설(Northland Region Corrections Facility) .....    | 256 |
| 2. Otago 지역 교정시설(Otago Region Corrections Facility) ..... | 256 |
| 3. 집행유예위원회(New Zealand Parole Board) .....                | 257 |
| 제26절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 258 |
| 1.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 .....                   | 261 |
| 2. 육군(New Zealand Army) .....                             | 261 |
| 3. 해군(Royal New Zealand Navy) .....                       | 262 |
| 4. 공군(Royal New Zealand Air Force) .....                  | 262 |

|                                                                      |            |
|----------------------------------------------------------------------|------------|
| 5. 국가정보안보이사회(Directorate of Defence Intelligence and Security) ..... | 263        |
| 6. 연합 대기권 지원처(Joint Geospatial Support Facility) .....               | 263        |
| 제27절 국가정보국(New Zealan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          | 264        |
| 제28절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 267        |
| 1. Alexander Turnbull Library .....                                  | 270        |
| 제29절 특수사기 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                            | 271        |
| 제30절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 273        |
| <b>제4장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 .....</b>                              | <b>276</b> |
| 1. 음주자문위원회(Alcohol Advisory Council of New Zealand) .....            | 276        |
| 2. 회계기준검토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Review Board) .....                | 276        |
| 3. 아시아 협력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                       | 277        |
| 4. 상업감독국(Commerce Commission) .....                                  | 277        |
| 5. 지진피해보상국(Earthquake Commission) .....                              | 278        |
| 6. 전력감독국(Electricity Commission) .....                               | 278        |

|                                                                     |     |
|---------------------------------------------------------------------|-----|
| 7. 에너지효율보존청(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     | 279 |
| 8.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 | 280 |
| 9. 공무원연금청(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           | 281 |
| 10. 연금자산관리청(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          | 281 |
| 11. 보건 및 장애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            | 282 |
| 12.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                            | 282 |
| 13. 사법개혁청(Law Commission) .....                                     | 283 |
| 14. 교재지원청(Learning Media Limited) .....                             | 283 |
| 15. 법률서비스청(Legal Services Agency) .....                             | 284 |
| 16. 마오리 TV 서비스국(Māori Television Service) .....                     | 284 |
| 17. 마오리언어위원회(Maori Language Commission) .....                       | 285 |
| 18. 해상보호청(Maritime Safety Authority) .....                          | 286 |
| 19. 정신건강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                         | 287 |
| 20. 의수·의족국(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                 | 287 |
| 21. 혈액서비스센타(New Zealand Blood Service) .....                        | 288 |
| 22. 소방위원회(New Zealand Fire Service Commission) .....                | 288 |
| 23. 사냥새 거주지 보호청(New Zealand Game Bird Habitat Trust Board) .....    | 288 |
| 24. 복권위원회(New Zealand Lotteries Commission) .....                   | 289 |

|                                                         |     |
|---------------------------------------------------------|-----|
| 25. 스포츠약물방지청(New Zealand Sports Drug Agency)            | 289 |
| 26. 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Limited)        | 290 |
| 27. 관광위원회(New Zealand Tourism Board)                    | 290 |
| 28. Ngai Tahu 부가보상재단(Ngai Tahu Ancillary Claims Trust)  | 290 |
| 29. 의약품 조제관리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 291 |
| 30. 위법행정행위 항소청(Police Complaints Authority)             | 291 |
| 31. 사생활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 292 |
| 32. 공인신탁국(Public Trust)                                 | 293 |
| 33. 자산정보청(Valuation New Zealand Limited)                | 293 |
| 34. 공영라디오방송(Radio New Zealand Limited)                  | 294 |
| 35. 지역보건기관 재정관리청(Crown Health Financing Agency)         | 294 |
| 36. 노후준비청(Retirement Commissioner)                      | 295 |
| 37.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 295 |
| 38. 표준규격위원회(Standards Council)                          | 296 |
| 39. 기업인수 위원단(Takeovers Panel)                           | 296 |
| 40. 공영방송(Television New Zealand Limited)                | 296 |
| 41. 고등교육진흥재단(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 297 |
| 42. 기술적합성평가위원회(Testing Laboratory Registration Council) | 298 |

|                                                           |            |
|-----------------------------------------------------------|------------|
| <b>제5장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b>                    | <b>299</b> |
| 1.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 299        |
| 2. 농업품질관리주식회사(AgriQuality Limited)                        | 299        |
| 3. 식품안전관리주식회사(Asure New Zealand Limited)                  | 300        |
| 4. 전력주식회사(Electricity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 300        |
| 5. 전력개발주식회사(Genesis Power Limited)                        | 301        |
| 6. 농업토지관리주식회사(Landcorp Farming Limited)                   | 301        |
| 7. 메리디언 에너지관리주식회사(Meridian Energy Limited)                | 302        |
| 8. 기상정보주식회사(Metra Information Limited)                    | 302        |
| 9. 마이티 수력관리주식회사(Mighty River Power Limited)               | 302        |
| 10. 우정관리주식회사(New Zealand Post Limited)                    | 303        |
| 11. 선거인등록청(Electoral Enrolment Centre)                    | 303        |
| 12. 석탄관리주식회사(Solid Energy New Zealand Limited)            | 304        |
| 13. 팀버랜드 서해안관리주식회사                                        | 304        |
| 14. 전력거래주식회사(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 304        |
| <b>제6장 결 론</b>                                            | <b>306</b> |
| <b>참고문헌</b>                                               | <b>310</b> |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입법과정 .....             | 19  |
| <그림 2-2>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관련법 .....   | 25  |
| <그림 2-3>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의 구성도 ..... | 25  |
| <그림 3-1> 뉴질랜드 정부시스템 .....       | 31  |
| <그림 3-2> 내각사무처의 조직도 .....       | 37  |
| <그림 3-3> 공공관리위원회 조직도 .....      | 45  |
| <그림 3-4> 재무부 조직도 .....          | 54  |
| <그림 3-5> 문화유산부 조직도 .....        | 62  |
| <그림 3-6> 방송표준원 조직도 .....        | 76  |
| <그림 3-7> 환경부 조직도 .....          | 86  |
| <그림 3-8> 지역환경보전청 조직도 .....      | 92  |
| <그림 3-9> 건설주택부 조직도 .....        | 104 |
| <그림 3-10> 과학기술연구부 조직도 .....     | 109 |
| <그림 3-11> 과학기술연구재단의 조직도 .....   | 114 |
| <그림 3-12> 마오리개발부 조직도 .....      | 121 |
| <그림 3-13> 관세청 조직도 .....         | 128 |
| <그림 3-14> 농림부 조직도 .....         | 131 |
| <그림 3-15> 경제개발부 조직도 .....       | 145 |
| <그림 3-16> 관광청 조직도 .....         | 152 |
| <그림 3-17> 보건부 조직도 .....         | 158 |
| <그림 3-18> 내무부 조직도 .....         | 169 |
| <그림 3-19> 법무부 조직도 .....         | 180 |

|                             |     |
|-----------------------------|-----|
| <그림 3-20> 노동부 조직도 .....     | 192 |
| <그림 3-21> 사회개발부 조직도 .....   | 199 |
| <그림 3-22> 환태평양지역부 조직도 ..... | 210 |
| <그림 3-23> 여성부 조직도 .....     | 213 |
| <그림 3-24> 국세청 조직도 .....     | 217 |
| <그림 3-25> 교육부 조직도 .....     | 221 |
| <그림 3-26> 수산부 조직도 .....     | 228 |
| <그림 3-27> 외교통상부 조직도 .....   | 232 |
| <그림 3-28> 교통부 조직도 .....     | 239 |
| <그림 3-29> 자연보호부 조직도 .....   | 248 |
| <그림 3-30> 교정부 조직도 .....     | 255 |
| <그림 3-31> 국방부 조직도 .....     | 260 |
| <그림 3-32> 국가정보국 조직도 .....   | 266 |
| <그림 3-33> 국립도서관 조직도 .....   | 269 |
| <그림 3-34> 특수사기조사청 조직도 ..... | 272 |
| <그림 3-35> 통계청 조직도 .....     | 275 |



## 국문 요약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웨스트민스터식의 의회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과 헌법상의 연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인 Elizabeth 2세 (Silvia Cartwright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이다. 여왕은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상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갖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부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The First Schedule of the State Sector Act(1988)”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중앙정부로 표현되는 정부영역은 각 부처를 포함하지만 다른 조직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영역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와 병원, 교사위원회 등도 포함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인원은 3,000개의 조직에 약 350,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재무부나 내각사무처처럼 영향력 있는 조직부터 눈에 띄지 않는 조직까지 포함된다. 공공부문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박물관, 학교, 병원, 카지노나 민간항공까지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 군대, 경찰등 기타 부처, 독립행정기관(Crown Owned Entities),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핵심부처는 다시 내각사무처, 중앙인사기관인 공공관리위원회, 재무부 등 3

개의 중앙관리기구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계선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무부와 관세청의 경우는 1840년에 설립된 정부조직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서 소속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내무부·법무부(14개), 교통부(11개)이고, 인력규모가 가장 작은 부처는 여성부(30명)이다.

독립행정기관(Crown Owned Entities)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과 조직성격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공무원연금청, 과학기술연구재단, 사법개혁청, 마오리언어위원회 등 종류가 다양하고 현재 2,800여개의 독립행정기관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영역의 능률 인센티브와 공공분야의 책임성을 혼합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석탄공사, 전력거래소, 뉴질랜드 우정공사, 동식물해충통제국, 선거인 등록청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부처에서는 정책결정, 정책자문,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Crown Owned Entities) 및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에서는 정책집행,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정부 부처의 수와 명칭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우선순위가 변함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있다. 정부조직은 35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관(Minister)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관 1인이 여러 부처를 관리하는 복수장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은 정책결과를 결정하는 정치적 업무에 책임을 지는 반면에 사무차관(Chief Executives)은 그의 부서가 제공해야 하는 정책이 정책 기본원칙에 부합한 산출물을 제공하였는지와 그 산

출물에 관해서 장관에게 직접적인 설명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처별 연계기능이 복잡한 편이다. 특히 내각사무처에서 정책조정 업무뿐만 아니라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영화, 문학,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부에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청도 교통부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뉴질랜드의 공무원들은 1962년 Royal Commission에서 말처럼, 정치적 중립성, 충성, 청렴함을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공무원 행동 강령(the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반영되어 성문법화 되었다. 또한 정부의 국, 실장급 고위관료들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정부운영방식은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New Zealand adopts the Westminster parliamentary democracy as a member of British Commonwealth n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New Zealand is linked to the British Constitution.

The head of state is Queen Elizabeth II, but actual government is conducted by a Prime Minister (current Prime Minister: Silvia Cartwright).

The Queen of New Zealand, currently Elizabeth II, appoints the Governor General on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Governor General has only symbolic political power during the normal times.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of New Zealand were established by laws and specified by the First Schedule of the State Sector Act, which was enacted in 1988.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es ministries and other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ector carries out various functions, including schools, hospitals and teachers committees. The public sector employs about 350,000 persons in 3,000 organizations, which includes influent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Treasury,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and other organization that cannot be noticed easily. The public sector consists of government ministries,

museums, schools, hospitals, and even casinos and private airline companies.

The centr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sist of the Core Public Sector, other agencies that include the army and the police, the Crown Owned Entities, and the State Owned Enterprises. The Core Public Sector is composed of the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the State Service Commission –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that manages the personnel affairs of vice ministers, Ministry of Treasury, Ministry of Defen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specially, the Ministry of Treasury and the New Zealand Customs Service are two of the most oldest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in 1840. The ministries that have the largest number of agencies ar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14 agencies), and Ministry of Transport (11 agencies). The smallest organization is the Ministry of Women's Affairs, which has only 30 employees.

The Crown Owned Entities are similar to the Executive Agencies of South Korea i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 and types. Besid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the Law Commission, and the Maori Language Commission.

The public enterprises are aiming at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which include the Solid Energy New Zealand Limited, the Trans power New Zealand Limited, New Zealand Post Limited, the 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and the Electoral Enrollment Centre.

The functions of the Department of New Zealand are related to policy making, policy advice, and policy coordination. The Crown Owned Entities and the State Owned Enterprises are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delivery of services. The number and the name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often changed often because of changes of environment and political priorities. The executive is composed of 35 ministries, but the number of the minister is limited by 20, so one minister is often responsible for multiple ministries. Each minister is responsible for political affairs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while the Chief Executive is responsible for whether his or her ministry has provided products that are based on the policy guiding principles. In addition, the Chief Executive is accountable for explaining the products to the minister directly.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of New Zealand are characterized by the complex linkages among them. Especially, the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deals with the policy coordination and security affairs and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takes charge of affairs such as movies, literature, and publishing. Also,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deals with tourism. The Chief Electoral Offic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ew Zealand Police i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In addition, the public employees of New Zealand maintain the political neutrality, loyalty, and integrity. This custom was reflected in the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 and legalized later. The tenure of senior executives is guaranteed regardless of regime change, which ensures the independ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continuity of a job. This kind of mode of New Zealand government operation can be a reference model for South Korea for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formulation of policy.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선진 국가들의 행정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1996년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1997년 미국 연방정부조직,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1998년 프랑스의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0년에도 중국, 2002년 일본, 2004년 미국, 2005년 캐나다 등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는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뉴질랜드는 1642년 화란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화란 지리학자가 화란 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James Cook)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하고 영국과 교역 및 이주가 시작되었다. 1907년에는 영국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1931년 영연방 회원국이 되었다.

국가원수는 Queen Elizabeth 2세 영국여왕이 뉴질랜드 여왕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여왕은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국정을

영국식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조직을 살펴보면 단일형국가로서 주 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 기초지방단체의 2원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조직은 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 군대, 경찰 등 기타부처, 독립행정기관(Crown Owned Entities),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핵심부서는 다시 내각사무처 중앙인사기관인 공공관리위원회, 재무부(Treasury)등 3개의 중앙관리기구(Central Department)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계선기구(Line Departments)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행정기관에는 여러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데 교통관계부서인 항공국, 항만국, 도로국 외에도 공립학교, 국립도서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에는 석탄주식회사, 전력주식회사, 뉴질랜드 우정공사 등이 있다.

지방정부는 세 가지 형태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지역위원회는 민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기관은 도로쓰레기, 도서관,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특정기관은 항만, 배수, 방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개혁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지속되어온 급진적 정부개혁모델로서 잘 알려져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신공공관리론 등이 혼합적으로 적용된 특이한 모델이다.

뉴질랜드가 신공공관리론을 정부개혁의 기저로 삼은 것은

한국과 유사한 반면에 한국은 수직적 지방분권을, 뉴질랜드는 계약주의에 입각한 민영화와 수평적 분권화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뉴질랜드 정부개혁 방법에 관련된 자료는 많은 편이나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으로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는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 행정환경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별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마오리 이주시대부터 영국식민지 개척까지 주요 略史를 비롯하여 뉴질랜드의 헌법 및 정치체제, 지방자치제도, 의회, 사법부등 일반개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연구의 초점은 주로 뉴질랜드의 행정부 중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3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2개 독립행정기관, 15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뉴질랜드의 행정부에 대한 인터넷검색 및 문헌조사, 현지 정부기관의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 제3절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앙정부 조직의 한 사례로서 뉴질랜드의 중앙정부 조직을 소개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개편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처간 통합과 분리라는 영역접근이 아니라 정부기능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도 세분화 되어있는 편이고 복수장관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정부부문에서 생산되는 산출량을 수량, 품질, 생산기한, 생산비용등 세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산출물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정부조직의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 및 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인사제도 개편은 CEO제도의 도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해 산출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4년 재정책임법이 제정되었으며 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od & Rudd(2004)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부처를 「핵심부처- 정책권고부처 - 조세관련 부처 -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 - 주요 재화 및 서비스 제공부처」로 분류하고 정부기관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뉴질랜드 정부조직의 전략적 관리와 정책조정기능의 강화는 정책입안자에게 새로운 참고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2장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

### 제1절 뉴질랜드의 개관

#### 1.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뉴질랜드의 국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영국여왕인 Elizabeth 2세(Silvia Cartwright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이다. 여왕은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총독은 정권 변동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의회내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구성을 의뢰하고, 의회소집 및 해산, 국회통과 법률동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단원제로 120석의 임기3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령에는 Cook Island, Niue 등이 있다.

#### 2. 인구 및 자연환경

뉴질랜드의 인구는 전체 395만명(북섬 297만명, 남섬 98만명)으로 남한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지만, 국토면적은 전체 27만 km<sup>2</sup>(북섬 11.6만km<sup>2</sup>, 남섬 15.1만km<sup>2</sup>, 기타 3,542km<sup>2</sup>)로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수도는 웰링턴이며 1865년 오클랜드에서 이전되었

다. 국민 1인당 GDP(2001년)은 약 28,870뉴불(약13,120\$)이다.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북섬인구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7%, 남섬은 24.3%로 뉴질랜드 인구의 3/4이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주요 도시별 인구를 살펴보면 오클랜드 115만 명(31%), 수도인 웰링턴 42만명, 캔터베리 48만명, 와이카토 36만 명이 살고 있다. 인종구성을 살펴보면 유럽인(69%), 마오리 원주민(14%), 남태평양인(5%), 중국인(2.2%), 인도인(1.2%)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성공회(25.7%), 기독교(16.5%), 가톨릭(14.4%) 등을 갖고 있다. 또한 전국토의 52%가 농경지 및 목장이며 29%가 삼림이고 기타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화산지대가 발달하여 북섬 타우포에는 활화산이 있고 해발 3천미터 이상의 산이 남섬에 18개 위치하고 있다. 날씨도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는 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12도를 기록하고 있다.

### 3. 사회문화적 특성

뉴질랜드의 경제는 농업·중소기업·서비스업에 기반한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20세기 초에는 생활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2차 대전 후 뉴질랜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의 강화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 현재는 제조업 확충에 힘쓰고 있다.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9%를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1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고

도로 과학화되었으며 농산물은 주요 수출품이 되고 있다. 목초지가 전국토의 1/2를 차지하나 농경지는 2%에 불과하다. 목양업이 뉴질랜드 농업을 주도하며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양 6천만 마리, 소 8백만 마리가 있으며 육류·양모·버터·치즈는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밀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이며 키위·사과·배는 수출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임업도 주요 수출산업이고,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가운데 상당량은 발전에 이용되고 있으며, 석유는 타라나키 반도에 있는 몇 군데의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제조업은 GDP의 20%를 차지하며 규모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뉴질랜드의 문화 환경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유럽적일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유럽식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반면 통가족, 사모아 족을 비롯한 태평양 섬 지역의 종족은 여전히 전통적 관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비해 마오리족은 유럽식 문화로의 동화 압력과 고유문화의 보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마오리족의 정치적 지위는 19세기에 대부분의 토지를 잃음으로서 약화 되었고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라 고유 종교마저 사라졌다. 또한 구전에 의존해 내려오던 문학도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마오리족의 예술적, 사회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마오리족의 예술작품은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시와 산문도 마오리 언어로 쓰이고 있다. 뉴질

랜드의 유럽적 문화는 20세기 초부터 널리 보급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뉴질랜드의 토착 작가는 단편작가로 유명한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였다. 뉴질랜드의 예술과 문학은 뉴질랜드의 독특한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의 성격 분석이나 자기 성찰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해왔다. 뉴질랜드 정부는 1940년대부터 예술 지원정책을 폈다. 국민 대부분이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즐기는데 특히 럭비가 가장 많은 저변인구를 갖고 있으며 경마도 인기가 높다.

뉴질랜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이주민들이 국민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서구의 문화, 예술전통과 가치관이 지배적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참정권을 부여 하였으며 세계 최초 복지국가 및 일일 8시간 노동 제도를 확립하였다.

뉴질랜드는 전 국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을 대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 육아, 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조세방식에 의한 독특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소득세 등 통상조세에 퇴직세 명목으로 세율을 얹어 부과 징수하여 연금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즉 실업수당, 구직보조금, 청소년수당, 가족보조금, 홀부모 및 독신자수당, 병가수당, 환자수당 등을 가지고 있다.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1877년 최초로 교육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래 1964년 교육법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만5세부터 16세까지 전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제2절 주요역사

뉴질랜드의 첫 정착자는 600년~1000년전 동 폴리네시아로 부터 이주한 마오리인 이다. 마오리족의 용감한 탐험가 쿠페는 950년경 폴리네시아의 하와이 섬으로부터 뉴질랜드로 항해해 왔으며 쿠페가 뉴질랜드를 발견했을 때 길고 흰 구름이 섬 전체를 덮고 있어서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고 이름 지었다.

1642년 화란인 아벨 타스만이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화란 지리학자가 화란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하고 영국과의 교역과 이주가 시작되었다.

1814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840년까지 이주해 온 2,000여명의 정착민들은 영국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840년 2월6일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신 주권을 양도받는 와이탕기조약(The Treaty of Waitangi)<sup>1)</sup>을 체결하였다.

---

1) 와이탕기 조약(The Treaty of Waitangi)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1940년 당시 유럽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기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하였다. 조약의 배경은 1830년 이후 이민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840년에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이 정착하였다.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 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었다. 영국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을 이양한다.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을 보장하되,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한다.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다.

와이탕기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마오리족이 갖지만 통치권은 영국에 양도하며 그 댓가로 영국은 마오리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와이탕기조약의 의도는 상호 우호적이며 쌍방에게 공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인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영어와 마오리어의 해석 문제, 토지 소유에 관한 갈등이 커지게 되었다. 1860년 마오리족은 자치 정부를 세웠고 갈등은 전쟁으로 표출되어 1860년~1865년 유럽인과 마오리족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져 유럽인이 승리하였다. 그 결과 조약의 내용은 무시된 채 마오리 족의 토지는 몰수되었다. 이후 영국은 마오리족의 반영국 감정을 완화시키려 식민지 회의에 마오리족 대표를 참가시켜 영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였다. 1907년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47년 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통과로 뉴질랜드 의회는 영국의회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뉴질랜드는 와이탕기 조약의 원래 계약상태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불공정하게 몰수하였던 토지를 보상해 주었으며 교육과 제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8세기말에 유럽인 이주시까지 석기시대 문화만 발전되었으며, 특히 목공예 옥장신구 등의 예술이 발전하였다. 마오리인 들은 문자가 없어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인 이주 이후 로마자를 이용하여 언어를 기록하였다. 현재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마오리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정부기관명칭도 영어와 마오리어로 동시 표기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는 유럽 문화와

마오리족의 문화를 잘 조화시킨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조직은 역사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며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뉴질랜드의 초기 개척시대부터 2002년 노동당 집권시기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42년 : 화란의 아벨타스만이 뉴질랜드를 발견
- 1840년 : William Hobson 초대총독, Bay of Island에 정착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자간에 Waitangi  
조약체결
- 1860년 :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 1893년 : 여성참정권 세계 최초인정
- 1907년 : 영국자치령
- 1912년 : 여성 피선거권 부여
- 1938년 : 사회보장법 제정
- 1949년 : 국민당 집권(Holland 수상)
- 1957년 : 노동당 집권
- 1960년 : 국민당 집권
- 1985년 : Sir Paul Reeves 총독 취임
- 1989년 : Palmer 수상 취임
- 1990년 : Dame Catherine Tizard 최초 여성 총독 취임
- 1996년 : 국민당 -NZ First간 연립정부 구성합의
- 1999년 : 노동 - Alliance 소수연립정부 출범(Helen  
Clark 수상취임)
- 2002년 : 총선 및 노동당 재집권  
노동, 진보연합 소수연립정부 출범

### 제3절 뉴질랜드 통치기구의 개요

#### 1. 헌법 및 정치체제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의회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과 헌법상의 연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구성되고 지배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헌법 설계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의 거대한 권력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헌법을 구성하는 법규나 합의의 실체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실행되는 입법, 특히 The Bill of Right Of 1688(UK), 선거법(the electoral Act, 1993), 헌법(constitution act, 1975)등과, 여왕의 특권, 의회법과 절차, 내각 절차(특히 내각 매뉴얼), 법원의 판결(특히 대법원), 국제법과 와이탕기 조약 등이다(Palmer & Palmer, 2004).

뉴질랜드는 성문헌법은 없지만, 헌법이 내포한 의미는 국가를 지배하는 모든 기본적인 원리로 헌법은 성문법, 제도적 구조, 절차, 규범,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복합체이다. 뉴질랜드 헌법(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년)<sup>2)</sup>과 영국 제국법을 뉴질랜드에 적용시키는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등 2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2) 주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4기관의 중요한 법규들을 제시했다. 헌법상의 주요 기관으로 주권자(왕권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이다. 주권자로는 여왕과 여왕을 대표하는 총독, 행정부는 각 장관과 정부차관, 공무원, 입법부는 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의회, 사법부에는 판사가 있다.

1986은 1935년 독립선언, 1840년 와이탕기 조약(The Treaty of Waitangi) 등 역사적인 법률문서와 행정, 입법, 사법권 설치와 조직을 규정하는 모든 국내 법률을 집대성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은 영국법률(Imperial Acts) 법률로서 대헌장(Magna Carta),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정치체제

뉴질랜드는 입헌군주국가로서 국가원수는 Queen Elizabeth 2세 영국 여왕이다. 여왕은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총독은 정권 변동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 내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구성을 의뢰하고, 의회소집 및 해산, 국회통과 법률동의 및 거부, 수상을 비롯한 각료와 법관의 임명권 및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총독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건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독은 내각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Executive Council)를 주재하며 헌정의 중단 사태시 또는 정부가 초헌법적인 부당행위를 행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유보권을 가지고 있다. 총독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

표로서 다수의원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수상으로 임명한다. 수상은 내각을 구성할 각료들의 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수상과 함께 의회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각료는 반드시 현역 의원가운데서 선임하게 된다.

행정부는 총독과 내각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 및 내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료위원회는 명목상의 의결기구로서 내각이 결정하는 사안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정책이나 법률안의 발의는 내각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정책결정기구인 내각이며, 내각은 주요정책과 법률안의 결정 및 정부 부처간의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의 중요 결정사항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합의 도출방식을 따르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조직은 내무부, 외교통상부 등 35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관이 보직을 갖고 있는 부처는 20개 부처이다. 정부의 국, 실장급 고위관료들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다.

### 3. 입법부

#### 1) 개관

뉴질랜드 의회는 1854년에 시작되었으며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The Legislative Council(upper house)의

양원제였으나 1950년에 상원이 폐지되었다. 1854년 37명의 의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120명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뉴질랜드 의회는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원제로서 임기 3년이며 의석은 120석(지역구 62석, 마오리석 7석, 전국구 5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보유자와 1년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식 소선거제에서 1992년 8월 및 19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 혼합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MMP)<sup>3)</sup>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노동당이며 국회의사당 모양이 벌집과 유사하여 Beehive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당은 대표적인 보수정당으로 주로 농촌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당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은 도시지역의 저소득 노동자층을

---

3) MMP제도 :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과거 과반수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는 FPP(First Past The Post)방식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결과 MMP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FPP방식은 유권자들에게 주류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양당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수당에 투표하는 것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료로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선거나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선거방식의 대전환을 논의하였다. MMP방식에서는 정당선거에서 최소 5%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선거구에서 한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국회에서 득표율 비례에 따른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므로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만큼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며 소수당과의 연합가능성이 증대되었다. MMP는 수상의 지위가 약화되고,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책추진보다 연립 정부내 정당간 의견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활성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건설을 정강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군사적 팽창주의와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 전통적인 정부주도하의 경제개발정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기능

뉴질랜드 의회의 기능은 크게 법률제정기능, 정부구성기능, 정부통제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법률제정기능을 살펴보면, 법률은 3가지로 구분된다. Public Bill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을 의미한다. Local Bill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특정지역 단위 행정부처가 책임지는 성격을 지는 법률이며, Private Bill은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특정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뜻하며 의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정부구성기능을 살펴보면, 다수당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은 의원 중에서 각료를 임명하고 있다. 정부통제기능에는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를 비롯하여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관들은 각료회의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장관들이 집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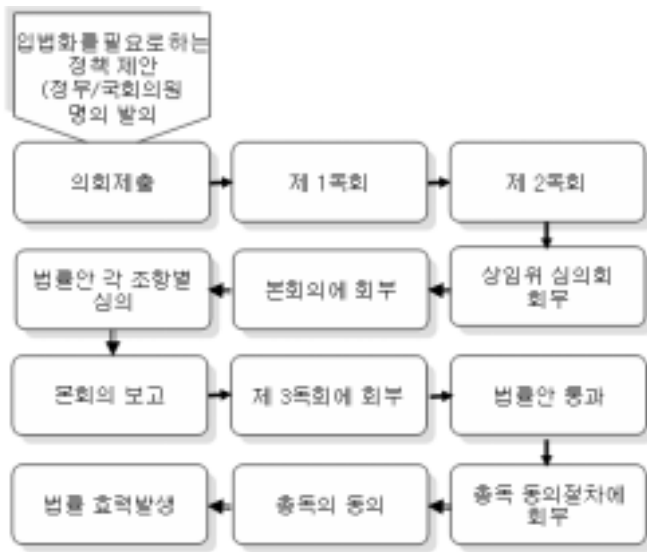
사회 위원이지만 일부 장관들은 각료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집행이사회는 행정부의 법률제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각료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정책, 입법안을 결정하고 장관들 간의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법률 제정절차

뉴질랜드 의회의 법률제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 또는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 발의
-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제1독회(No debate) 및 제2독회(원칙에 관한 Main debate)후 법률안이 예산사항과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상임위 심의에 회부
- Committee of the Whole House(해당 상임위 의장이 주재하는 Committee 형태 본 회의)에 회부, 법률안의 각 조항별 심의
- 법률안 심의가 끝나면 의장이 복귀하고 Committee가 House에 보고
- 제3독회에 회부
- 법률안이 통과되면 총독의 동의절차에 회부
- 총독의 동의에 따라 동 법률안은 정식 법률로 효력발생

&lt; 그림 2-1 &gt; 입법과정



#### 4. 사법부

뉴질랜드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삼심제도이지만, 사건에 따라 영국 추밀원이 최고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추밀원사법위원회는 뉴질랜드 최종심 역할을 수행하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추밀원사법위원회는 보통 민사사건만 다루며, 형사사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뉴질랜드내 최고법원으로서 사법부 수장인 Chief Justice 및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모두 총독이 임명하고 있

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상고사건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의 상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중요한 형사 및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지방법원 등 여타 하급심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Chief Justice를 포함하여 3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의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10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별법원으로는 고용법원, 가정법원, 청소년법원, 마오리 토지법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JP(Justice of Peace)가 있다. JP는 식민지 초기인 1840년부터 존재하는 제도로 지방법원의 사법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7,500명의 JP가 있으며 이중 500여명이 법원에서 사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외에는 대개 법원 밖에서 공증 등 사법서사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다. JP들은 국회의원을 통해 추천되어 총독이 임명하며 종신직이다.

## 제4절 뉴질랜드 지방행정의 개요

뉴질랜드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정비된 지방정부는 3계층(Regional: 도, Territorial: 시·군, Special Author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Regional Council

뉴질랜드의 Regional Council(도)은 총 12개로서 북섬8개, 남섬에 4개가 존재하고 있다. 자원관리, 지방공원, 민방위, 운송항만, 지역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 2. Territorial Authority

뉴질랜드의 Territorial Authority(시군)은 최소인구 5만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5개의 City Council, 58개의 District Council, 1개의 Country Council(총 7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지방의 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 3. Special Authority

Special Authority는 154개의 Community Board와 6개의 Special Authority Board가 존재하고 있다. Community Board의 구성원은 4명~12명이고 시의회 임명이나 직접선거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권익옹호가 주기능이다. 공항 관리 공단, 병원공단, 전기공사, 관광공단, 보건공사 등이 Special Authority Board에 해당된다.

### 제5절 뉴질랜드의 정부개혁<sup>4)</sup>

1984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이래 시작된 정부개혁은 결과와 산출의 분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관리권한의 이양 및 위임, 책임성 확보장치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뉴질랜드 정부개혁은 1984년 이전에는 관료제적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직무수행의 정확성과 합법성이 중시되었다. 그 후 1984~2000년에는 정부활동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산출지향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 이후 오늘날에는 능률성보다는 결과중심 관리구조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치, 문화, 리더십의 강화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개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질랜드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규모 정책결정부서로 전환하고 단일목적 조직화 원리에 따라 재설계 하였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개혁기간 중 39개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기능분리원칙은 책임운영기관의 확대·발전으로 이어졌다. 독립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은 기업화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핵심 정부부처의 개혁을 시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었다. 최근 들어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구 관리체계가 분절화되어 일관성이 없고 수평적 정책조정 측면에서 불완전성을 가진다는 지적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와 책임성 장치를 강화

4) 김근세(2005),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둘째,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공공재정(공공부문관리)법(Public Finance (State Sector Management) Bill, 2003)을 마련하였다. 즉 공공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방식, 과정 등 여러 측면의 변화를 위한 입법적인 토대를 적절히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과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1994), 공무원법(State Sector Act 1988)을 수정 및 개정하고 공공관리위원장(State Services Commissioner)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가치와 기준에 더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법(Crown Entities Act)을 만드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책임성을 개선하여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장관들, 부처조직과 책임운영기관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공관리 체계의 요소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제3장 뉴질랜드의 중앙정부조직

뉴질랜드의 정부부처<sup>5)</sup>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The First Schedule of the State Sector Act(1988)”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중앙정부로 표현되는 정부영역은 부처를 포함하지만 다른 조직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영역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와 병원, 교사위원회, 사회사업가 등록위원회 등도 포함되고 있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인원은 3,000개의 조직에 약 350,00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는 재무부나 내각사무처처럼 영향력 있는 조직부터 눈에 띄지 않는 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박물관, 학교, 병원, 카지노나 민간항공까지 포함하고 있다(Richard & Chris, 2005).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 독립행

---

5) 정부 부처의 수와 명칭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우선순위가 변함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있다. 1988년, 1996년의 변화에 가장 큰 차이는 정책과 정책집행 부서 간의 구별이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1996년에 추가된 목록을 살펴보면 정책과 집행 기능이 혼합되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은 비슷한 조직처럼 보일지라도 각 조직마다 주요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 경찰(New Zealand Police)과 뉴질랜드 군대(New Zealand Defence Force)처럼 왕(The Crown)에게 충성하지만, 공공서비스의 부분이거나 정부부처로서 법적으로 근거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부처 같지만 다른 국가 조직으로는 공기업(SOEs),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등이 있다. 언론보거나 정치적 공격은 공공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많은 국가 부분의 조직들을 종종 일률적으로 다루게 한다. 조직의 다른 형태는 다른 책임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 조직은 장관의 책임성이나 공무원의 충성, 중립성, 익명성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부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1980년 사법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부처가 내각의 결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기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핵심부서에는 내각사무처(수상실), 중앙인사기관인 공공관리위원회(State Service), 재무부(Treasury)등 3개의 중심부서(Central Department)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실무부서(Line Departments)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행정기관<sup>6)</sup>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통관계부서인 항공국, 항만국, 도로국외에도 국립학교, 국립도서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sup>7)</sup>에는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 농업품질관리주식회사, 식품안전관리주식회사, 선거인등록청, 전력개발주식회사 등이 있다.

정부의 정책개발 및 자문은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고, 독립행정기관에서는 규제, 구매, 서비스전달,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은 관계 부처와 계약에 의거하여 운

6) 독립행정기관은 재정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성과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는 정보를 의회와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시민이 정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1980년대 공공서비스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 발전이었다. 1985년 노동당 정부는 전기, 전화, 우편, 상업적 삼림 지구와 몇 개의 은행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였다. 1985년 12월 정부는 공기업 관리에 대한 5개의 주요 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86년에 공기업법을 제정하였다. 공기업은 민간영역의 능률 인센티브와 공공분야의 책임성을 혼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기업의 주요 목적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공기업의 관리자들은 성공적인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기업은 연말에 보고서와 회계연도의 첫 6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8년 민영화정책 이후 많은 공기업이 매각되었다. 하지만 모든 공기업이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관은 여전히 많은 단계에서 공기업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Geoffrey & Matthew. (2004).

영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독립행정기관과 별도로 각 부처별로 단수 혹은 복수의 소속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은 정부부처의 영리부문인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86년 공기업법에 의해 정부기업을 자율적인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사기업과 같이 관리하였다.

뉴질랜드 정부조직에는 수상과 내각,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내각책임을 겸하고 있다. 현재 장관은 20명으로 복수부처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제정부의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입법부의 신뢰, 연대책임법칙, 장관개인의 책임, 집단적 의사결정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Raymond Miller, 1998)<sup>8)</sup>.

뉴질랜드에서 장관의 임명은 보직에 대한 경험이나 학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통치의 전문성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내각은 이익집단이나 지방정부, 다른 정당, 입법부에서 잘 다듬어진 정치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8) ①입법부의 신뢰 : 정부 정당은 그들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신뢰를 보유했어야만 한다. ② 연대책임법칙 : 정부의 생존은 내각의 연대책임에 달려 있다. 연립 정부에서 내각의 연대 책임의 유지는 복잡하다. 왜냐면 내각에 온 장관들은 다른 철학과 아젠다, 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립정부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연립정부를 붕괴시키고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총선거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이나 양당체제 모두 내각의 연대책임을 원칙을 따른다. ③ 장관 개인의 책임 :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부처의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장관의 업무보다는 장관의 개인적 삶에 관련된 '장관 개인의 책임', 장관의 공직 책임과 관련된 '장관의 주된 책임',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동에 관련된 '장관의 대행 책임'이 있다. ④ 집단적 의사결정 : 주요 결정은 내각의 집단적 결정에 의한다. 이것은 독일과 같이 부처 장관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영국 예산 과정과 같이 다른 부처와 협상의 양자적 결정과 달리 뉴질랜드 내각 정부만이 가능한, 즉 작은 정부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협의의 문화이다.

그리고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 것인가는 정당에게 달려있다. 국가적으로 수상은 장관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업무(부처)를 할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의회의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행정부와 입법부의 특징은 융합이다. Bagehot의 말이 자주 인용되는데 “영국 헌법의 가장 효과적인 비밀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의 완벽한 융합으로 보았고, 이 연결고리는 내각위원회이다.” 즉, 내각위원회는 국가의 입법적 부분과 행정적 부분을 단단히 묶어주는 버클 같은 것이다.”라고 보았다 (Richard & Chris, 2005).

내각위원회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정책, 경제발전, 사회발전, 입법과 같은 부분에 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내각위원회 구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상은 그 수와 구성원, 권한 등을 결정하고 있다. 내각업무의 합리화와 함께 위원회 시스템의 장점중의 하나는 장관들이 내각에 오기 전에 정책차이를 충분히 검토하게 한다. 즉 다른 정당 출신 장관이 내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정책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수상의 주요한 권한이다. 내각의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모든 장관은 내각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 내각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하부구조를 지지하는 것이다. 재무부와 공공관리위원회, 내각사무처(DPMC: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는 개혁 추진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개혁관리, 성과, 조정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각 부처의 장관이 전략적 정책

을 결정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역할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즉 특정 정책을 발의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또는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1993년 이후 전략적 성과영역(SRA: Strategic Result Area)<sup>9)</sup> 모델을 개발했다. 부처간의 사무차관이 협의를 통해, 그 부처의 전략적 결과 부분(SRA)을 공식화하고 확인하고 다른 중심 부서를 보조한다. 정책발의에 관한 부처의 역할은 특정 정부의 목표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이래로 그 예로는 보건 부문(Health sector)과 범죄예방기구(the Crime Prevention Unit)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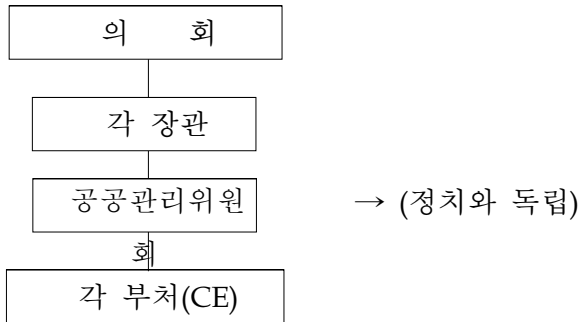
또한 정부부처에서는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장관과 사무차관은 연간 생산계획을 협의한다. 생산계획은 사무차관과 장관사이에 부처가 제공해야하는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협의하고 statement of intent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결과물과 연계된 방법을 설명한다. 주요 목적은 부처가 무엇을 해야 할지와 정부가 무엇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서류들은 부처의 행동에 관한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사무차관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장관은 법적으로 부처를 대표하고 정책의 성과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부처의 사업결과와 예산지출 현황을 국회에 보

---

9) 전략성과영역(Strategic Result Areas): 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조정된 성과영역으로 장관들의 대화와 분석을 통해 형성된다. 하나의 전략성과영역이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각 부처와 국민에게 전달되고 부처간 조정 및 협력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고한다. 반면에 사무차관은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관 및 국왕에 조언을 하고 부처의 효과적, 경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원회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해당 장관에게 통보 되고 장관은 사무차관을 해임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의회와 장관 및 각 부서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1 > 뉴질랜드 정부시스템



각 부처의 사무차관(Chief Executive)은 신문 등 세계적인 광고를 통하여 모집되고 있으며, 외국인도 사무차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사무차관에는 미국, 호주인 등이 있다. 사무차관의 후보자 심의 및 선발에 관해서는 공공관리위원회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심의 후 보고하면 수상이 결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사무차관은 소속 부처의 인사, 조직, 급여, 교육 등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각 사무차관은 자기 부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공관리위원회는 훈련, 급여 등에 관해 관여를 하지 않고, 소속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정부 조직을 살펴보기 위해 Wood & Rudd (2004), Geoffrey & Matthew (2004)의 정부조직의 기능별 분류법에 근거하여 「정부부처- 부처별 소속기관- 독립행정기관-공기업순」으로 연구대상 조직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의 현황은 Wood & Rudd(2004)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부부처를 다시 「중앙관리기구- 정책권고부처- 조세관련 부처-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 주요 재화 및 서비스 제공부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관리기구(Central Agencies) (3)

- 내각사무처(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 공공관리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
- 재무부(The Treasury)

### 2. 정책권고 부처(Mainly Policy Advice) (9)

-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Heritage)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 건설주택부(Ministry of Building and Housing)
- 환태평양지역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 과학기술 · 연구부

(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 마오리 개발부(Te Puni Kokiri)

-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 청소년육성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 3. 조세 · 이전관련부처(Mainly Taxes and Transfers) (2)

- 관세청(New Zealand Custom's Service)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4.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Mix of Policy and Delivery) (11)

-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5. 주요재화 및 서비스 제공부처

(Mainly Delivery of Goods and/or Services) (10)

- 국가기록원(Archives New Zealand)
- 유아 및 가정부(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
- 사법심사처(Crown Law Office)
- 교육평가처(Education Review Office)
- 토지정보국(Land Information New Zealand)
-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Department)
- 공직부패조사국(Serious Fraud Office)
-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출처: Wood & Rudd(2004: 113); Palmer & Palmer(2004: 96)의 조직분류  
기준을 근거로 재구성함.

제1절 내각사무처<sup>10)</sup>(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 1) 연 혁

내각사무처는 양질의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월 설립되었다. 당해 기관은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각 내각부처(portfolio) 정부조직들의 기능조정, 정부부처,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 기타 내각부처 조직들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역할분담 및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내각사무처<sup>11)</sup>는 공공관리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 및 재무부(the Treasury)와 함께 핵심적인 중앙부처이다. 즉 뉴질랜

---

10) <http://www.dPMC.govt.nz/>

11) 1975년 선거 이후 수상실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4번째 노동당 정부에 의한 개혁으로 정부 업무 실행의 조정력을 향상시키고 수상과 정부가 특히 경제나 사회분야에 관해 제공받는 조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상실과 내각의 구조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내각과 수상의 자문을 통합하여 단일의 부서로 설립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조정기구와 전문적 자문이 한 사람의 감독관 하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수상실의 정치적 기능을 공공 서비스 정책조정과 자문 기능과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내각의 결정에 의해서 빠르게 시행되었다. 2002년 선거이후 클락 행정부의 내각은 20명의 각료, 내각 밖의 6명의 장관(준장관), 2명의 정부차관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17개 이상의 업무·책임과 58개의 주요 포트폴리오가 있다. 42명의 준장관의 책임·업무가 맞물려 있다. 이와 더불어 각료 임명에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Geoffrey & Matthew, 2004).

드 공공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고 부처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각사무처의 거시적인 업무사명은 뉴질랜드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헌법적이며 제도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사무처는 전략적·기관운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질의 자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장관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각사무처의 주요역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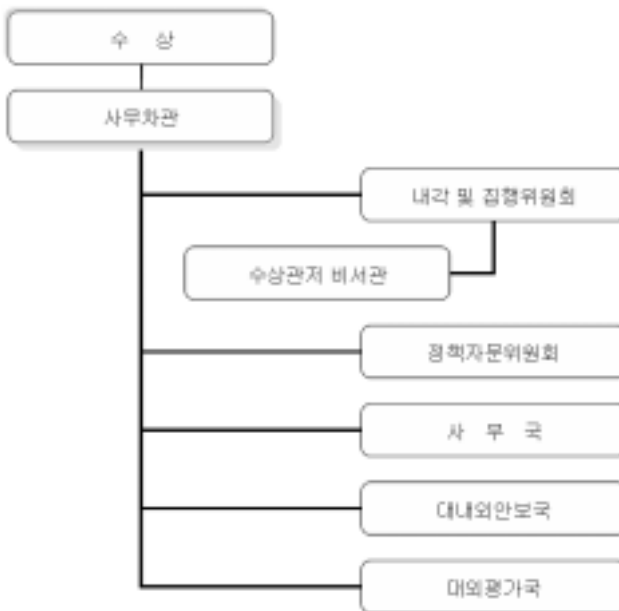
① 수상 및 내각 지원(Supporting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내각사무처는 국정운영의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수상을 보조하기 위해 헌법상 수상의 고유 직무수행 영역(내각운영 및 정부형성과 관련된 헌법관련 사무 등)과 정부운영과 관련된 영역(부처별 업무 및 성과검토), 행정적 지원영역(입법부에 대한 답변, Official Information Act 및 관련법 수행지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독 지원(Supporting the Governor-General):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치체제 하에서 형식적으로 뉴질랜드 여왕이 최상위 권력을 갖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왕의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이 국정운영을 담당한다. 따라서 내각사무처는 총독의 기능수행을 보조한다.

## 3) 내각사무처 조직

내각사무처는 수상의 지휘아래 사무차관(Cheif officer)이 관리하는 6개의 부서가 있다. 먼저 내각실(Cabinet Office)은 내각 및 집행위원회(the Cabinet and the Executive Council)에 법률자문 서비스와 직원배치를 통해 고품질 및 효율적인 정부 의사결정 절차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lt; 그림 3-2 &gt; 내각사무처의 조직도



출처: <http://www.dpmc.govt.nz/dpmc/index.htm>

수상관저(Government House)에서는 수상이 관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및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Policy Advisory Group)에서는 뉴질랜드 내각사무처 및 기타 부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들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타 부처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종류의 자문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외평가국(External Assessments Bureau)에서는 뉴질랜드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외관계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내외안보국(Domestic and External Security Group)에서는 뉴질랜드 대내·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며, 주된 업무분야로 정보, 테러대처, 응급 및 위기관리 및 안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무국(Corporate Services Unit)에서는 당해부처의 전반적인 인사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 1. 국가정보보안국(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 1) 연 혁

국가정보보안국은 1977년 Robert Muldoon 수상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정보 및 기술보호, 신호정보

(Signals Intel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소유한 각종 정보들의 보호는 20세기 뉴질랜드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로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각종 업무들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뉴질랜드 연합신호조직국에서는 신호정보 업무를, 각종 도청행위로부터 정부정보 등을 보호하는 기술보호 업무는 국가정보보안국 이전에 뉴질랜드 정보보안 서비스국과 국방부가 함께 관장하는 업무였다.

1970년 중반 들어 뉴질랜드 정부는 2차례의 걸친 정부심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보안 업무를 통합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초기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정보보안국을 설치하였다. 이후 국가정보보안국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치권(야당 등)에 거센 요구에 의해 1984년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현재의 내각사무처의 산하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2) 주요업무

국가정보보안국에서는 뉴질랜드 정부운영에 필요한 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발행하는 각종 전자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외부 및 해외기관들의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고

- 신호정보 보고서(SIGINT reports)의 발간

- (2) 정부 각 부처들에게 정보보안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문제공
  - 정보보안물의 생산·분배 및 통제, 핵심문서들의 암호 처리
  - 정보보안 상태의 평가 및 검사
- (3) 뉴질랜드 정부부처들에게 각종 정책자문 및 보조업무 수행
- (4) 주요기반구조보호를 위한 센터운영

### 3) 조 직

국가정보보안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국가정보보안국의 최고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소관부처인 내각사무처의 최고책임자인 수상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현 국가정보보안국의 기관장은 1999년 임명된 Warren Tucker이다. 국가정보보안국의 5대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보수집 및 처리
- 정보생산 및 소비자서비스
- 정보시스템 보안
- 기술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 기업서비스, 정책기획 및 법률관련 서비스

국가정보보안국은 외국어전문가, 정보보안, 암호처리 전문가로부터 엔지니어, 각종 기술직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약 30%는 여성이다. 또한 당

해기관의 연간예산은 3천만달러(뉴질랜드 달러기준)에 이르고 있다.

## 2. 대외평가국(External Assessments Bureau)

대외평가국은 1949년 설립된 합동정보국이 환경변화에 따른 몇 차례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1988년 개명된 조직이다. 대외평가국은 뉴질랜드와 관련된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정보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내각사무처의 소속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당해기관은 공적정보 뿐만 아니라 대외비 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대외평가국은 다른 정보기관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해석 및 처리하는 역할과 이를 기반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 제2절 공공관리위원회<sup>12)</sup>(State Service Commission)

### 1) 연 혁

공공관리위원회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잘 부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1840년 William Hobson이 뉴질랜드 이주민 정부(colonial government)를 수립한 이래로 공공서비스법(the Public Service Act of 1912)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인식하고 있는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당해 법은 비정치적이고 통합경력관리를 지향하는 공공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임용·승진 및 해고절차 역시 비정치적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관련법들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8년 공무원법(State Sector Act, 1988)을 모법으로 공공관리위원회가 탄생되었다.

### 2) 주요업무

공공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제반사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즉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을 비롯하여 이들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및 관리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

---

12) <http://www.ssc.govt.nz/display/home.asp>

라 공공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과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공무원들의 인적자원관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State Sector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위원회 위원장(Commissioner)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립행정기관을 대신하여 해당기관들의 기관장등을 임명
- 각 부처들을 대신하여 해당기관들의 기관장들의 기관성과를 평가
  - 부처성과와 관련된 사안들의 조사 및 보고
- 투명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사원칙 및 임용기회의 균등원칙 및 기준의 설정·개발
-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위공직자 리더십 및 행정관리역량의 증진·개발
- 독립행정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들의 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조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조언제공
- 독립행정기관 및 기타행정기관들에 적용되는 윤리 및 행동강령의 설정

공공관리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기관중 하나이며, 재무부, 내각사무처와 중앙행정기관에 리더십, 조정을 제공하고 국가부문 관리에 관해 권고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공공관리위원회는 유일한 인사행정기관이며, 상기한 3개 기관은 각 부처의 개혁관리, 성과, 조정 등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공공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의 사무차관(Chief Executives)을 임용하고 사무차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주요기능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관리위원회는 부서간 기능배분, 새로운 부서의 필요성, 각부서의 통합 또는 폐지에 관해 각 부서장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전략과 정부가 앞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능력을 통합시키기 위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둘째, 공공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가진 역량이나 정보관리구조와 시스템을 정부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소유 기관의 이익 상태를 감시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정부의 주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조직

공공관리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공공관리위원회는 7개의 세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관리국(Performance Management Branch)에서는 개발목표의 달성도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국(Development Branch)에서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접근 가능한 개발목표”의

구현을 담당하고 있다.

거버넌스국(Governance Branch)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및 다차원적인 목표에 공동사용이 가능한 행정기관 개발목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국(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ranch)에서는 정보통신 및 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적역량국(People Capability Branch)에서는 직원들 선발 및 인적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Corporate Services Branch)에서는 복수의 개발목표의 달성을 촉진·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은 수상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임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그림 3-3 > 공공관리위원회 조직도



## 1. 리더십 개발센터(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 1) 연 혁

리더십개발센터는 뉴질랜드 정부가 지향하는 양질의 고위공직자들의 교육 및 리더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기관은 1995년 설립된 관리개발센터(Management Development Centre)가 담당하는 기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03년 7월 1일 신설되었다.

### 2) 주요업무

리더십개발센터는 공공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고위공직자 리더십프로그램(the Executive Leadership Programme)과 고위공직자 관리 및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당해기관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임명된 고위공직자와 기관장 및 인적자원 전문가 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 서비스는 개인, 부처별 정보 및 자문제공으로부터 인적역량 개발을 위한 진단서(Diagnostic Tools) 비롯하여 세부적인 사례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 조 직

리더십개발센터는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관리위원회가 운영예산을 보

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 발간된 당해 기관의 백서(Report of 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Trust: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4년 7월 기준으로 리더십개발센터의 정규직원은 10인에서 2005년 6월 기준으로 12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10인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된 신탁이사회(trust board)가 설치되어 있다.

## 2. 공무원 훈련기관(Public Sector Training Organization)

### 1) 연 혁

뉴질랜드 공무원훈련기관은 뉴질랜드 주 정부들의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조직이다. 당해 기관은 1992년 제정된 산업훈련법(the Industry Training Act, 1992)에 근거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공무원훈련기관은 설립 후부터 2001년까지 공공서비스 관련 책임운영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이후 공공서비스 관련기관들로 하여금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sup>13)</sup>)에 준하는 단위기준(unit standard) 및 자격기준(qualifications)을 갖춘 공공기관

13)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이 추진 중인 국가자격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는 학력과 직업자격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일반교육자격, 직업교육자격, 직업으로 구분된 5등급 체계의 국가 자격 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도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NQF를 운영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격제도가 모든 형태의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결과를 평가, 인정하는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써 기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http://webzine.madang21.or.kr/no\\_96/join/jo-04.htm](http://webzine.madang21.or.kr/no_96/join/jo-04.htm)).

들로 하여금 산업훈련기금을 지원 받음으로 인해 그 역할과 지위가 많이 강화되었다.

## 2) 주요업무

공무원훈련기관은 뉴질랜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고성과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분야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자격체계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자격조건 및 기술조건 등을 설정
- 피훈련자(기관)들이 국가자격체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지침의 개발
- 피훈련자(기관)들이 국가자격체계에 근거하여 내실있는 훈련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자격요건 및 기술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훈련자(기관)들의 평가
-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리더십 제공

## 3) 조 직

공무원훈련기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당해 기관의 이사회와 이사회의 지휘를 받는 집행이사, 기관운영 관리자, 그리고 집행이사와 기관운영 관리자 산하의 기관훈련 및 평가관리자, 훈련관련 조언 및 실습조정자, 품질조정국, 관련행

정업무를 수행하는 국(Communications Advisor, Office Manager, Reception/Office Assistants, Training Database Administrator)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계선조직으로 뉴질랜드 원주민인 Maori족 구성원들의 훈련을 위한 Nga Tahu o Te Ao Maori, 원주민들의 원활한 교육 및 조언을 위한 소관부서로서 Advisor Māori Effectiveness가 설치되어 있다.

공무원훈련기관 위원회는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제반정책 및 기관운영과 관련된 최고집행기관(Chief Executives)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당해 기관이 소속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교육훈련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집행이사는 고위직 인적자원관리 및 집행관련 결정 등을 공무원훈련기관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기관운영관리자는 당해 기관의 일상적인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훈련 및 평가관리자는 국가자격체계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자격조건 및 기술조건 등을 평가하고 있다.

### 제3절 재무부(The Treasury)<sup>14)</sup>

#### 1) 연 혁

재무부는 1840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정부부처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설립초기 재무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일상적인 재정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소수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재무부는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이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총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30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업무

재무부는 뉴질랜드 정부운영의 경제·재정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들의 윤택한 경제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의 4가지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재정 상황에 대한 조언제공
- 독립행정기관들의 재정상황 점검 및 관리
- 정부기관들의 경제·재정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제안을 비롯하여 기관들이 제출한 재정운용안 평가
- 공공부문에 속한 각 기관들의 고성과(high-performing) 달

---

14) <http://www.treasury.govt.nz/>

### 성을 위한 리더십 제공

재무부는 거시적인 업무사명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재무부의 전략적인 우선순위 및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반적인 경제성과의 향상: 재무부는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진입·퇴출 및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유연화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관련된 자문제공, 기업생산성, R&D 및 혁신, 정부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② 안정적·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3-5년 주기)점의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및 독립행정기관들의 손익분석(Crown balance sheet) 등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재정관리, 인플레이 통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향상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③ 효과적인 공공재원 및 공권력의 사용을 비롯하여 이를 통한 재정정책결정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향상노력: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기관의 전략적인 추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정책결과(outcomes)를 산출하기 위한 예산 프로세스 및

재원분배 체계의 발전노력, 공공부문의 성과 및 역량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있다.

- ④ 독립행정기관들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하위 포트폴리오 기관들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및 성과측정, 운영과정과 관련된 독립행정기관들의 자산부채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 3) 조 직

재무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구조는 각기 특정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당해부처가 수행하는 경제·재정정책 수행을 위해 상호 연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가 최근에 발간한 2005년 재무부 백서(annual report)에 의한 5개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관리국(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branch)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총괄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운영관련 측면과 정책자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부채관리청을 통한 독립행정기관들의 부채관리, 현금 유동성 및 확정이자예금 등의 관리
- 공공부문 재정관리 시스템, 독립행정기관들의 계약, 소송 관련 위험 등을 관리 제공
- 뉴질랜드 공기업, 독립행정기관 소유기업, 뉴질랜드 항공사, 독립행정기관 재정관련 단체등과 관련된 각종 소유권

이해·채무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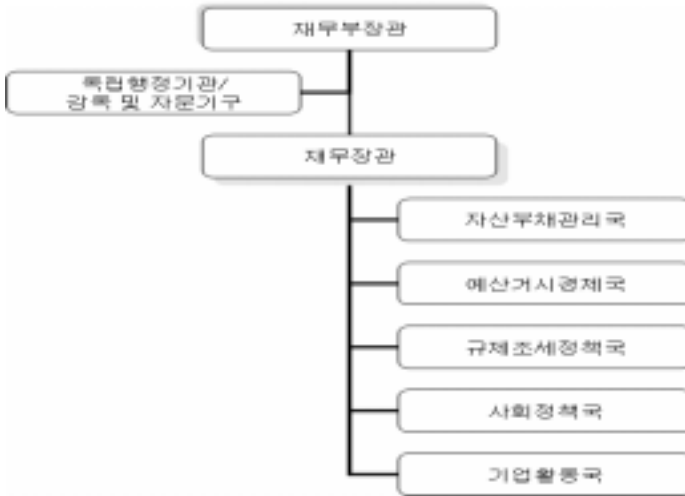
예산 및 거시경제국(Budget and Macroeconomic branch)에서는 다음의 3개 부문과 관련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 독립행정기관들의 재무보고서, 경상수지 예측, 부처별 재정관리 시스템의 검토를 포함한 예산전략·설계·프로세스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ii) 거시경제상황 및 적절한 조세구간의 예측, iii) 독립행정기관들의 회계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 및 조세정책국(Regulatory and Tax policy branch)에서는 정부부처들이 수행하는 환경·경쟁·무역·수송 및 지방행정관련 정책 등과 관련된 규제이슈들과 관련하여 부처장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직·간접세의 수준 및 병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정책국(Social Policy branch)에서는 교육보건 서비스로부터 노동 및 사회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공재 및 사회서비스의 구매 및 규제에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들의 재정 및 예산지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정책 분야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각종 개혁이슈들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lt; 그림 3-4 &gt; 재무부 조직도



기업활동국(Corporate branch)에서는 뉴질랜드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들에게 기업전략 및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재정·기획·인적자원관리·위험관리·의사소통·법률서비스 및 지식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 및 전문가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활동국은 재무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관장하는 정책조정 및 개발실을 포함하며,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중기재정전략에 대한 자문 및 분석업무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정책상 재무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부에 근무하는 인력 역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15)</sup>

15) 2005년 재무부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재무부 5개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004년보다 10명 증가한 32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예산 및 거시

## 1. 수출신용청(Export Credit Office)

### 1) 연 혁

수출신용청은 재정능력 부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2001년 1월에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수출신용청은 뉴질랜드 재무부 산하조직으로서,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해외(덴마크)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수출신용청은 뉴질랜드 내 민간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과 관련된 시장격차(market gaps)를 해소하고 수출관련 종사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sup>16)</sup>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조 직

수출신용청은 크게 3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출신용청장은 재무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수출신용청의 운영 및 수출거래 관련 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신용청 업무의 위험관리전략 설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

---

경제국과 규제 및 조세정책국의 인력증가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16)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이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정부기관 혹은 공기업에서 서주는 연대보증 혹은 보험의 형태를 의미한다.

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지점(agent)의 운영 및 성과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점에서는 신용보증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리·위험관리 및 가격 책정(pricing) 등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부채관리청(New Zealand Debt Management Office)

### 1) 연 혁

부채관리청은 독립행정기관들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등 장기적인 재정편익을 극대화하고 정부부채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인 국민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되었다. 부채관리청은 재무부의 자산부채관리국과 업무가 연계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은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1984년 선거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질랜드는 일련의 미시·거시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정책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orman, 2002).

- 가격, 이자율 및 봉급 등과 관련된 통제철폐
- 뉴질랜드 달러의 자유유동정책 및 자본통제정책의 폐지
- 한계세율의 경감 및 과세표준의 확대
- 보조금 및 가격보조정책의 폐지
- 재정운용기관들의 자산지불준비율 정책의 폐지

·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포괄적인 개혁정책 실시

위와 같이 부채관리청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부채관리청이 탄생하게 되었다.

## 2) 주요업무

부채관리청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Horman, 2002).

- 정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유지
- 정부의 총차관요구액에 대한 파이낸싱, 순 외환이자 및 원 금지불을 위한 외환자산의 관리, 모든 부채거래의 회계처리 및 결제
- 정부의 회계전략 및 부채관리청이 내부정책에 상응하는 시장 · 신용 · 유동성 · 자금지원 · 운영과 관련된 위험관리
- 시장 · 신용 ·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조정수익률에 근거한 포트폴리오 부가가치의 극대화
- 정부부처들의 현금지출 및 부처별 현금관리의 보조
- 정부가 지향하는 중기재정정책에 근거한 정부부처 및 독립 행정기관들에 현금대출 및 복합금융상품거래의 수행
- 뉴질랜드 재무부, 기타 정부부처 및 정부조직들을 위한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된 조언의 제공
- 재정예측 및 보고를 위한 채무상환 추정치 및 회계보고서의 제공

- 뉴질랜드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 소유자 및 투자자와 재정중개자, 국제신용평가 기관들간 적절한 관계의 유지 및 발전노력

### 3) 조 직

재무부장관(minister)은 독립행정기관들을 대표하여 모든 자금지출을 승인하며 대부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부채관리청장은 재무부 장관에게 조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성과 및 활동 등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 부채관리청장은 일상적인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부채관리청장 아래에는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포토폴리오관리국, 위험관리국, 회계거래국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당해기관이 수행하는 경영기획 및 예산, 전략적 위험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감사위원회와 정부채권과 재무부가 발행한 재정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거래 등에 대한 행정적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이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Crown Company Monitoring Advisory Unit)

### 1) 연 혁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1993년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행정기관 및 관련연구기관, 그리고 기타 독립행정기관 관련기관들과 관련된 양질의 영리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해관계자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재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독립된 행정기관이다.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독립행정기관들의 운영성과 및 소유권 이슈 등에 관하여 해당부처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부의 경우 독립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수치 및 재정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각 기관들의 성과 및 수익이 발생하는 환경,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행정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들의 성과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조언제공은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만이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다음의 4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검토(경영기획,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달성 여부, 부문별 운영상황 등에 관한보고), 소유권(전략적 이슈, 투자 및 투자기회의 다각화, 정부정책의 영향 등과 관련된 자문), 거버넌스 및 인사(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관리자들과의 파악 및 조사, 임명절차의 관리, 독립행정기관들 중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 등이 있다.

### 3) 조 직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은 3개의 부문별 감사 및 자문을 수행하는 팀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의사소통·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팀, 에너지·토지 및 환경관련 팀, 그리고 과학 및 혁신관련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들 팀조직들은 운영과정상 임용 및 거버넌스 팀에 의해 행정적인 보조 및 지원을 받고 있다.

제4절 문화유산부(The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sup>17)</sup>

## 1) 연 혁

1865년 식민지박물관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로 뉴질랜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국립박물관 및 예술전시관,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퀸 엘리자베스 2세 예술위원회 및 Historic Places Trust 등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및 조직들이 설립되었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노력은 종래 뉴질랜드 내무부의 문화예술유산국(the Arts and Cultural Heritage Division)으로부터 유래된 문화유산부가 1991년 설립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2) 주요업무

문화유산부는 뉴질랜드 문화·예술·역사적 유산·체육·방송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포트폴리오 분야 내 수행되는 세부사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유산부가 수행하는 5개 분야에는 문화·예술·역사적 유산·체육·방송 등이 있다.

---

17) <http://www.mch.govt.nz/>

< 그림 3-5 > 문화유산부 조직도



문화유산부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업무사명 중 특히 재정지원(funding) 및 이를 지원받는 독립행정기관들과의 관계설정은 당해부처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예술·역사적 유산 및 체육·방송분야에 활동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 지원 및 지원성가에 대한 평가
- 문화예술 관련분야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제공
- 뉴질랜드 역사관련 연구, 저술 및 출판업무
- 뉴질랜드 역사에 대한 자문제공 및 관련연구를 위한 보조

### 금 지급

- 역사유적, 전쟁기념비 및 역사적 묘비 등의 관리
- 유적관련 법률(the Antiquities Act, 1975)의 집행
- 뉴질랜드 문화주권(뉴질랜드 국기·국가·문장<sup>18)</sup> 등을 포함)과 관련된 상징 등과 관련된 입법례의 집행
- 지역박물관 정책 및 Waitangi Day Fund 집행

### 3) 조 직

문화유산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준거국, 역사국, 유적관리운영국, 독립행정기관담당국, 정책국, 이해관계자의사소통국 및 사무국 등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조직으로는 법률자문가 및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부족의 보존을 위한 Kaihautu Māori 등도 설치되어 있다.

준거국(Reference Group)은 2002년 6월 설립되었고, 뉴질랜드 고유의 원주민 역사를 후손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가지 대표적인 작업(Te Ara: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들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국(History Group)에서는 뉴질랜드 역사 및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역사연구, 뉴질랜드 전쟁사, 기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제반 연구를

18) 문장(coats of arms)이란 가문(家門)이나 단체의 계보(系譜)·권위 등을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를 의미한다.

실시하고 있다.

유적관리운영국(Heritage Operations Unit)에서는 뉴질랜드 유적을 보전 및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마오리 부족들이 사용하던 유품들의 무역 및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물(국가, 국기 등)의 보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술박물관 및 전시관들과 기념비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 담당국(Agency Group)에서는 각 독립행정기관들에게 지원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유익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된 성공사례 등을 여러 기관들에 제공하고 있다.

정책국(Policy Group)에서는 문화·예술·역사적 유산 및 체육·방송분야와 관련된 입법, 주요정책안, 관련부문에 중요한 발전계획 및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한 정책자문 및 대외에 공식적으로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국(Stakeholder Communications)에서는 미디어 관계 등을 포함한 부처의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관장하며 있다.

사무국(Corporate Services)에서는 부처업무에 관련된 모든 내부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한 기능별 조직이외에 지원조직으로서 마오리 부족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Martin Wikaira,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자문국(Principal Legal Adviser), 인적자원 관련이슈 등을 담당하는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Manager),

연구 및 사서국(Research and Library Advisor),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웹관리국(Web Editor) 등이 있다.

## 1. 문화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

### 1) 연 혁

문화예술위원회는 뉴질랜드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일반대중들이 수행하는 예술 활동으로 부터 전문적인 예술가 및 관련조직들에 대한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법(the Arts Council of New Zealand Toi Aotearoa Act 1994)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 2) 주요업무

“예술발전(arts advocacy)”은 뉴질랜드 문화예술 정책방향의 출발점이자 정책추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는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원(funding)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자금을 뉴질랜드 복권보조금이사회(New Zealand Lottery Grants Board)<sup>19)</sup>와 중앙정부(문화유산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뉴질랜드의 문화·예

19) 뉴질랜드 복권보조금이사회는 뉴질랜드 의회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을 지닌다([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Lottery-Grants-Index](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Lottery-Grants-Index)).

술·역사적 유산 및 체육·방송분야 관련단체들에 적절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0)</sup>. 자금지원 이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예술가 및 예술조직 관련 각종사업의 추진
- 장·단기 관점에 따라 뉴질랜드 내 산재된 예술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지원액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 수행
- 국내외 대중들에게 뉴질랜드 예술에 대한 향수기회의 제공 및 이들을 예술가 및 관련단체들과의 연계로 예술단체들의 자생력 기반을 위한 토대를 마련
-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관련단체들의 수익제고를 위해 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뉴질랜드 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의 수행
- 뉴질랜드 원주민 예술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노력
- 문화적 다양성 증진 노력
- 뉴질랜드 환태평양 지역 예술의 인식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 수행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

20) 2005-2006년 회계연도에 문화예술위원회는 뉴질랜드 복권보조금이사회로부터 1천8백60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정부로부터 1천4백 70만 달러, 부가적인 정부추가지원액(additional one-off government funding)으로 3백40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 3) 조 직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유산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유산부는 당해부처 장관의 지휘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의 총괄적인 조직운영은 예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각종 자금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결정의 경우에는 Te Waka Toi, 예술이사회 및 환태평양 예술위원회 등이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웰링톤,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략적인 운영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술이사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술이사회는 지원받는 자금의 할당 및 이를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태평양 예술위원회는 환태평양 거주하는 예술가 및 지역사회 관련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에 배치된 구성원들은 전술한 제사업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책제안, 각 위원회에 예술관련 정보제공,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계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영화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 1) 연 혁

영화위원회는 뉴질랜드의회법(Act of the New Zealand Parliament, 1978)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영화위원회는 영화의 제작·진흥·배포 등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영화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장편 및 단편영화의 양적·질적 증가를 위해 영화제작자들에게 제작자금의 대부 및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기자본조달 등 다양한 파이낸싱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영화위원회는 직접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영화들의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및 마케팅 업무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화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편영화 제작지원
- 단편영화 제작지원
- 장·단편영화 판매 및 마케팅 : 각종 국제영화제, 주요 언론과의 효과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뉴질랜드 영화의 판매 및 홍보

- 장편영화 질적 향상 노력 : 영화위원회가 설정한 자금지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류의 장편 영화들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영화관련 프로젝트 추진
-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디렉터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 3) 조 직

영화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3개의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즉 총괄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재정 및 감사위원회 등이 있다. 총괄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는 8명의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리고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위원회가 설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독립영화제작자 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1년에 평균 7회정도 모임을 가지며 주로 장편영화 지원과 관련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 및 감사위원회는 영화위원회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 각종 관련정책 및 지원결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사후감사 및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유적관리재단(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 1) 연 혁

유적관리재단은 뉴질랜드의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학습과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

해 1954년 설립된 기관이다. 유적관리재단은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법률적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역사유적지법(Historic Places Act, 1993)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운영기관이다.

## 2) 주요업무

유적관리재단은 역사적 유적지의 소유권 보존을 비롯하여 관광객 유치 및 방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유적지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 유적지의 발굴 및 발굴된 유적지들에 대한 보존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적관리재단은 역사적 유적지뿐만 아니라 wahi tapu 지역을 포함한 뉴질랜드 전역에 걸친 역사유적, 역사적 건물, 지역 및 Maori 부족관련 유적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고학적 유적지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노력
- 역사적 유적지, 건물 및 지역들에 대한 등록업무
-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근거한 역사적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
- 역사적 유적지의 소유권 보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보존 노력

## 3) 조 직

유적관리재단은 재단이사회와 마오리유적위원회에 의해 주

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이사회 본부는 웰링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무소들은 Kerikeri, Auckland, Tauranga, Wellington, Christchurch 및 Dunedin 등에 있다. 각 지역사무소들은 자원관리 및 유적지 등록서비스를 포함한 유적지 보존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사무소들은 지역별 공동체 및 관련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계 운영되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문화유산부 장관이 위촉·임명하고 있다. 마오리유적위원회는 마오리유적위원회법(Historic Places Trust Act, 1993)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3인의 마오리 부족재단 위원들과 4인의 문화유산부장관 추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적관리재단은 지역별로 당해재단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23개 분과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별 수요 등을 유적관리재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 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 1) 연 혁

교향악단은 국가적 전문 오케스트라로 1946년 설립되었다. 1989년까지 “Radio New Zealand”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그 이후 정부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 연간 100여회의 정기공연을 수행하고 있고, 90여명의 연주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교향악단은 1994년 제정된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법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Act 1994)’ 제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사명을 가지고 있다.

- 오케스트라는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다수의 오케스트라 공연 레퍼토리를 준비
- 뉴질랜드 음악연주자들의 역량개발
- 뉴질랜드 국민들의 관현악(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 및 향수기회 확대
- 국가적 차원에서 관현악을 즐기는 애호가의 확대노력
- 오케스트라의 순회공연 기회확대
- 소관부처인 문화유산부와의 협의에 따라 당해기관의 주요 존립목적에 상응하는 기타기능의 수행
- 뉴질랜드 교향악단과 유사한 설립목적들을 가진 기관 및 조직들과 상호협력 및 공동연주회 실시

## 3) 조 직

교향악단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오케스트라 연주진, 그리고 관리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5인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주진들은 Rotating System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관리부서는 단장, 부단장, 인사지원국, 예술지원 및 행정국, 운영관리국, 인적자원국, 마케팅관리국, 후원국, 정보회계국 등이 있다.

## 5. 국립박물관(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 1) 연 혁

국립박물관의 역사는 1865년 최초 박물관장이었던 James Hector의 지도아래 뉴질랜드 의회건물 뒤 작은 목조건물로 지어진 Colonial Museum이었다. 1903년 Augustus Hamilton 이 박물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웰링톤에 공공예술박물관으로서 성격과 지위를 가진 박물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13년 뉴질랜드 의회법이 현재 마오리족과 폴리네시아민족의 문화 유산을 모아 놓은 도미니온박물관(Dominion Museum)으로 알려진 건물 내 국립예술박물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과학 및 예술법(the Science and Art Act)”을 통과시키면서 그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립박물관의 설립은 1930년에 이르러 “국립박물관 및 도미니온 박물관법(National Gallery and Dominion Museum Act)” 하에 당해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의 공식명칭은 “테 파파 통가레와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이다.

### 2) 주요업무

1992년 제정된 뉴질랜드 “테 파파 통가레와 뉴질랜드 국립박물관법(The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Act 1992)”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 유지 및 발전노력
- 전시품 보존 및 관리
- 일반국민들이 접근 가능한 전시품 관리
- 전시회 개최
- 전시품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연구
- 전시물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 박물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다른 박물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전시품 사용의 극대화

### 3) 조 직

국립박물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국립박물관내에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능별 행정조직들(기금개발·영리·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기업서비스·마오리부족관련 등)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문화유산부가 설정한 기준 및 요건에 준하여 조직의 총괄적인 성과를 책임지며 이사회 위원들은 문화유산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구체적인 국립박물관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당해기관의 전략적 운영방향 및 정책설정
- 박물관장 임명 및 관장에게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권한위임
- 박물관 및 박물관장의 운영성과 검토
-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유산부, 기타 정부부처, 의회 의원, 지원단체 및 대중들과 적절한 관계설정 노력

- 박물관 존립근거 및 운영목적에 준한 운영여부에 대한 회계·정책감사

## 6. 방송표준원(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 1) 연 혁

방송표준원은 1989년 방송법(the Broadcasting Act 1989)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관(the Crown Entities Act, 2004)이다. 문화유산부내 방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관(Minister of Broadcasting)을 통해 의회에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방송법 제21조에 따르면, 방송표준원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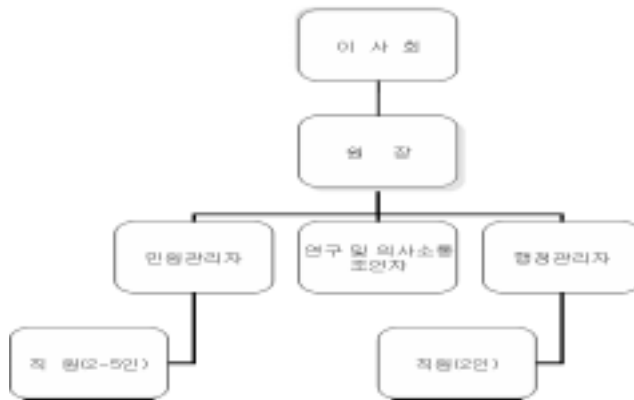
- 방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 및 불평 등에 대해 접수 및 사실관계 판단
- 방송관련 규칙들의 개발
- 방송기준 및 방송윤리규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연구 및 권고의견 발표

### 3) 조 직

방송표준원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이사회는 4인의 전임위원들과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9인의 구성원을 갖고 있

다. 4인의 전임위원들은 방송장관(Governor-general)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변호사(barrister) 혹은 법무관(solicitor) 자격이 있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4인의 위원 중 1인은 방송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나머지 1인은 비영리 시민단체들로 각각 협의 및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또한 이사회는 방송관련 각종 민원 등에 대해 중재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준 사법기관(quasi-judicial powers)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방송표준원의 이사회는 당해기관의 거버넌스 및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중요한 2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3-6 > 방송표준원 조직도



출처: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2005: 17).

## 7. 방송위원회(New Zealand On Air)

### 1) 연 혁

방송위원회는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에 의해 설립된 방송진흥과 관련된 자금지원 기관이다. 과거 국영 TV였던 TVNZ가 독립행정기관의 형태로 변화하고 라디오 및 TV 부분에 경쟁개념이 도입되는 등 방송 분야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산물이라 하겠다. 이처럼 방송위원회의 설립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공공방송사업 및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방송분야가 영리위주의 상업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초기 방송위원회는 공공방송기금의 모금을 통해 적립된 자금들을 공공방송사업 및 관련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0년 공공방송기금 모금이 폐지되면서 정부로부터 직접 제공되는 자금에 의한 방송관련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방송위원회는 방송진흥과 관련된 자금지원 기관이다. 방송위원회는 라디오 및 TV와 관련된 지역 콘텐츠(local content) 개발 지원업무가 주된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당해기관의 지원분야는 지역별로 만들어진 TV방송 프로그램, 뉴질랜드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음악분야, 벽지지역 등에 대한 방송전송범위 확대사업, 라디오 및 TV방송기록의 보존사업 등이

다. 자금지원이 수행되는 방송분야는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 대다수 일반대중들이 관심을 갖지만 영리목적상 시장이 개입하기 어려운 분야
- 영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며 소수 대중들의 관심분야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발전가치가 인정되는 분야

방송위원회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 제36조에서 방송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들이 소개되고 있다. 세부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국민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업증진 및 마오리 언어·문화증진을 통한 뉴질랜드 문화 및 민족적 정체성의 증진노력
- 영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존속될 수 없는 지역 및 국민들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민들의 방송에 대한 선택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함
- 소수민족을 포함한 공동체 내 여성·청소년·아동 및 장애인·소수민족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송제작 노력 및 뉴질랜드 내 다양한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반영한 방송범위의 확대노력
- 뉴질랜드 역사를 반영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수집 및 보존노력

### 3) 조 직

방송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방송관련 진흥을 위한 정책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이사회를 두고 있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이사회 위원들간 1년에 6회에 걸쳐 모임을 가지고 지원방향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현재 방송위원회의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3년의 단임제를 갖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무국을 갖고 있다. 사무국은 13인의 구성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방송 산업과 관련된 자금지원, 관련정책 연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다. 13인의 구성원들은 각기 전문분야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지휘 하에 인사업무 담당·TV 담당·정책연구 담당·소비자관계 담당·계약 및 소비자 관계 담당·음악 담당·재정행정업무 담당·사업 및 경제적 분석업무 담당·행정사무 담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 8.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 1) 연 혁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는 Hillary 위원회와 체육재단, 그리고 관광체육청 정책국을 통합하여 2002년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법(the 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Act, 2002)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 2) 주요업무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국정운영의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 중에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및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보장 등을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분야 정책추진을 위해 뉴질랜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정책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업무수행의 최고 정점은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장관(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이 위치하며,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인 SPARC 형태로 구성된다. 한편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장관의 업무수행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당해 기관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산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다.

## 3) 조 직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관련 정책을 형성 및 결정하는 이사회와 이사회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이 있다. 위원회의 이사회는 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레크리에이션과 체육 및 관련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위원들의 임명은 지명위원회에 의해

스포츠레크레이션장관(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이 위원 후보들을 추천하고 최종결정은 문화유산부 장관의 재가에 의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새로운 이사회 위원들의 임기는 3년 단임제이다. 한편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안들을 집행하는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휘아래 6개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별 하위조직에는 참여국, 성과국, 정책조정국 등이 있다.

참여국에서는 스포츠레크레이션 조직들간 유기적인 연계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과국에서는 당해분야의 성과제고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조정국에서는 현안들간 정책조율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케팅 및 공공사업국, 사무국, 마오리 부족관련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마오리부족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는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7월 1일부로 변화된 조직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당해기관의 조직개편은 ①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 이해관계 집단들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② 스포츠레크레이션위원회가 설정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기관운영 및 투자결정을 수행하며, ③ 정부관련 당해기관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④ 스포츠레크레

이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다. 조직개편은 특정부서의 규모상 증감이나 인원삭감 등이 목적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인 엄격한 성과평가 등을 거쳐 그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조직구조의 변화의 영향력을 판단하게 된다.

## 9.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Drug Free Sport New Zealand)

### 1) 연 혁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은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에서 캐나다 육상선수인 Ben Johnson의 금지약물 복용 혐의는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선수들의 약물복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게 되었다.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은 올림픽 등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뉴질랜드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약물관련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여러 관련연구 및 조사 등을 거쳐 2000년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의 설립을 가져왔다. 설립근거가 된 근거법은 1994년 제정된 뉴질랜드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법(New Zealand Sports Drug Agency Act, 1994)이다.

### 2) 주요업무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은 1994년 제정된 뉴질랜드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의 역할은 뉴질랜드 운동선수들이 도핑(doping)

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하며 도핑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육 강대국로의 지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관련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해,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은 모든 형태의 체육관련 도핑에 반대하는 단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 및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제반교육 및 관련연구 등을 위한 연계기관들에 자금지원, 약물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방식의 개발 및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조 직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조직운영은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수행되며, 위원들은 문화유산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이사회는 당해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있으며, 최대 5인의 전임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이사회 위원들은 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5절 환경부(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sup>21)</sup>

### 1) 연 혁

환경부는 환경법(the Environment Act, 1986)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년), 위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년), 오존층보호법(Ozone Layer Protection Act, 1996년) 및 기후변화반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

### 2) 주요업무

환경법에 의한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법 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조언제공
- 환경보존 등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존입법 및 환경평가 요구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 기초 및 자치단체 수준의 환경정책 기획 및 정책형성 과정에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확보 노력
- 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분야들에 대한 연구수행 및 정보수집
-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 및 위해물질들의 관리통제

---

21) <http://www.mfe.govt.nz/>

-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및 환경정책 입안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촉진 등 환경정책의 시행
- 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자문제공

모법에 명시된 법률적인 기능이외에도 환경부가 제시한 조직사명 및 비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주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환경 거버넌스의 형성 및 정책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환경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환경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 단체에 적절한 리더십 제공
-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영역 및 조직들과 파트너십 구축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개입시 발생하는 문제들의 적절한 해결
- 뉴질랜드 내 양질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노력

### 3) 조 직

환경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6개의 작업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발간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작업집단 중 기후변화집단은 구조조정으로, 소속이 지속가능한 산업집단으로 이관되는 조직 변화가 있었다. 하부조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7 > 환경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6: 62)

고위관리단(Senior management group)은 환경부 최고수반인 사무차관과 차관보, 그리고 분과별 5명의 일반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관리단은 당해부처 내·외부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의 연계 및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합동추진단(working with Central Government)은 정부차원에 따라 수행되는 환경관련 입법을 비롯하여 정책개발 및 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정책결정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의 조정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

지방정부합동추진단(working with Local Government)에서는 집단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환경관련 문제들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의 성과보고 및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 환경기준의 설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은 지속가능한 경영사례를 개발하고 생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내 배기가스방출 감소를 위한 정책적 조치, 지속가능한 조달사례 등 환경관리 혁신사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고조사단(Reporting and review)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며 당해정책 및 입법의 효율성을 검토 및 외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및 Maruwhenua집단(The Urban and Maruwhenua Group)에서는 환경부의 포트폴리오 운영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도시행정과 환경문제의 연계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등을 연구하며 Maruwhenua team은 뉴질랜드 원주민인 Maori 족의 자원관리와 관련된 이슈 등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 및 커뮤니티단(Corporate and Community group)에서는 커뮤니티 내 환경문제의 중요성 및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전략적·계약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1. 환경위험관리청(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 1) 연 혁

환경위험관리청은 1996년 제정된 “위해물질및신유기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환경위험관리청의 주요사명은 뉴질랜드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위해물질 및 신유기체들에 대한 수입·개발 및 현장실험(field test)과 관련된 주요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위해물질및신유기체법에 근거한 환경위험관리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위해물질및신유기체법 제5장에 근거하여, 환경위해 관련 손실비용 및 편익분석, 위해물질 및 신유기물 등에 대한 승인 및 인허가 업무수행
- 위해물질및신유기체법 및 당해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뉴질랜드 상주기업들의 순응여부 조사
- 위해물질 및 신유기물의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public awareness) 제고노력
- 위해물질및신유기체법과 관련하여 모기관인 환경부 장관에게 자문제공
- 환경 위해 관련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추진
- 환경관련 사고 및 응급사태 등에 대한 조사

### 3) 조 직

환경위험관리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환경관련 위해물질 및 신유기체와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환경위험관리청이 있다. 마오리 부족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당해 청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서의 Ngā Kaihautū Tikanga Tai ao이 있다. 그리고 환경위험관리청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조직으로서 당해청 사무국(agency)이 있다. 위 기관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위험관리청은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위해물질 및 신유기체와 관련된 준사법적기관과 정책결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최대 8인의 위원들(현 8인)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Ngā Kaihautū Tikanga Taiao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으며 뉴질랜드 원주민들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당해 청에 관련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당해위원회는 원주민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최대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위험관리청 사무국은 8개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에서는 위해물질 및 신유기체와 관련하여 당해청 및 Ngā Kaihautū Tikanga Taiao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개의 기능별 조직에는 신유기체국, 위해물질국, 전략 및 분석국, 공공인지국, 위

해물질 이전국, 사무국, 뉴질랜드 원주민 관련국 및 법률사무국등이 있다. 각 세부조직들은 팀 조직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팀의 사무를 책임지는 팀장 등이 있다.

## 2. 지역환경보존청(Environmental Bay of Plenty)

### 1) 연 혁

지역환경보존청은 1989년 11월 25개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지역환경 관련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환경보존청은 뉴질랜드의 현재,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증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환경보존청은 뉴질랜드 국토와 대기·수질환경의 보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행위의 영향을 조사하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의무적인 자원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정책 및 정책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관련기관들과의 공동 기획 및 연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지역환경보존청의 주요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대기환경 보존
- 재난통제
- 연안관리
- 환경관련 모니터링

- 홍수조절
- 지열관리
- 위해물질 및 폐수관리
- 육로수송 및 토지계획
- 수질오염 관리
- 자연재해 방지 및 최소화 노력
- 선박들의 항해 및 안전운항 보조
- 유해생물 관리
- 유해식물 관리
- 오염원 통제노력
- 자연자원 관리
- 하천 및 배수장치 설비
- 도로관리
- 해양자원 보존노력

### 3) 조 직

지역환경보존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환경보존과 관련된 지역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지역환경보존청은 Tauranga, Western Bay of Plenty, Rotorua 그리고 Eastern Bay of Plenty 등 4개 지역 및 마오리 자치부족 지역(Kohi, Mauao and Okurei)으로부터 선출된 14명의 지역위원회 의원(councillors)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환경보존청의 구성원들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별 이해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환경보존

청의 조직구조는 청장 및 부청장의 지휘아래 6개 세부조직(전략정책국, 인적자원 및 사무국, 재정국, 지역 및 자원관리국, 이해관계국, 운영서비스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8 > 지역환경보전청 조직도



### 3. 캔터베리환경청(Environment Centerbury)

#### 1) 연혁

캔터베리환경청은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개발을 비롯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환경관련 재정·인적비용의 관리 하에 현재 및 미래세대와 기업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원획득 및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센터배리환경청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양질의 대기보존·유지 및 상대적으로 오염된 지역들의 대기환경 정화노력
- 수질환경 보존노력
- 위해물질 및 폐기물 사용·저장·수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역효과 감소노력
-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 지역 육상교통로 개발계획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대중수송체계계획·자금제공 및 조정노력
-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노력 및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마련 노력
-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항구 등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지역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들의 가치인식과 보존노력
- 양질의 토양보존 및 토양의 침식훼손 등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대기·생태 및 역사적 유적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수행
- 지역사회내 시민응급방어체계의 구축노력
-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 노력

### 3) 조 직

캔터베리환경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 심의회(Council)와 위원회(Committee) 조직에 의한 정책결정 방식이다. 심의회 위원들은 모두 1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직이며 9개 선거구에서 각기 선출된다. 심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심의회 위원 개개인들은 세부 위원들에게 중복 소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크게 4개 조직으로 재분류되는바, 이는 상임위원회, 도시·자치구 연계위원회, 포트폴리오 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들은 각기 세부적인 분야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들에 대한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은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다. 집행기능을 총괄하는 집행이사 및 각 기능별 조직들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관리이사의 지휘아래 6개의 조직을 갖고 있다. 재정 및 사무국, 규제국, 조사검토국, 정책기획국, 대외협력국, 운영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남섬환경청(Environment Southland)

### 1) 연 혁

남섬지역은 뉴질랜드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자들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지역이다. 당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섬환경청이 설립되었다. Southland Community와의 파트너십

을 통해, 남섬환경청은 당해지역의 대기수질 및 해안에 서식하는 자연자원들의 보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남섬환경청은 남섬지역위원회로도 명명되고 있다.

## 2) 주요업무

남섬환경청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자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기분야

- 관련입법 “지역대기질보존계획”에 따른 대기환경 보존업무
- 대기오염 수준조사
- 24시간 오염신고전화 운영
- 대기분야 자원활용계획<sup>22)</sup>의 실행 및 성과검토
-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 대기와 관련하여 남섬지역 주민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 ② 수질분야

- 지역수질계획, 자원관리법, 지역해충관리전략, 저수지 계획 등 관련입법에 따른 수질보존 업무수행
- 수질 및 수량조사
- 지하수 및 대수층 관련연구
- 수질분야 자원활용 계획의 실행 및 성과검토

22) 자원활용계획(resource consents)이란 뉴질랜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각종 자연자원들을 사용 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http://www.mfe.govt.nz/issues/resource/participation/consents/>)

- 수질관련 규제준수 및 조사인력 양성
- 호수관리
- 수질보존을 위한 지역집단들과의 연계업무 수행노력

### ③ 토양분야

- 지역배수지이용계획, 자원관리법, 산업유치지역 우수사례 기준지침, 폐기물관리계획 등 관련입법에 따른 토양보존 업무
- 토양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원 및 자문
- 토양분야 자원 활용계획의 실행 및 성과검토
- 토양개발의정서 실행
- 위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및 지역 폐기물 최소화와 관련된 정책수행
- 가축관련 질병예방·박멸 및 관리시스템개발
- 토양관련 주정부 및 지역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 ④ 연안·해안 분야

- 연안보존계획, Cruise Ship Deed of Understanding, 지역개발통제계획 등 관련입법에 따른 연안·해안보존 업무
- 저수지 및 산업폐기물조사
- 연안·해안분야 자원활용계획의 실행 및 성과검토
- 위해물질의 해안접근 및 침전방지 노력 및 관리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에 따른 연안·해안분야 보존노력

전술한 분야별 업무이외에도, 남섬환경청은 Southland community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들을 보조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대표(Community Representation) : 지역이 가진  
자연자원 및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및 관련 서비스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보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견해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
- 환경교육 :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환경관  
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수행
- 환경관련 민원상담 및 창구개설 : 환경관련 민원 등의 신  
속한 해결을 위한 24시간 전화응답 업무수행
- 지역개발 계획설정 : 미래 세대들을 위한 자연자원의 보호  
및 개발업무 수행을 위해 연도별 지역개발 계획을 설정함.
- 위해물질 관리 : 해상의 석유유출 등과 같은 위해물질 등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계획 설정 및 관련자  
문 제공
- 환경정보 보호 : 환경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
- 자원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노력 : 해안지역 및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관련활동 수행
- 환경관련 규제준수 노력 : 오염관련 민원처리 및 오염유발  
자 등에 대한 규제준수 의무부과
- 배수 및 하천관리 : 하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배수관련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정책 등의 입안·실행
- 토지관리 :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친환경적인 토지관리 시

### 스텝 개발노력

- 해충관리 : 광우병 등 소 관련 질환 예방노력 등의 실행 및 관련인자를 유발하는 각종 해충 등의 박멸노력
- 기업서비스 : 당해기관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인 지원업무 수행

### 3) 조 직

남섬환경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내 설치된 다른 독립행정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련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행정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섬지역은 매 3년마다 지역을 관리·운영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며, 이들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입안 및 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총 12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 위원회들을 갖고 있다. 토지관리위원회, South Port New Zealand Sub-committee, 기업관리 및 감사위원회, 지역민방위원회, 지역육로수송위원회, 환경관리위원회, 지역서비스위원회 등이 있다.

남섬환경청의 집행사무를 보조하는 사무국은 77명의 인력들이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남섬환경청의 인력들은 관련 분야들의 과학자, 정책기획가, 자원관리자, 규제준수 담당자, 행정사무 수행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당해 조직의 업무를 총괄·관장하는 총괄관리자와 총괄관리자의 지휘아래 기능별 조직으로 환경관리국, 환경정보국, 정책기획

국, Catchment 관리국, 사무국, IT 서비스국, 가축방역국, 규제준수부, 재정국 등 9개국이 설치되어 있다.

## 5. Waikato 환경청(Environment Waikato)

### 1) 연 혁

Waikato 환경청은 뉴질랜드 북부지역에 위치한 Waikato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 1989년 설립되었다. 와이카토환경청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으로부터 자연자원의 보존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방위 체제구축으로부터 지역복지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 광대한 편이다.

### 2) 주요업무

와이카토환경청은 뉴질랜드 중북부 지역에 산재한 토지수질대기 및 자연 자원들을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육로수송, 가축방역 및 지역 민방위 업무총괄
- 환경관련 규제 · 교육 · 컨설턴트 및 조정업무
- 수질관리, 하천관리 및 해상활동 관리
- 해충통제 및 박멸노력
- Waikato 지역 육로수송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의 조정
- Waikato 지역 내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위해물질의 적절한 관리

· 홍수통제, 토양보존 및 배수로 문제 등의 해결노력

### 3) 조 직

와이카토환경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환경부내 다른 독립행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와이카토환경청은 당해지역 환경관련 이슈들에 관한 정책입안 및 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조직인 사무국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먼저, 와이카토환경청내 정책결정기관인 위원회(Council)는 14인의 선출직 위원들(1인 위원회 위원장 겸임)로 구성되며, 이들은 Waikato 지역의 환경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위원들은 매 3년마다 선출되며,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환경관련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1개의 소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다. 소위원회는 재정 및 감사위원회(5인 위원들로 구성), 정책 및 전략위원회(12인 위원들로 구성), 홍수방지 및 토양보존, 그리고 배수관계 업무 등을 논의하는 Catchment Services Committee, 가축방역위원회, 규제위원회, 지역 육상수송 위원회, 환경위원회, 지역민방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이카토환경청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속한 사무국과 당해국 지휘 하에 업무를 전담하는 8개 기능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가축방역국, 사무국, 재정 및 지역서비스국, 인적자원국, 정책 및 전략기획국, 자원정보국, 자원이용 및 환경교육국, 하천 및 Catchment 서비스국 등이 있다.

제6절 건설주택부<sup>23)</sup>(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sup>24)</sup>

## 1) 연 혁

건설주택부는 2004년 11월 설립되었다. 당해부처는 신규로 설립된 조직이라기보다는, 환경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거 유사한 이슈들을 다루는 여러 부처의 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건설 및 주택관련 기능들은 과거 경제개발부, 내무부, 그리고 사회개발부로부터 이전된 것들이다.<sup>25)</sup> 당해부처가 2006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래 다른 부서들에서 분리 운영되었던 건설 및 주택관련 기능들이 통합되어 한 부처에서 총괄운영하게 된 취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건설 및 주택관련 분

---

23) <http://www.dbh.govt.nz/>

24) 기존 뉴질랜드 건설주택부 소속기관으로 주택산업청(Building Industry Authority)이 존재했으나, 2004년 11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 기관이 건설주택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현재는 주택규제국(Building Controls)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또한 소속기관 중 하나로 뉴질랜드 주택관련 소송 등을 심리하는 뉴질랜드 주택소송국(State Housing Appeal Authority)이 존재하나,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자료를 수집·파악할 수 없었다.

25) 다른 부처들로부터 이관된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부(Ministry of Housing) 수행업무 전체
- 2002년 제정된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에 명시된 관련업무
- 신주택법(New Building Act) 관련업무 및 건설·주택관련 인허가 업무
-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및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관장하던 “퇴직자주택관련 입법(Retirement Villages legislation)” 수행사무
- 주택건축 기준, 수영장 울타리(the fencing of swimming pools) 관련 입법

야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확보하고, 정부에 양질의 건설 및 주택분야 자문제공하고 대중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2) 주요업무

건설주택부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분야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규제환경 확보
- 주택 및 임대주택 분야 관련규제
- 주택·건설관련 효율적인 정보, 자문 및 갈등해결 기제의 개발노력
- 뉴질랜드 주택국이 수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 및 정책방향 조언
- 주택관련 항소위원회 운영
- 주택분야 및 세입자 시장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책적 자문제공
- 주택·건설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제공
- 세입자 시장규제관련 정책적 자문제공
- 주택분야 내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ing)<sup>26)</sup> 제공
- 주택의 공급품질 및 입주가능 가격의 검토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환경분석
- 뉴질랜드 주택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

26)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ing)’란 정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자에게만 특정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면허하는 것을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search.naver?query=occupational%20licensing>).

-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 “뉴질랜드 주택전략 프로그램” 하에 진행되는 특별사업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수행노력

### 3) 조 직

건설주택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주택 및 건설정책국, 거주자 서비스국, 규제국, 갈등중재 및 해결국, 기업서비스 지원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3월 31일 현재 272인의 전임직원 및 38인의 비상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건설주택부의 구성원들은 미거주 주택 등에 대한 계약업무 및 특정업무를 위한 부가적인 역량개발 및 전문가적 지식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주택부의 본부는 웰링톤(Wellington)에 있고, 164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러지역에 분산 운영되고 있다. Porirua에 설치된 기관은 계약기능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원주민 부족 거주지역을 포함한 20여개 지역에 지역사무소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lt; 그림 3-9 &gt; 건설주택부 조직도



출처: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2004: 11).

## 1. 주택공사(Housing of New Zealand Corporation)

### 1) 연 혁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법(Housing Corporation Act, 1974)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주택공사개정법(Housing Corporation Amendment Act, 2001)에 근거해 6월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독립행정기관이라는 조직형태에 의거해 2004년 제정된 독

립행정기관법(Crown Entities Act, 2004) 역시 설립근거법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 주택공사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주택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뉴질랜드 주택공사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주택 및 주택관련 서비스, 주택관련 정책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택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제적·사회적인 이유로 주택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뉴질랜드 주택공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 주택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적 자문제공
- 다른 주택관련 기관들과 함께 “뉴질랜드 주택전략”의 수행 및 성과보고
- 건설주택부 장관에게 정책적 자문 및 지원
- 주택관련 연구 및 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 주택 입주자들에게 주택관련 자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용 택지개발 및 취득 프로세스 개선
- 대부, 보조금 등 제3영역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주택 보급 및 지원확대
- 지역사회와의 연계확대 노력

- 일반대중들에게 주택소유 기회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택소  
유상품제도 확대시행

이외에도 뉴질랜드 주택공사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사회적 주택건설과 관련된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  
적 자문 및 연구제공
- 뉴질랜드 주택전략의 수행동안 시행효과에 대한 다차원적  
인 검토와 관련된 전정부차원의 주택전략조정위원회 운영
- 관련기관들과의 협조 하에 주택전략계획의 결과 및 전략  
적 목표 등의 추진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성과  
지표 개발노력
- 임대시장 및 사회적 주택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주택환경  
의 분석

### 3) 조 직

주택공사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건설주택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와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결정 사항들을 집행하는 집행국이 있다. 이사회는 8인의 비선출직 이사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들은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 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위원장이 결정되며, 위원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분기별로 뉴질랜드 주택공사가 수행한 업무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

인이 포함된다. 이사회는 당해 기관이 추진하는 주택전략, 주요 자본사업, 회계정책, 주택관련 민간 기업들이 수행할 수 없는 계약업무 등의 승인을 포함한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해조합의 연계, 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된 뉴질랜드 주택공사의 전략적 운영방향의 설정, 집행국의 국장선임, 성과평가 및 근거법에 의한 기관운영 등을 관장하고 있다.

집행국의 경우 집행사무를 총괄하는 집행이사와 5개 하위 부서들의 일반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부서외 기타부서로서 보증서비스국 일반관리자의 경우 집행이사에게 직접 성과보고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6개 하위 부서들은 주택서비스국, 자산서비스국, 지원국, 전략서비스국, 주택혁신국, 보증서비스국 등이 있다.

## 제7절 과학기술·연구부<sup>27)</sup>(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 1) 연 혁

과학기술연구부는 과학기술 및 연구시스템을 관리하고 연구 및 혁신정책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뉴질랜드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시스템은 다양한 관련 조직들 간에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과학기술연구부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의 투자 및 관련자금의 관리
-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제공
  -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노력
  - 뉴질랜드 과학기술 구조개편
- 과학기술 및 연구관련 지식 및 정보들의 상업화 및 혁신유도
- 과학기술분야와 연계된 유관분야 조직들과 협조체계 구축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 3) 조 직

과학기술연구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4개의 기능별 하위

---

27) <http://www.morst.govt.nz/>

조직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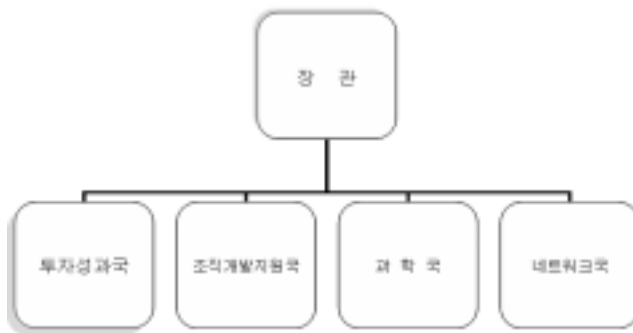
투자 및 성과국(Investment and Performance)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분야 투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발 및 지원국(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Support)에서는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국(Science)에서는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의 정보 및 지식들을 통합·운영관리하고 있다.

혁신네트워크국(Innovation Networks)에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사회·환경 정책들간 혁신과 통합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장들과 당해부처 장관은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관리팀(senior management team)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그림 3-10 > 과학기술연구부 조직도



## 1.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

### 1) 연 혁

바이오농업연구소는 정부연구기관법(Crown Research Institutes Act, 1992)에 근거하여 설립된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연구기관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주도적 위치의 기관이며, 생물과학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최대 규모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경제구조상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통해 뉴질랜드와 자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복지 상태를 증진하는 것”을 주된 업무사명으로 삼고 있다. 당해 기관은 동식물 유전체학, 식품과학 및 관련분야 기술, 생물학적 방제 및 가축방역 시스템, 동물보건, 농산물 생산체계, 토지 및 환경관리, 동물사료 및 관련행태연구, 복제기술 및 바이오분야 관련통계 및 자료축적 분야 등에 있어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주요업무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업무분야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즉 농업 및 환경분야, 응용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식품 및 보건분야, 상업화 서비스 분야 등이다. 각 분야별 업무사명과 업무수행 구조는 아래와 같다.

- ① 농업 및 환경분야 : 실험실에서 연구된 연구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 경험들간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기술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응용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양질의 풀과 동물사육이 가능하도록 동식물 유전체학 및 생식관련 연구를 통해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힘쓰고 있다.
- ③ 식품 및 보건분야: 국내외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양질의 가축사육 및 이를 통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④ 상업화 서비스 분야: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에서 생산한 과학기술 등의 상업화 등을 통해 뉴질랜드 낙농분야의 수익창출 및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 3) 조 직

바이오농업연구소(AgResearch)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타 독립행정기관들과 유사하게 기관의 주요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행정팀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총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1인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팀은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사명에 따라 기능별 하위조직을 9개 갖고 있다. 즉 역점과학분야 전략실, 농업 및 환경분야실, 응용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실, 식품 및

보건분야실, 상업화 서비스 분야실, 재정사무실, 정보관리실, 기업사무실, 인적자원실, 법률사무실 등이 있다.

바이오농업연구소가 발간한 “Corporate Profile (2005)”에 따르면, 당해 기관의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문분야별 과학기술 인력(670명)
- 박사학위 인력(264명)
- 기업관리 및 개발분야, 상업화 추진인력(41명)
- 지원업무 사무직원(243명)
- 5개 주요연구기관(research centres) 내 연구인력
- 행정사무직원(954명은 전임에 준하는 직원임) 1,310명

## 2.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 Technology)

### 1) 연 혁

과학기술연구재단은 뉴질랜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연구재단법(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 Technology, 1990)에 의거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과학기술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의 공적자금을 지원 및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 과학기술 및 연구를 위한 최대 규모의 자금지원 및 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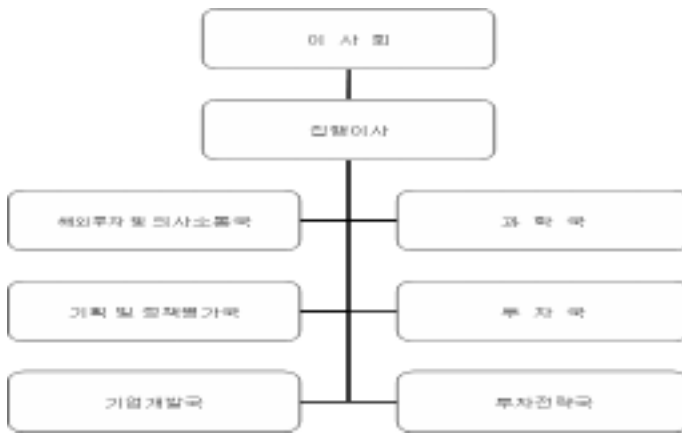
과학기술연구재단은 뉴질랜드 정부에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기술강국 계획”에 근거하여 뉴질랜드를 기술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련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회·경제·환경적인 발전을 위하여 뉴질랜드 국민, 기업 및 연구조직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개발 framework에 근거하여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집단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대부분의 지역에 전문가 준거집단 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우수한 역량을 지닌 과학기술 관련분야 인력들의 정보과 악 노력
- 뉴질랜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관련 정부·민간기관) 및 국제적인 파트너십 구축
- 뉴질랜드가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역량개발 계획수립
-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의 관련된 타당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 정부의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 투자성과의 홍보

### 3) 조 직

과학기술연구재단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연구부장관을 통해 의회에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임명된 이사회 위원들을 통해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를 집행조직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재단의 전체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11 > 과학기술연구재단의 조직도



출처: <http://www.frst.govt.nz/about/orgstructure.cfm>

이사회 위원들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이 각기 호선된다. 이사회는 다시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연구재단은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더니든 및 해밀턴 등 4개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 등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이사의 지휘아래 6개국(해외투자 및 의사소통국, 과학국, 기획 및 정책평가국, 투자국, 기업개발국, 투자전략국)등이 설치되어 있다.

### 3. 학술원(Royal Society of New Zealand)

#### 1) 연 혁

뉴질랜드 학술원은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국립과학학술원으로서 60개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2만여 명의 개인회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1867년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1,300명의 개인회원들과 363명의 특별연구원, 21명의 명예회원, 50명의 학술원 위원, 10개부서, 10개 협력단체, 웰링톤에서 근무하는 36명의 상근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업무

학술원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과학기술 수준을 증진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과학기술을 대할 수 있는 문화 및 분위기 조성노력
-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제고
- 과학기술 관련교육 강화
- 과학기술 우수성 인식 및 증진노력

-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개발노력에 대한 지원 및 기초인프라 제공
- 과학기술관련 윤리적 기준 마련 및 검토
- 주요 공공이슈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제공
- 과학기술 분야 지식들의 발간 및 유포
- 정부를 대신하여 뉴질랜드 과학기술분야 펀드집행(Marsden Fund 등)
- 과학기술 분야 국제 교류협력 증진노력

### 3) 조 직

학술원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학술원법(Royal Society of New Zealand Act, 1997)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1인을 선출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인 차원에서 분야별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현재 총 13개 위원회가 있다.

학술원에서는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위원회 및 학술원 회원, 그리고 분야별 상근연구원, 명예회원, 특별연구원 등이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 연구자금지원국, 위원 및 연구원국, 교육국, 의사소통국, 재정행정국, 출판국, 국제협력국, 정책국 등이 있다.

#### 4. 벤처투자 재단(New Zealand Venture Investment Fund)

##### 1) 연 혁

벤처투자재단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벤처투자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기관이다. 벤처투자재단은 민간부문 관리자들에 관리·운영되는 벤처자금과 Seed Co-investment Programme에 대하여 민간부문과의 공동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벤처투자재단은 아래와 같은 핵심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위임계약을 체결·운영되고 있다.

- 벤처자금펀드의 운영 및 성과조사
- 벤처투자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신규 벤처자금펀드의 설립
- 뉴질랜드 벤처자금 시장의 개발 및 성장지원
- 뉴질랜드 벤처자금시장과 관련된 기록 및 자문제공
- 벤처투자재단 벤처자금펀드 투자관리
- 벤처투자재단프로그램 성과와 관련하여 정부에 보고

벤처투자재단은 일련의 민간영역에서 관리되는 벤처자금투자펀드들에 대한 공동투자에 따른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벤처자본에 의한 모태펀드(Fund of Funds)라 할 수 있다.

### 3) 조 직

벤처투자재단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있다. 벤처자본과 관련된 경력 및 투자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벤처투자재단 운용프로그램의 거버넌스 및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의 정책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팀은 벤처투자재단의 프로그램 집행을 전담하고 있으며, 집행이사의 지휘아래 4개 하위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위부서에는 회계 및 행정국, 집행관리국, 핵심정책 분석국, 사업관리국 등이 있다.

제8절 마오리 개발부<sup>28)</sup>

(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Te Puni Kōkiri)

## 1) 연 혁

마오리개발부는 마오리개발부법(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Act, 1991)에 의거하여 199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마오리개발부가 수행하는 직무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에 마오리 부족과 관련된 양질의 정책적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오리부족들의 개발목표를 돕기 위해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관설립 및 지속적인 행정관리를 통해서 마오리부는 관련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 효율성 검토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검토 및 내부사업평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오리 원주민과 관련된 통계 및 연구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출판기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마오리개발부의 주요기능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육·훈련 및 고용, 보건 및 경제·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마오리 부족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의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전문화된 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마오리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정부 및 공공기

---

28) <http://www.tpk.govt.nz/default.asp>

관들과의 연계노력을 비롯하여 성과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이래로, 마오리개발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마오리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이루어온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마오리인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마오리인(Maori succeeding as Maori)’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

### 3)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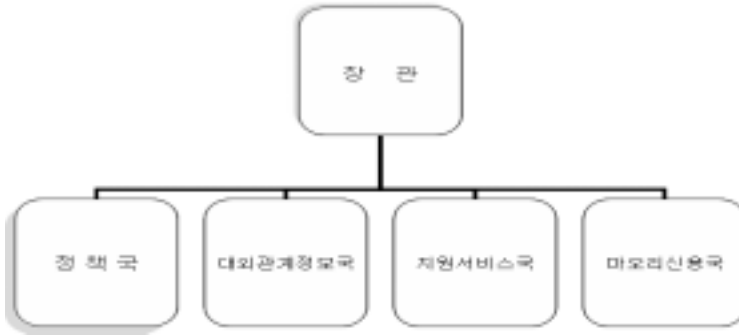
마오리개발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4개의 정책부서들이 있다. 4개의 기능별 정책부서들은 정책국, 대외관계 및 정보국, 지원서비스국, 마오리 신용국 등이 있다. 이중에서 마오리 신용국은 독립행정기관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정책국(policy)에서는 마오리 부족민들이 원주민으로서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외관계정보국(Relationships & information)에서는 뉴질랜드 내 9개의 지역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iwi, hapu, whānau 및 마오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토착민으로서 고유한 정체성과 경험 등을 웰링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서비스국(Support services)에서는 당해부처가 만들어내는 산출물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t; 그림 3-12 &gt; 마오리개발부 조직도



출처: <http://www.tpk.govt.nz/about/structure/default.asp>

## 1. 마오리 신용국(Maori Trust Office)

### 1) 연 혁

마오리 신용국(Maori Trust Office)은 1921년 설립되었으며, 마오리신용국법(Māori Trustee Act 1953)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마오리신용국은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마오리지역 토지소유자 및 지역법원(Māori Land Court) 등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마오리신용국의 역할은 마오리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마오리지역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매 및 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 혹은 대행자로서 활동
-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관련세제 징수
- 금전신탁(trust moneys)<sup>29)</sup> 관련투자
- 기관배분을 위한 미지급자금현황(The Unclaimed Moneys List)<sup>30)</sup> 공개 및 관련자료 발간.
-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 3) 조 직

마오리신용국의 조직국을 살펴보면 웰링톤에 위치한 본부 조직과 5개(Aotea, Tairawhiti, Waikato-Maniapoto, Waiariki, Taitokerau)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 2. Maori 방송기금청(Maori Broadcasting Funding Agency, Te Māngai Pāho)

### 1) 연 혁

Maori 방송기금청은 방송을 통한 마오리어 및 마오리 문화의 계승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마오리방송

29) 금전신탁(Trust money)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 금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전액을 금전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5&docid=1159>).

30) 미지급자금현황(The Unclaimed Money List)은 어떠한 실질자금들이 MTO에 의해 관리되는지를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기금청은 개정방송법(the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93)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마오리방송기금청은 의회 및 마오리개발부 장관에게 기관운영 및 관련성과 등을 보고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 2) 주요업무

마오리방송기금청은 마오리어로 방송되는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 마오리 관련 TV 프로그램 및 마오리어 음악CD 생산자들과 마오리어 라디오 방송국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관련자금 마련
- 구체적으로 매일 6~8시간동안 마오리어로 송신되는 21개 라디오 방송들에 대한 지원자금 제공
- 독립 제작된 마오리어 TV 및 라디오 방송들에 대한 지원

## 3) 조 직

마오리방송기금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Te Māngai Pāho Board)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기관운영의 전략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자금들과 관련된 정책 및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 및 기타 당해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순응 및 평가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및 9인의 전임직

원들을 두고 있다. 구성원들은 세부적으로 마오리방송기금청의 마오리어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자들간의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계약의 작성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3개의 분과별 관리자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라디오 지원 포트폴리오, TV 지원 포트폴리오, 기업서비스부 등이다.

제9절 관세청<sup>31)</sup>(New Zealand Custom Services)

## 1) 연 혁

관세청은 국제무역 및 여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자원 및 재화의 합법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관세청은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1840년 1월 5일 설립되었고, 가장 오래된 정부기관중 하나이다. 설립초기 형성된 관세청의 근본적인 역할과 주요기능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운영의 방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주된 세입원으로서 초기역할 및 운영방식으로부터 벗어나 1980년대~1990년대에는 국제무역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기관운영이 이루어졌다.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테러이후 당해 기관은 자국으로 수출·입되는 재화 및 승객의 안전과 국경지대의 안보역할 등으로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위해 폐기물 및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제품들과 같은 위해물질과 포르노그래피, 약물, 화기 등의 생산물들에 대한 자국 내 수입을 통제 및 금지하고 있다.

31) <http://www.customs.govt.nz/default.htm>

## 2) 주요업무

관세청이 담당하는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경을 이동하는 재화, 인적자원 및 선박 및 비행기 등의 이동시 위해여부 관리
- 국가간 무역 및 여행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 및 자국내 법 규사항(여행자 및 이들의 우편·수하물 등의 검색)들에 대한 준수노력
- 특별 독립행정기관 세입 부과 및 징수- 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sup>32)</sup> 등
- 국가간 무역 및 세입원의 위해여부 관리와 관련된 전략적인 정책자문 제공
- 다른 정부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경지역 무역관련 서비스 제공
- 수출입 금지품목의 수입통제
- 불법무역행위에 관련하여 자국 기업인들의 보호
-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수출입 규제 및 금지
- 정확한 수출입 자료수집

## 3) 조 직

관세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뉴질랜드내 주요 국제공항 및 항구 등에 배치된 직원들을 포함하여 약 1,300여명의 직원

32) GST(Goods and Services TAX)란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조세제도 중 하나로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http://cafe.daum.net/nzickevin>).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내 15개 지역(Hamilton, Palmerston North, Queenstown and Timaru 등)에 배속된 구성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관세관련 업무들은 대개 Brussels, Beijing, Bangkok, Washington 및 Sydney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리더십 및 운영방향을 제공하는 사무국(Corporate Services)을 포함하여 4개의 상호연계된 운영부서들을 갖고 있다. 집행국(Strategic and Executive Services)은 기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 및 위해요인분석국(Audit and Risk)에서는 기관성파를 평가하고 위해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운영을 전담하는 4개의 세부운영부서, 관련정책 추진 및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5개의 세부정책 및 행정관리 부서 등으로 구분된다. 4개 세부 운영부서들은 정보·기획·조정국과 무역국, 위해물질 등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조사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반응국, 항공운송 안전관리 및 이와 관련된 조세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수송국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5개 세부 정책 및 행정관리 부서들은 인적자원 및 조직개발국, 정책연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국, 정보서비스국, 재정 및 기업지원국, 법률문제 등을 관장하는 법률국 등으로 구분된다.

< 그림 3-13 > 관세청 조직도



출처 : <http://www.customs.govt.nz/about/Who+We+Are/ORGANISATION+CHART.htm>

제10절 농림부<sup>33)</sup>(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1) 연 혁

농림부는 1892년 뉴질랜드 토지부(Department of Crown Lands)의 가축국(Stock Branch)과 농업부(Agriculture Branch)가 합병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농림부는 뉴질랜드 농임업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892년 설립이후, 당해부처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조직개혁을 통해 부처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및 기능에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조직변화는 1995년 추진된 해양수산업부가 일부 독립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고, 1998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임업부(Ministry of Forestry)가 합병되어 현재의 농림부로 되었다. 그 외 1998년 11월 기존의 농림부의 품질관리 기능(MAF Quality Management)과 관련 규제기능 및 기관들(Regulatory Authority)이 특화하여 2개의 독립행정기관으로 분화되었다.<sup>34)</sup>

## 2) 주요업무

농업부는 농업, 임업, 지역사무, 차단방역(biosecurity)<sup>35)</sup> 및

33) <http://www.maf.govt.nz/>

34)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vt.nz/mafnet/profile/history/index.htm>)에 따르면, 1998년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품질관리 기능은 Asure New Zealand Ltd와 AgriQuality New Zealand로, 규제기능은 MAF Food Assurance Authority와 MAF Biosecurity Authority 등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연자원과 생물학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뉴질랜드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뉴질랜드 정부 및 지역사회에 농·임업 이슈들과 관련된 정보, 분석자료 및 자문 등을 제공
- 뉴질랜드 농·임업 관련 생산품들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협조체계 구축
-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및 규제설정,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인한 인증제도를 통해 해외소비자들이 뉴질랜드 제품들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 뉴질랜드 농가 및 야생생물들이 자국 내 병존하는 각종 병균 및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병균 및 질병들의 최소화 노력수행
- 국유지 관리
- 홍수 및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농가들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등을 위한 지원노력(농가별 Telecommunications 강화 등)

---

35)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생물체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역형태를 의미한다(<http://100.naver.com/100.nhn?docid=783451>).

· 환경친화적 농업시스템 구축노력

### 3) 조 직

농림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기관의 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농림부 장관(Director-general)의 지휘아래 3개의 기능별 조직들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림 3-14 > 농림부 조직도



출처: <http://www.maf.govt.nz/mafnet/profile/businesses/>

농림부 차관의 직접적인 하부조직으로 기업서비스 관련기관들(Corporate Services Groups)이 있다. 이들은 주로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다른 운영부서들과의 원활한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 및 정보관리국, 법률사무국, 대내외 의사소통국, 시설관리 및 인적

자원관리국 등이 이러한 부류의 운영기관들에 속한다. 한편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서 마오리주민전략국과 차단방역전략국, 그리고 부처자체 평가국 등을 들 수 있다.

마오리 주민전략국(Maori Strategy unit)에서는 Waitangi 조약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며 마오리 주민들과 관련된 이슈 및 관심사항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 정부와 마오리 주민들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설정 및 정책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단방역 전략국(Biosecurity Strategic Unit)에서는 뉴질랜드 농임업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차단방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처자체 평가국(Corporate Assurance and Risk)에서는 다양한 평가기능 등을 통해 농림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차관(assistant director-general)의 하부조직으로는 정책국,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차단방역국, 방역국(Quarantine Service), 삼림국 등이 있다.

정책국(policy)에서는 농림부가 수행하는 경제·환경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하여 정책적 자문과 정보, 관련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ies)은 농림부에 소속된 준 자치기관으로서, 공공보건 및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

의 유통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차단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에서는 농림부의 차단방역 기능을 대행하며, 방역국은 국가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차단방역과 관련된 위해여부를 조사·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삼림국(Crown Forestry)에서는 자국내 존재하는 삼림자원들의 영리적인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을 관리하고 있다.

## 1.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 1) 연 혁

2002년 이전까지, 뉴질랜드의 식품행정은 크게 2개의 기관에서 분리 집행되었다. 뉴질랜드 식품법(Food Act)에 근거하여 식품관리 및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식품법 이외의 법률(the Animal Products Act, the Meat Act, the Dairy Industry Act, the Agricultural Compounds 및 Veterinary Medicines Act)에 의해 기타 식품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농림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원화된 관리 및 집행체계에 의해 뉴질랜드 내 식품 생산업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들은 식품관리와 관련된 일관성 및 조정체계의 혼란 등을 겪게 되었다. 특히 식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혼란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식품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 뉴질랜드 정부는 농림부 산하의 준자치기관(semi-autonomous)으로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 2) 주요업무

식품안전관련 이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제고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공공보건 및 식품안전이 증진을 위한 관련활동 수행
- 뉴질랜드 식품 및 식품관련 생산물들의 시장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위의 핵심기능 수행과 예측 가능한 뉴질랜드의 식품행정 및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은 식품규제 프로그램(food regulatory programme)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행태와 기대치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식품생산 및 분배시스템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더 나아가 새롭게 예상되는 위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당해기능의 수행을 위해 식품안전청은 국가간 무역사무 등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3) 조 직

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9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및 기반조직국에서는 기관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집단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시장접근국(Market Access group)에서는 자국내 생산물들에 대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자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상대국의 대상기관들에 대해 상호협정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및 식품기준국(Policy & Food Standards group)에서는 당해기관이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 및 양질의 식품생산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기술적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생산물 및 수의학 관련 의약품 승인국에서는 농업생산물과 수의학 관련 의약품들의 기준체계 등에 대한 집행·평가 및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국(Verification Agency)에서는 수출상품(주로 육류제품)들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수출기준국(Export Standards group)에서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품 및 식품과 관련된 상품들이 정해진 수출허용 기준(export standards)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 및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국(Science group)에서는 식료품 관련 기준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등을 설정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준수 및 조사국(Compliance and Investigation group)에서는 설정된 식료품 관련 기준들이 실제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필요한 경우 관련 상품들에 대한 조사 및 통제조치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품기준국(Standards group)에서는 뉴질랜드내 식료품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생산·판매과정·수입·수송·저장 및 판매 전 과정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평가·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차단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

### 1) 연 혁

차단방역국은 뉴질랜드 방역차단위원회에 의해 2003년 제정된 “뉴질랜드 방역차단 전략”의 준수 및 실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및 인간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각종 치명적인 질병(SARS)과 같은 가축 및 인간관련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2) 주요업무

차단방역국은 농림부의 지휘아래, 뉴질랜드 차단방역 체제와 관련하여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은 다음

과 같다.

- 뉴질랜드가 지향하는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의 향상 및 우선순위 책정노력
- 뉴질랜드 공공방역시스템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효과적·협력적인 관계형성
- 뉴질랜드 차단방역 체계와 관련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뉴질랜드 방역차단 전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차단방역법(the Biosecurity Act, 1993) 및 관련 법률의 검토
- 종래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기물(new organisms)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수입품목들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통해 위해성 유기물들의 유입방지
- 뉴질랜드 내에서 발견된 유해물질들에 대한 확산 및 피해발생 장소 등에 대한 통제·예방 등의 종합적인 유해물 관리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수출허가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수출품목들의 사전검사 실시

### 3) 조 직

차단방역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7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기획국, 정책국, 사전관리국, 사후관리국, 가축복지국, 규제순응 및 집행국, 조사진단센터 등이 있다. 차단방역국은 농림부 차관(Assistant Director-General)에게 기관의 성과를 직접 보고한다.

운영기획국(Business & Planning)에서는 차단방역국 구성

원들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전략적·운영상 요구사항들에 부응하도록 하기위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국은 팀제형태(team group)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단방역과 관련된 조직성과가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활동 등이 조직전체에 걸쳐 통합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관련 강령, 정책, 정보제공 및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관리국에서는 차단방역과 관련된 기능수행 중 위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의 사전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후관리국에서는 사전관리기능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나 사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차단방역과 관련된 각종 위해성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순응 및 집행국(Compliance & Enforcement)에서는 농림부에 의해 집행되는 차단방역과 관련된 관련 법률들이 실제 농가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복지국(Animal Welfare)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가축 및 관련제품들의 경쟁력 제고와 최적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기위한 관련정책 및 기준의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진단센터는 농림부 및 차단방역국간 통합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외래 유해물질 및 관련 질병

의 통제 및 효과적인 진단,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방역국(MAF Quarantine Service)

#### 1) 연 혁

방역국은 농림부의 소속기관이다. 뉴질랜드 내 여러 산업들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질병 등의 유입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방역국은 뉴질랜드 영토로 유입되는 사람, 화물, 선적, 항공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검사 등을 통한 유입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역체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 물질들에 대한 인지 및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해기관은 농림부 산하 규제청(MAF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마련된 수입보건강령에 준하여 자국내 위해물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을 집행하고 있다.

#### 3) 조 직

방역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6개의 하부조직을 갖고 있다. 전략개발국(Strategic Development), 재정국(Finance), 서비스국(Services), 지역운영국(Regional Operations), 오클랜드

화물(Auckland Cargo), 오클랜드 공항(Auckland Airport) 등이 있다.

#### 4. 농산물 시장연구 및 개발기금(Agricultural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rust)

##### 1) 연 혁

농산물시장연구 및 개발기금은 1987년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당해 기금은 영국, 호주령 Christmas섬, 뉴질랜드 무인세제 위원회(New Zealand Phosphate Commissions)의 활동종결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3천 2백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뉴질랜드 농산물 시장의 진흥 및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 2) 주요업무

농산물 시장연구 및 개발기금은 농업관련 프로젝트,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박사과정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박사후 과정생에 대한 장학금 및 관련 학술행사 경비지원 등을 포함한 농업, 원예업, 목축업 및 임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경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11절 경제개발부<sup>36)</sup>(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1) 연 혁

지난 수십여 년 간 뉴질랜드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둔화된 성장으로 경제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뉴질랜드가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다 향상된 성과산출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조치로서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당해부처는 건립이 전 뉴질랜드의 관련기능은 미국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와 같은 조직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통합·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현행 기관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2) 주요업무

경제개발부는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아젠다의 개발 및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관련부처 및 기타 독립행정기관들간의 '성장 및 혁신체제'와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해부처는 소비자 사무 및 관광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들은 주로 관련 독립행정기관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경제개발부에서는 서비스 제공

---

36) <http://www.med.govt.nz/>

및 효과성 평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당해부처는 기업 사무, 지적재산권 관련업무, 기타 기업운영과 관련 사무들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노력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개발부는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및 혁신체제 구축노력
- 기업들의 수익제고를 위한 무역을 통한 국제적인 연계노력 추진
- 뉴질랜드 기업들의 기업가적 정신 제고 및 혁신노력 추진
-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질 향상노력 및 시장 경쟁 촉진,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노력
- 기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기반 서비스들의 질과 신뢰성 향상노력

### 3) 조 직

경제개발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6개 분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및 지역개발국, 규제 및 경쟁정책국, 사무국, 자원 및 네트워크국, 소비자 사무국, 조직개발 및 지원국 등이다. 6개의 정규조직 이외에도 장기적인 경제관련 이슈들과 관련하여 각 세부분야별 조직들에게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개발부내 중기 전략팀(Ministry's Medium Term Strategy Group)을 갖고 있다. 6개국의 구성 및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 및 지역개발국에서는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지역

및 산업개발 목표의 발전과 검토, 집행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슈들과 관련된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국의 하위조직으로 관광청(Ministry of Tourism)을 두고 있다. 산업 및 지역개발 국에서는 크게 3개의 부문별 조직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7개의 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개발전략관리자, 부문 및 지역개발 관리자, 중소기업 관리자이며, 개발전략관리자 지휘아래 성장 및 혁신체제팀, 부문 및 지역개발 관리자 지휘아래 지역개발팀과 부문개발팀, 그리고 중소기업 관리자 지휘아래 중소기업팀, 기업역량팀, 연구평가팀,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국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규제경쟁정책국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품질관리, 법률 및 경쟁 프레임워크, 다른 기관들과 관련된 규제통합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지적재산권·기업활동·보안·기업파산(insolvency)·보험·관세·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trade remedies) 관련입법 등을 포함한 30여개 주요법령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활동법 수행국, 경쟁정책국, 지적재산권국, 규제정책국, 무역구제국, 관세정책 및 양허관세국(Tariff Policy and Tariff Concessions)<sup>37)</sup>, 국제기술 및 규제조정국 등 7개 세부조직들

37)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s)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5>).

이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에서는 뉴질랜드 기업들에게 온라인 및 기타 서비스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사무국, 독립행정기관 석유 및 유기물관리국, 전기사업자 인허가국, 기업파산 및 수탁자 서비스청, 보험 및 퇴직관련국, 지적재산청, 라디오 주파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원네트워크국에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해부처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전기통신·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들의 거버넌스 및 규제, 환경관련 이슈들의 관리,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소유된 라디오 스펙트럼 및 기타 핵심적 자원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네트워크국은 전력국·연료 및 독립행정기관 소유자원 담당국·에너지 및 환경국, 에너지 정보 및 모형화국, IT 및 전기통신국, 라디오 스펙트럼 정책 및 기획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소비자 사무국은 소비자국과 에너지 안전서비스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들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에너지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일반대중들의 확신을 형성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당해부서는 정책국, 연구정보 및 역량국, 양질상품 및 공정무역평가국, 안전전력운영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조직개발지원국은 일반적으로 당해부처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별 전문가들의 조언의 제공 및 부서 내·외부 평가 등을 통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해부서는 크게 6개의 하위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국, 재정관리국, 인적자원국, 정보기술국, 지식관리국, 법률국, 위험관리국 등이 있다.

< 그림 3-15 > 경제개발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5: 24-25).

## 1.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 1) 연 혁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는 전력 및 전기관련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 2) 주요업무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는 뉴질랜드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기세를 받는 뉴질랜드 전기사업자들에게 당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반국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전기사업자들의 역량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전기사업을 수행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에게 대한 제재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의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시설 및 역량을 갖추도록 행정적 규제집행
- 등록된 전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 · 허가증 교부
- 안정된 전력의 제공노력
- 자원관리,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

### 3) 조 직

전기사업자등록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Board)가 있다. 이사회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5인은 에너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뉴질랜드에서 출생 및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머지 2인은 이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주요역할은 당해 기관과 관련된 주요사무들에 대한 관리 및 기관운영(governance)이며 전기사업과 관련된 주요입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업무
- 적절한 역량을 갖춘 전기사업자들의 양성을 위한 훈련
- 전기사업자들의 인허가를 위한 사전과정으로서 수업이수 및 관련된 시험집행
- 당해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응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임시허가증 발급업무
- 인허가 관련 규제업무 수행
- 1992년 제정된 전기법(Electricity Act, 1992) 하에 필요한 경우 불법적인 전기사업자들에 대한 기소 및 고발조치

이사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는 매달 열리며 당해이사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산업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들도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당해 이사회는 뉴질랜드 내 전기 및 관련 산업에 종사

하는 이들이 제공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가 주요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국은 크게 2개의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 조직들 산하에 기능별 10개의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다. 2개의 하위조직들은 규제순응 및 조사국과 등록 및 인허가국이다.

## 2. 광물국(Crown Minerals)

### 1) 연 혁

뉴질랜드 광물국은 “Crown Mineral Estate”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스, 기타 광물질(minerals) 및 석탄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광물질단지법(the Crown Minerals Act, 199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 2) 주요업무

광물국은 뉴질랜드내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유기광물질(비금속 및 기타 금속 광물질 포함) 및 석탄자원들의 채굴 및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물국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광물질의 보다 생산적인 채굴 및 개발을 위한 관련 업무수행
- 뉴질랜드 광물질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유도 노력
- 효과적인 광물질 개발·투자과정의 관리
- 뉴질랜드에 산재한 다양한 광물질들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 3) 조 직

광물국의 발간보고서(“*Strategic and Business Plan: 2004 ~2007*”)에 따르면 2003년도에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제공, 운영과정상의 규제 및 대내외 투자자들의 투자확대 노력 등 3개 핵심기능에 중점을 두고 팀(Group) 조직형태로 조직변화를 하였다. 3개 핵심기능별 하위조직에는 석유 및 광물질 투자국, 채굴국, 석유 및 광물질 정책국 등이 있다.

## 3.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1) 연 혁

지적재산청은 1997년 기존의 특허청(Patent Office) 및 관련 기관들의 통합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특허법(Patents Act, 1953)에 근거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s, 1987) 및 상표등록법(Trade Marks Act, 2002)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뉴질랜드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지적재산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특허, 상표등록 및 실용신안이 요구되는 상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조사

- 일반대중들에게 보조금이 부여된 특허, 등록된 상표등록 및 실용신안 관련기록들에 대한 공공정보 제공
- 뉴질랜드 및 다른 국가들에 소속된 특허관련 상세정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제공
- 신규 등록된 상표등록 및 실용신안이 기존의 상표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의 조사
- 상표등록의 공식적인 등록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제공
- 인접국가(호주)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연계 강화
-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정보 데이터 구축
- 지적재산권 등록 및 적정성 문제와 관련된 심리(hearing) 개최

### 3) 조 직

경제개발부의 사무국(Business Services Branch) 내 소속기관 중 하나인 지적재산청은 4개의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검사국, 운영지원국, 대외협력국, 심리조사국 등이 있다.

검사국(Examination Service Group)에서는 실용신안 및 특허를 신청한 이들의 지원서 등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지원국(Business Support Group)에서는 당해 기관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대외협력국(External Relations Group)에서는 당해 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며 지적재산권 관

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심리조사국(Hearing Office)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이를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4. 관광청(Ministry of Tourism)

##### 1) 연 혁

관광청은 지속가능한 뉴질랜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이다.

##### 2) 주요업무

관광청은 자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관광산업 이슈들에 대하여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와 관련된 평가 및 관광관련 각종 이벤트 지원, 관광산업 관련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관광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래세대를 위한 관광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오늘날 관광자원으로서 환경·수산업 및 해양자원들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마련노력
- 해외 관광객들이 뉴질랜드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적절한 관광시설 제공노력
- 뉴질랜드 고유문화 및 마오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개발노력

- 관광산업을 통한 뉴질랜드 경제성장 촉진지원
- 각종 관광시설지원기금 관련사업 및 주요 관광이벤트 지원

### 3) 조 직

뉴질랜드 정부는 2002년 1월 기존의 정부차원에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던 관광스포츠국(Office of Tourism and Sport)을 경제개발부 소속기관의 관광청(Ministry of Tourism)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체육정책은 뉴질랜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조직기능의 확대 및 격상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뉴질랜드 자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관광청은 현재 경제개발부 소속 기관으로 당해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형성하며 경제개발부내 관광청장에게 관광산업과 관련된 독립적인 정책적 자문을 제공한다. 당해기관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그림 3-16 > 관광청 조직도



출처: <http://www.tourism.govt.nz/aboutus/au-structure.html>

관광청은 4개의 하위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책관리국(Policy), 이벤트 및 정부연계국(Events), 관광산업 연구국(Research), 그리고 토지구매 및 소유권국(Crown Purchase & Owners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원은 20명의 전임구성원 및 약간 명의 비상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 5. 라디오 주파국(Radio Spectrum Management Group)

### 1) 연 혁

라디오 주파국은 경제개발부 소속기관으로 라디오통신법(the Radiocommunications Act, 1989) 및 부수법률인 라디오통신규제법(the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1)에 따른 라디오 주파수, 즉 라디오 스펙트럼을 관리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라디오 주파국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라디오 주파국 관련입법, 인허가 및 관련규제의 순응도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제공
- 영리 및 비영리 라디오 주파국간의 혼선 등 각종 문제해결 노력
- 미래 라디오 주파국의 사용을 위한 전략적 기획
- 라디오 주파수 사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조정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뉴질랜드의 지위를 대표
- 라디오 주파수대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업무

이외에도 라디오 주파국은 라디오 주파수 엔지니어링 및

트레이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라디오 공인주파수의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주파수 경매 및 규정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조 직

라디오주파국은 라디오 주파관리국(Radio Spectrum Management)과 라디오 주파정책 및 기획국( Radio Spectrum Policy and Planning) 등 2개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디오 주파수 인허가, 라디오 주파수 관련사업 운영, 주파수 기획, 주파수 정책, 관련규제 순응 및 관련프로그램 수행 등 5개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 6. 기업사무국(Companies Office)

뉴질랜드 기업사무국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선단체, 단위형 투자신탁, 건축조합, 공제조합 및 대안적인 협동조합의 일종인 ‘산업 및 우애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설립 및 등록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제12절 보건부<sup>38)</sup>(Ministry of Health)

## 1) 연 혁

보건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부는 뉴질랜드 공공보건 및 장애인법(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에 근거하여 보건 및 장애인 분야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 보건전략 및 뉴질랜드 장애인전략 등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보건부는 정부차원의 보건정책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조언자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수혜자들간 서비스 격차 제거노력,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현
- 보건 및 보건관련 분야 정부 대행자로서 역할 수행
- 지역별 보건위원회 및 보건관련 독립행정기관들의 기관성과 모니터링
- 보건복지 분야관련 입법 및 규제정책의 집행·관리 및 실행
- 보건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 및 장애인들을 위

---

38) <http://www.moh.govt.nz/moh.nsf>

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협약 등을 통한 양질의 관련 서비스 관리 및 집행

- 보건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별 및 분야들간 조화 및 협력 촉진 노력
- 내실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마련을 위한 국가적인 기획 및 관리
- 공공보건, 장애인 지원서비스 및 국가정책상 중시되는 기타 서비스 분야들의 기획 및 지원업무

### 3) 조 직

보건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장관실 및 내부감사실을 비롯하여 8개의 기능별 하위조직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각 조직별 국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부 차관은 각 분야별 하위조직들의 국장들을 지휘하며, 당해부처 차관과 장관, 그리고 주요 의학자문가들은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팀을 구성하여 상호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기업정보국(Corporate & Information)에서는 보건부가 사용하는 주요 정보들에 대한 정보관리 및 부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서비스국(Clinical Services)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서비스 등에 대한 전략적 기획을 작성하고 당해부처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보건위원회 자금지원 및 성과국(DHB funding & performance)에서는 지역보건위원회 및 독립행정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재정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지원국(Disability service)에서는 장애인 지원정책과 지원서비스 개발 및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오리보건국(Māori Health)에서는 마오리인 및 마오리 장애인들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자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신보건국(Mental Health)에서는 정신보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자문제공 및 정신건강전략(mental health strategy)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보건국(Public Health)에서는 공공보건 관련이슈들에 대한 자문제공 및 관련 입법의 시행과 같은 보건복지 규제집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정책국(Sector Policy)에서는 모든 보건 및 장애인 분야와 관련된 전략적인 정책자문과 장기적인 지원방향 설정 및 규제 프레임워크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당해부처 차관직속의 별도조직인 위험 및 보험실(Risk & Assurance)에서는 내부감사 및 위험관리, 응급의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절반이상은 본부보다는 소속기관들에 배치되어 있고, 양질의 보건복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부는 8개의 국 단위 아래에 8개의 소속기관들을 갖고 있다. 보건지출·협정 및 규제순응국, 임상훈련국, 정보기술 공유서비스국, 국립검역국, 뉴질랜드 안전의료장치청, 공공보건 정보청, 뉴질랜드 보건정보 서비스청, 국립방사선연구국 등이 있다.

또한 조직구조상 보건부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기관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있어 당해 기관의 소속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에는 국립보건위원회, 뉴질랜드 보건연구위원회, 뉴질랜드 보건 스폰서십 위원회, 그리고 뉴질랜드 내 21개 지역별 보건위원회(District Health Committee)가 있다.

< 그림 3-17 > 보건부 조직도



출처: <http://www.moh.govt.nz/moh.nsf/indexmh/soi-part-1-ministry-of-health>

### 1. 보건지출·협정 및 규제순응국(HealthPAC)

보건지출·협정 및 규제순응국은 보건 및 장애인 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지역별 보건위원회를 대신하여 보건지출 적절여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현황과 약 및 이해관계자들간 상호협정 체결, 협정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관련규제 등에 대한 순응정도를 평가·내부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임상훈련국(Clinical Training Agency)

임상훈련국은 취업후 임상훈련프로그램(post-entry clinical training)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연구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임상에 기반을 둔 직업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직업들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임상훈련국은 지원 자금이 제공되는 4개의 간호 관련 프로그램과 정신보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3. 정보기술 공유서비스국(Information Technology Shared Services)

정보기술 공유서비스국에서는 보건부 및 지역별 보건위원회에 당해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 국립검역국(National Screening Unit)

국립검역국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9세 미만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사업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유방암 정기검진, 자궁암 검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5. 안전의료장치청(Medsafe)

안전의료장치청은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의료장치청은 “뉴질랜드 의약 및 안전의료장치청”이라 불리며, 의약법(Medicines Act, 1981) 및 관련법령, 그리고 약물남용규제법(Misuse of Drugs Act, 1975)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의료장치청의 본부는 웰링톤에 있으며, 중앙 집중적인 관리기능 및 의료장치 생산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기준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개 부문별 팀조직에는 약 4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6. 공공보건정보청(Public Health Intelligence)

공공보건정보청은 보건부 공공보건국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공공보건 정책집행의 결과·위해 정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공공보건 수혜격차 등을 조사하여 전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7. 뉴질랜드 보건정보 서비스청(New Zealand Health Information Service)

뉴질랜드 보건정보 서비스청은 뉴질랜드 보건관련 정보 및 자료들의 수집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정보서비스청의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건관련 자료, 관련 통계 및 정보들의 수집 · 처리 · 유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
- 국가전반의 보건관련 정보시스템에 유입되는 자료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 보건관련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노력
- 보건 및 장애인 관련정보기준 설정 및 수집 자료들의 품질감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당해 기관으로부터 확보된 보건정보들의 사용과 관련된 자문, 관련 정보들의 성과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 8. 국립방사선연구국(National Radiation Laboratory)

국립방사선연구국은 방사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방사선 노출의 의학적 · 공익적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관련 장비들의 효능분석과 당해결과를 정부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부서로서, 방사능 및 복사열의 측정업무 등을 종합적

으로 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보건이슈들에 대하여 국제기관들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9. 국립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ttee)

국립보건위원회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국립자문위원회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199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동년 8월 장애인 지원서비스 업무를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의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 및 장애인지원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국립보건위원회는 정부 및 보건부 장관에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민간보건·공공보건·장애인 지원서비스 등 보건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및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자문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국립보건위원회는 보건부에 기관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보건부장관에 의해 위원들이 임명되고 있다.

## 10. 보건연구위원회(Health Research Council of New Zealand)

### 1) 연 혁

보건연구위원회는 1990년 보건연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보건관련 연구증진 및 이를 위한 자

금지원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보건연구위원회가 수행하는 자금지원 분야들에는 공공보건, 보건서비스, 바이오 케미컬, 마오리부족 보건문제, 보건관련 연구 등이 있다.

## 2) 주요업무

보건연구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적 보건연구정책에 관한 자금지원업무 및 보건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부 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제공
- 뉴질랜드내 보건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용·교육·훈련 및 보유 촉진
- 신규 보건연구의 지원 및 개발촉진
- 보건 연구분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컨설팅
- 보건분야 정책 및 보건서비스의 균형 있는 제공을 위한 관련연구 시행
- 보건연구의제를 평가하는 위원회 및 분과별 하위위원회에 의한 적절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적용노력
- 보건관련 연구이슈들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학술행사 개최
- 보건관련 뉴스레터, 정기간행물 발간

## 3) 조 직

보건연구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집행 관리팀이라는 2원

화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건관련 정책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들은 보건부 장관이 임명하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보건관련 사무를 담당하거나 보건관련 기관 및 관련이슈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서, 임기는 3년이다. 보건연구위원회는 4개의 법률위원회 및 4개의 심의위원회, 그리고 기타 2개 하위위원회를 갖고 있고, 당해 위원회들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위원회가 결정한 견해가 보건연구위원회의 정책계획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 및 의무를 집행이사에게 위임
- 조직목표 대비 성과달성 여부의 모니터링
- 보건사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규)제체제 시행

집행관리팀에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내실 있게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운동을 총괄 담당하는 집행이사와 집행이사의 지휘아래 6개의 하부 조직들이 있다. 즉 재정계약관리국, 투자프로세스국, 정책평가 및 기업경영개발국, 마오리 보건연구 및 보건기관관계국, 기업서비스 및 윤리국, 지식관리 및 정보시스템국 등이 있다.

## 11. 보건 스폰서십위원회(Health Sponsorship Committee)

보건스폰서십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금연법(Smoke-free Environments Act, 1990) 제44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스폰서십위원회는 흡연금지, 직사광선 보호, 자전거 보행 및 도보안전, 도박중독과 같은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건관련 이슈들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 및 관심제고 노력
- 보건관련 이슈들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태도 및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력 부여노력
- 지방·주 및 국가차원에서 보건관련 정책들의 협조체계 구축노력
- 보건복지 격차해소, 흡연율, 암 및 심장혈관 질환, 도박중독률의 감소노력, 대중교통 사용률 증가노력 등을 위한 제반노력 경주

### 제13절 내무부<sup>39)</sup>(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 1) 연 혁

내무부는 1840년 설립된 뉴질랜드 대륙장관실(Colonial Secretary's Office)을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며, 설립이 가장 오래된 정부기관중 하나이다. 내무부는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모태부처(the Mother of all Departments)’로 알려져 있다. 내무부는 8개의 무임소장관(Ministerial Portfolios) 및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7인의 장관에게 기관업무 및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독립행정기관 및 기타 책임운영기관들을 두고 있다.

현재 내무부는 기관운영과 연계된 100여개의 관련법령 및 규제를 가지며 있으며, 해외지사(Sydney, London)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19개 지역별로 1,000여 명의 구성원들을 갖고 있다. 또한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연간 약 1억 4천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2) 주요업무

내무부가 지향하는 조직비전(vision)은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필수적인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수행의 리더이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라는 취지아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39)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

- 중앙·지방정부 공유영역 관리
- 민방위 및 위험관리
- 민족적 다양성 지원 및 관리
- 뉴질랜드 귀화절차 집행, 자국 시민들의 가치 및 특성조사
- 뉴질랜드 국민들로서의 정체성 관리
- 여권발급
- 국민들의 출생·사망 및 혼인등록 업무 및 관리
- 자국의 미풍양속 및 일반기준을 벗어나는 간행물 등에 대한 검열법규 적용 및 인터넷 윤리규정 책정 및 사용노력
- 복권보조금, 지역보조금 지원계획, 온라인 보조금의 집행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노력
- 내무부 소속 및 책임행정기관 장관들에게 정책적 자문 및 관련서비스 제공
- 강아지 통제관련 입법(dog control legislation) 및 강아지 안전 캠페인(dog safety campaign) 등의 수행

### 3) 조 직

내무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장관의 지휘아래 5개 기능별 국들이 설치되어 있다.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에는 민방위 및 위험관리부와 민족관련 사무청을 두고 있다. 기능별 하위조직들은 행정서비스팀, 지역사무국, 행정사무지원국, 규제순응국, 대국민편입서비스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서비스팀(Business Services)은 6개(재정·시설·정보기술·연구 및 평가·전략적 의사소통·전략적 인사관리국)의 세

부조직들로 구성되고 분야별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무국(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Branch)에서는 뉴질랜드 내 중앙·지역 및 원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및 관련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관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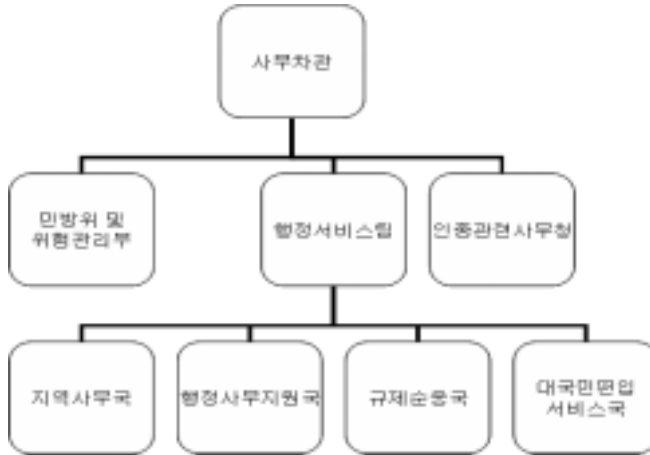
행정사무지원국(Executive Government Support)에서는 당해 부처에 소속된 독립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들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관련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대외홍보물 발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순응국(Regulation and Compliance Branch)에서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건설 및 관리업무와 이를 위한 각종 검열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담당하며 인터넷 윤리구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대국민편입서비스국(Identity Services Group)에서는 자국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즉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출생 및 사망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무부내에는 7명의 무임소 장관들이 있다. 이들은 민방위 장관(Minister of Civil Defense, 내무부 장관겸임)과 부처서비스 장관(Ministerial Services), 지방정부장관(Minister of Local Government), 인종관련 사무장관(Minister for Ethnic Affairs), 지역사회 및 자치사무 장관(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경쟁관련 사무장관(Minister for Racing), 군비축소 및 무기통제 장관(Minister for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t; 그림 3-18 &gt; 내무부 조직도



출처: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About-us-Our-Organization-Structure?OpenDocument](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About-us-Our-Organization-Structure?OpenDocument)

내무부에는 7개 부문별 무임소 장관의 지휘를 받는 14개 독립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별도 지원기관으로서 전술한 민방위 및 위험관리부와 민족관련 사무청 등이 있다.

독립행정기관에는 자선사업위원회, 뉴질랜드 소방서비스청, 영화 및 문학 등급분류 사무국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기관성과는 내무부 규제순응국에 의해 평가 및 환류 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들은 내무부의 6개 무임소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있다.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영화 및 간행물 검열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 명칭부여국(Film and Video Labelling Body), 지역사회 및 자치사무 장관의 지휘를 받는 뉴질랜드 복권보조금 이사회, Kirk 기념재단(Norman Kirk Memorial Trust),

Winston Churchill 기념재단(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Chinese Poll Tax Heritage Trust 등이 있다. 한편 지방정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방정부위원회, 경정관련 사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뉴질랜드 경정산업 위원회, 군비축소 및 무기통제 장관의 지휘를 받는 환태평양 개발 및 보존신탁, 평화 및 군비축소 교육신탁 등이 있다.

### 1. 민방위 및 위험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se and Emergency Management)

민방위위험관리부는 1999년 7월 설립되었고, 민방위 및 위험관리 방식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각종 재앙으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개개인들의 위험에 근거한(risk-based approach) 대처방법을 발전·적용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및 관리역량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제공
-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관구조 설립노력
- 국가적·지역사회 차원 모두에서 재해의 신속한 대처, 피해 최소화, 복구를 위한 접근방법의 모색
- 지방정부의 관리역량을 초월하는 대규모 사건 등에 대한 복구 및 중앙정부차원의 대처노력 수행

## 2. 인종관련 사무청(Office of Ethnic Affairs)

인종관련사무청은 인종 및 민족사회와 관련된 사안들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당해 기관은 비정부 기관 및 각 인종 집단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인종관련사무청은 지역사회 발전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사회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을 위해 자국어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서비스의 제공과 다문화간 공존 및 상호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 3. 자선사업위원회(Charities Commission)

자선사업위원회는 자선사업법(Charities Act, 2005)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종래 경제개발부가 수행하던 자선사업 관련 기능을 2005년 7월 단행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주요기능은 자선단체들의 등록상황의 관리를 비롯하여 자선단체들의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당해 기관들의 공공신탁(public trust)<sup>40)</sup>의 기능강화 노력, 자선사업 영역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강화, 자선사업과 관련된 사안들과 관련된 자문

40) 공공신탁(Public trust)이란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search.naver?query=public%20trust>).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 4. 소방청(New Zealand Fire Service)

소방청은 뉴질랜드 내 상주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은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소방서비스법(Fire Services Act, 1975)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소방청은 화재진압 서비스 및 기타 응급상황(홍수·범람으로 인한 피해, 주민대피, 각종 사고 및 응급후송, 인명구조) 등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및 응급구조 교육, 화재진압 전문가 양성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 소방청의 조직은 1,600여 명의 유급 소방대원들과 8,0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5. 영화 및 문학 등급분류 사무국

#####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영화문화등급분류사무국은 1993년 제정된 영화비디오간행물출판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개의 주요 운영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 기관은 출판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화·비디오·디지털 파일 등의 출판물들을 분류하며 정부부처 및 일반대중들에게 영화문화등급분류사무국에 의해 제공되는 출판물 검열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6. 영화 및 간행물 검열위원회(Film and Literature Board of Review)

영화 및 간행물 검열위원회는 영화문화등급분류사무국에 의해 분류된 간행물들에 대한 조사 및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준사법적 판단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내무부 장관의 추천 및 여성부 및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정되며 이들은 모두 비상근직이다. 위원회 모임은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또한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결정과정 및 최종결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며, 재심을 요구하고자 하는 간행인들은 최초 결정이후 30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7. 뉴질랜드 복권보조금 이사회(New Zealand Lottery Grants Board)

복권보조금이사회는 뉴질랜드 지역사회 복권관련 보조금 등의 분배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뉴질랜드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뉴질랜드 복권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판매 기관,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권보조금 분배와 관련하여 당해기관 이외에도 뉴질랜드 문화예술 위원회, 뉴질랜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 뉴질랜드 영화위원회 등의 책임운영기관들도 관여하고 있다.

## 8. Kirk 기념재단(Norman Kirk Memorial Trust)

Kirk 기념재단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뉴질랜드 수상을 역임한 고 Norman Kirk를 기념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학금 등의 지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9. Winston Churchill 기념재단(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Winston Churchill 기념재단은 세계평화와 다민족 및 문화들에 대한 이해는 해외여행과 문화를 접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뉴질랜드 사람으로서 해외유학이나 문화를 경험하려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65년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당해재단은 정부 및 공공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년 2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10. Chinese Poll Tax Heritage Trust

Chinese Poll Tax Heritage Trust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한 중국인들에게 인두세(Poll Tax) 부과를 통해 차별을 일삼았던 과거 뉴질랜드 정부들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계 뉴질랜드인들의 복지혜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연간

약 5백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상당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당해재단은 초기 뉴질랜드로 이주한 중국계 뉴질랜드인들의 역사적 기여를 인식하고 기념하기 위해 중국어 사용 및 교육기회의 확대, 뉴질랜드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제고, 중국계 뉴질랜드인들의 역사적 공헌에 초점을 맞춘 인종적 다양성의 이해노력, 중국 문화예술의 이해기회 마련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1.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

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에 의해 설립된 자치기구로서 지역사회 및 자치사무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관련 사무들에 대해 자치사무 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지방 행정구역 개편논의 실행, 지방정부들간 기능조정 문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이슈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2. 뉴질랜드 경정산업 위원회(New Zealand Racing Industry Board)

뉴질랜드경정산업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경마 및 이와 관련된 배팅(betting)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경정법(Racing Act, 2003)에 의거 설립되었다. 뉴질랜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경마 및 각종 체육활동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유일한 베팅 전문업체인 Totalisator Agency Board(TAB)의 운영
- 뉴질랜드 경정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편익극대화 노력
- 여가 및 건전한 스포츠로서 경정산업 진흥노력

### 13. 환태평양 개발 및 보존재단

(Pacific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rust)

환태평양개발보존재단은 1989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남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거주민들의 문화적 전통과 환경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14. 평화 및 군비축소 교육재단

(Peace and Disarmament Education Trust)

평화군비축소교육재단은 1988년 5월 자선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당해 기관은 “국제평화의 증진과 군비축소 및 이와 관련된 교육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당해업무와 관련된 연구수행자들에게 연구자금(one-off grants)의 지원 및 장학금 수여(PADET scholarships)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14절 법무부<sup>41)</sup>(Ministry of Justice)

## 1) 연 혁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통합적인 사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법무행정처(Department for Courts)와 법무부를 통합하여 2003년 10월 새롭게 탄생되었다. 법무부의 조직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뉴질랜드의 건설",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법시스템 구현" 등을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법무부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법 및 집행절차, 범죄예방전략, 청소년 범죄, 형량구형 및 집행, 가정폭력 및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sup>42)</sup>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 · 집행
- 헌법규정, 사법제도에 접근성, 각종 인권, 가족법, 의료관련법, 상법, 재산 및 규제관련 법률과 관련된 자문 및 서

41) <http://www.justice.govt.nz/>

42)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현행 형법제도가 종래 사회정의 달성을 위한 '응보적 심판제도(retributive punishment)'로서 특정행위가 어떤 법을 어겼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특정 범죄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이 속한 가족이나 이웃, 넓게는 사회 전체가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법률적 관점을 의미한다. 즉 회복적 정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정한 상벌의 구분보다도, 한 사건으로 인해 뒤튼어진 관계(relationship)를 회복시키는데 법률적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http://blog.naver.com/hey\\_ahn?Redirect=Log&logNo=80022079459](http://blog.naver.com/hey_ahn?Redirect=Log&logNo=80022079459))

### 비스 제공

- 사법체계 및 구조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들의 제공 및 연구
- 와이탕기조약 당시 영국정부와 체결된 역사적 권리조항 등에 대한 연구 및 해석
- 뉴질랜드 의회선거, 보궐선거, 국민투표 등의 관리
- 재판에 부과되는 각종 벌금, 법률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배상금, 각종 부과금 등의 징수 및 집행
- 대법원,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을 지원하는 행정관리 서비스의 관리
- 가정법원 및 청소년 법원을 포함한 간이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관리 서비스 및 부대관리
- 법률에 부가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구현을 위한 연구 및 특별 프로젝트 수행노력
- 환경법원과 관련된 사례관리(case management)<sup>43)</sup>, 사법적 지원 및 등록 서비스 수행
- 마오리 토지법원(Māori Land Court) 및 마오리 항소법원(Māori Appellate Court)과 관련된 사례관리, 사법적 지원 및 등록 서비스 수행을 통해 마오리인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자문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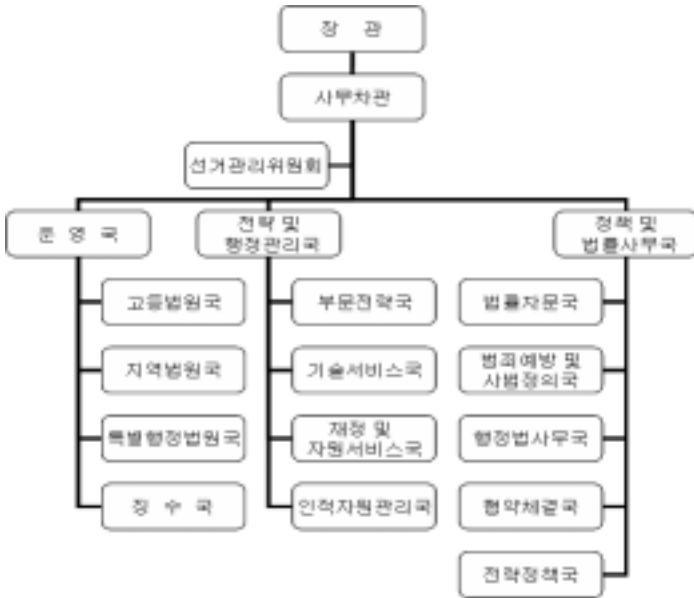
43) 사례관리(case management)란 다양한 욕구를 지니는 고객들에 대하여 그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개별적인 원조계획을 통해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하여 적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기능회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08](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08)).

-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마오리인들의 원활한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해 와이탕기재판소(Waitangi Tribunal)의 재판청구, 항소집행, 관련분야 연구서비스, 공청회 관리, 사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업무 수행
- 분쟁관련 재판, 부동산 렌트분쟁 재판소, 검시배심원 및 기타 법원 및 관련기관들과 관련된 사례관리, 사법적 지원 및 등록 서비스 수행

### 3) 조 직

법무부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3개의 주요 운영부서들과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Chief Electoral Office)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부서에는 운영국, 정책 및 법률사무국, 전략 및 행정관리국 등이 있다. 당해부처의 전략적인 핵심정책방향 및 기관성과평가 등은 법무부 장관과 3인의 부문별 차관들로 구성된 고위정책팀(Executive Team)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 외 고위집행팀과 당해부처 장관에게 직접 기관성과를 보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0인의 일반관리자, 고위 법률자문관(Chief Legal Counsel), 부서별 국장, 협정체결국장(Office of Treaty Settlements), 전략정책국장, 서비스향상국장 등으로 이루어진 고위관리자팀에서는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집행하고 있다. 정규조직 이외에도 당해부처에는 정보기술관리위원회와 감사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의 조직구조는 아래와 같다.

&lt; 그림 3-19 &gt; 법무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Justice (2006: 113).

운영국(Operations)은 당해부처 구성원들의 81%를 포함하는 부서로서, 고등법원국(Higher Courts), 지역법원국(District Courts), 특별행정법원국(Special Jurisdictions), 징수국(Collections) 등의 4개 하위부서들이 있다. 고등법원국은 뉴질랜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사례관리 및 판시업무를 수행하며 지역법원국은 가정법원, 청소년 법원 등을 포함한 지역법원들의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행정법원국은 마오리 토지법원, 마오리 항소법원, 고용법원, 환경법원, 거시배심원, 와이탕기재판소 및 기타관련 위원회, 관련재판소 및 기관들과

관련된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징수국에서는 재판에 부과되는 벌금, 법률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배상금(reparation), 각종 부과금 등의 징수 및 집행, 재판관련 속기록 제공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및 법률사무국(Policy and Legal)에서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정책 및 입법개발, 와이탕기조약과 관련된 역사적 권리조항(historical claims) 등에 대한 연구 및 해석 등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와이탕기조약 담당장관, 법원장관 및 검찰총장 및 관련 장관들에게 범죄예방 및 사법정의, 행정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정책법률사무국에서는 5개 하위부서들을 갖고 있다. 즉 협약체결국, 법률자문국, 범죄예방 및 사법정의국, 행정법 사무국, 전략정책국 등이 있다.

협약체결국(Office of Treaty Settlements)에서는 정부기관들을 대신하여 와이탕기 조약의 역사적 권리조항들에 대한 협약체결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에서는 잘못된 법정구속에 대한 보상청구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사법정의국(Crime Prevention and Crime Justice)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관련범죄들의 예방노력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법 사무국(Public Laws)에서는 헌법 및 각종 규제법률 체계들에 대한 자구해석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전략정책국(Strategic Policy)에서는 당해부서가 직면한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략적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략 및 행정관리국(Strategy and Corporate)에서는 당해부처가 수행하는 제 기능들의 원활한 수행의 촉진 및 개발과 관련된 전략적 기획기능과 인적자원 및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의사소통 및 재정업무, 기관성과평가 등을 포함하는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위부서로서 부문전략국(Sector strategy), 기술서비스국(Technology and Service), 재정 및 지원서비스국(Finance & Support Service), 인적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 등이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는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예방국, 항소법원, 와이탕기재판소, 마오리토지법원, 가정법원, 청소년법원, 대법원, 입법자문위원회, 환경법원, 지역법원, 고등법원, 고용법원, 판사행동조사국(Office of the Judicial Conduct Commissioner) 등 14개 기관들이 있다. 소속기관들 중에는 법무부의 명시적인 조직도 상에 존재하는 기관들도 존재하는 반면, 일부 조직들은 별도의 지원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다.

## 1. 선거관리위원회(Chief Electoral Office)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을 공정하게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당해위원회

는 선거가 있는 년도에 전국 69개 선거구 지역에 선거관리를 위한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있다. 또한 투표자, 후보자 및 참여정당들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질랜드 의회로부터 선거관련 경비 및 기부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 2. 범죄예방국(Crime Prevention Unit)

범죄예방국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및 사법정의국(Crime Prevention and Crime Justice)에 소속된 기관이다. 범죄예방국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예방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5개 사회안전위원회들간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범죄예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이슈들을 조정·집행하고 있다.

## 3. 항소법원(Court of Appeal)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이송된 민형사상 항소 및 지역법원으로부터 기소 처리된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다. 재심의 필요성이 입증될 충분한 중요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으로의 직접이송도 가능하다.

#### 4. 와이탕기재판소(Waitangi Tribunal)

와이탕기재판소는 와이탕기조약법(Treaty of Waitangi Act, 1975)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마오리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16인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와이탕기재판소는 와이탕기조약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마오리인이 제기한 제소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당해사안이 와이탕기조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판시하고 있다.

#### 5. 마오리토지법원(Maori Land Court)

마오리토지법원은 1993년 제정된 Te Ture Whenua Maori Act 제2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마오리 거주지역 내 영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을 수행하는 뉴질랜드 법원기관 중 하나이다. 마오리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130만 헥타르로서, 뉴질랜드 2천4백6십만 헥타르에 이르는 뉴질랜드 토지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6. 가정법원(Family Court)

가정법원은 뉴질랜드 국민들 중 가정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가정법원법(Family Courts Act, 198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가정법원은 지역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국 58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 보호감호, 후견인 제도 등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수행
- 가정에서 학대되거나 방치된 아동들이 보호
- 아동유괴 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공동노력
- 미성년자들의 혼인가능 여부결정
-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문제 부모들로부터 자녀분리 조치
- 부부간 이혼결정 및 조정
- 부부간 재산분할 문제조정
- 문제아 및 부모들에 대한 의무적인 정신감정 및 치료집행
- 연령 및 병력상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명 및 재산권 보호노력

## 7. 청소년법원(Youth Court)

청소년법원은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에 따라 설립된 특별 사법기관이다. 청소년법원은 뉴질랜드 복지시스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법원은 지역법원의 일부로서 주로 14세에서 16세에 이르는 뉴질랜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살인 및 과실치사를 제외한 청소년관련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 8. 대법원(Supreme Court of New Zealand)

대법원은 대법원법(Supreme Court Act, 2003)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이송된 안건들을 재심하는 뉴질랜드 최고법원으로서,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전에 대법원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수락여부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경제적 파급효과, 잘못된 사법적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고 있다.

## 9. 입법자문위원회(Legislation Advisory Committee)

입법자문위원회는 1986년 2월 법무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회입법(Parliamentary legislation)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입법자문위원회는 각종 입법제안(legislative proposals)들의 개발이나 의회자문국에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제공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법(public law)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10.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

환경법원은 에너지 프로젝트, 병원, 학교, 교도소, 소방서, 주요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유제품공장, 관광리조트, 쇼핑센터 등 민간 편의시설들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댐 및 수로의 방류허용, 폐수유출 금지, 강이나 하천의 방류허용치 설정, 수질기준 설정 등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개발세 부과 및 택지분할 승인 여부의 결정, 지하에 매장된 자연자원 채굴의 환경적 영향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 11. 지역법원(District Courts)

지역법원에서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민·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20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이하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및 강간·절도 등 범죄행위 등을 주로 심리하고 있다.

## 12. 고등법원(High Court)

고등법원은 20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며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 및 해사법(admiralty proceedings) 집행과 관련된 사법심사(judicial reviews)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하급재판소 및 지역법원 등으로부터 제기된 항소 등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 13.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고용법원은 고용계약법(the Employment Contracts Act, 1991)에 의해 설립된 후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에 근거하여 조직사명을 일부분 변경하였다. 고용법원은 주심(Chief Judge)을 포함한 5인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법원은 고용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심리 및 판결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실시하고 파업이나 직장폐쇄(lockouts)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1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 14. 판사행동조사국

#### (Office of the Judicial Conduct Commissioner)

판사행동조사국은 판사의 심리결과에 대한 판결이나 행동에 대한 항소나 불복 등을 다루기 위해 2005년 설립되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결 등에 대한 항소 및 불복은 판사행동조사법(Judicial Conduct Panel Act, 2004)에 따라 뉴질랜드 법원판사들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 현직판사들에게만 가능하며 퇴직한 판사들에게는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판사행동조사국은 법적절차에 따라 불복절차를 시행할 뿐, 기존 판사들의 판결의 적정성이나 법적하자 등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제15절 노동부<sup>44)</sup>(Department of Labour)

## 1) 연 혁

노동부는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직업환경 및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실제로 파악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뉴질랜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1891년 설립된 산업국(Bureau of Industries)의 일부로서, 뉴질랜드 정부부처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 중 하나이다. 19세기말 심각한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추진되었다. 1891년 제정된 공장법(Factories Act)에 근거하여 종래 산업국은 1892년 기관명을 노동부로 개명하게 되었다. 그 후 노동부법(Labour Department Act, 1903)에서는 당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사명, 즉 노동관계법 집행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정보 및 통계자료 수집 등으로 기능을 명시하였다.

## 2) 주요업무

노동부의 주요업무는 뉴질랜드 노동시장 및 지역사회와 기

---

44) <http://www.dol.govt.nz/>

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노동관계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노동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 부처의 주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고용주 및 직원, 작업장, 지역사회, 노동조합 모두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관련 서비스 및 정보제공
- 노동시장 동향연구 등을 통해 노동 및 고용관련 사안들에 관하여 정부에 정책적 자문 및 연구 분석결과 제공
- 지역사회 및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부기관들의 성과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제공
- 국제 노동관계 규범준수 및 양질의 노사관계 형성노력
- 양질의 직업윤리 및 고생산성 기업창출을 위한 기술훈련 및 관련기업, 산업체 및 교육기관들에 대한 훈련실시
- 유능한 기술을 가진 이주민들의 뉴질랜드 유입 및 거주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국의 노동력의 질 향상노력 수행
- 건전하고 편안하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작업장을 만듦으로서 고용자 및 고용주들이 가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경지대의 안전을 유지하고 난민 및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이들이 뉴질랜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매년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약 40만 여명의 비자검색 및 입국 허용여부 결정

### 3) 조 직

노동부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양질의 노사관련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개의 상호 연계된 팀 조직형태의 하위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부처는 2004년~2005년도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전략적 리더십운영팀(strategic leadership team)”이 차관의 지휘하에 설립되었다. 3개의 상호 연계된 팀 조직들은 노동시장 서비스전달 및 정책적 자문기능, 노동시장 지원기능, 부처 행정지원 및 역량강화 기능 등을 수행하며, 당해팀 조직 내 7개의 기능별 하위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력관련국, 작업장관련국, 근로기회관련국, 전략국, 기업운영국, 법률사무국, 마오리 사무국 등이 있다. 각 국을 총괄 지휘하는 국장들은 노동부의 전략적 리더십운영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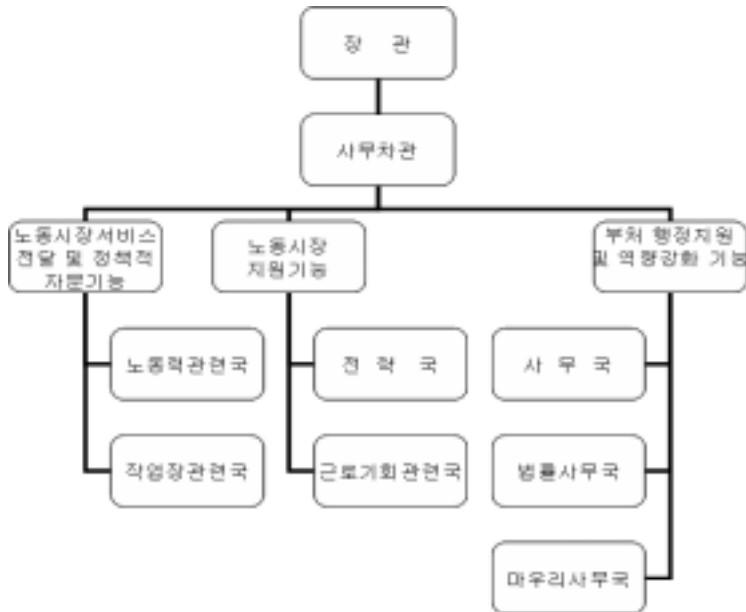
전술한 7개 하위부서별 주요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력관련국에서는 외국 노동력의 뉴질랜드로의 이민, 기술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며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장관련국에서는 직무생산성이나 고용관계,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한 근로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기획 관련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고용활동 증진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사무국(Legal)에서는 노동관련 입법이나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업이나 노사갈등 등 당해부처와 관련된 법률적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3-20 > 노동부 조직도



출처: Department of Labor (2005: 45).

전략국(Strategy)에서는 당해부처의 장·단기차원의 전략적 운영방향 및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역량제고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Corporate)에서는 기관운영과 필요한 인사·재정관리, 기획기능, 정보기술 관리, 감사업무 등 각종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오리 사무국(Maori Perspectives)에서는 자국 노동시장에 마오리 원주민들의 참여와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확대노력 및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부 소속기관에는 노사관계국, 국립여성고용관련자문위원회, 직업안전 및 보건서비스국, 뉴질랜드 이민국 등 4개 기관이 있다. 기관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사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Service)

노사관계국은 노동부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들 중 하나인 노사간 공정하고 생산적인 고용관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사관계국은 Auckland, Hamilton, Napier, Palmerston North, Wellington(본부), Christchurch와 Dunedin 지역 등에 사무소가 있고, 약 160명의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국에서는 뉴질랜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사관계와 관련된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화 서비스인 “*Employment Relations Infoline*”를 운영하고 있다.

## 2. 국립여성고용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Employment of Women)

국립여성고용자문위원회는 여성 및 유급업무와 관련된 사안들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립여성고용자문위원회는 웰링톤에서 1년에 4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다. 당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8인과 중앙노사조직위원회대표, 정부 각 부처장관들을 포함하여 총 19인까지 위원들로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국립여성고용자문위원회가 관심을 두는 역점사안들은 유급육아휴가, 성별간 보수격차, 마오리 및 환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고용문제 및 노동시장 내 편모의 사회적 지위 등이다. 육아문제 역시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당해위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고 있다.

## 3. 직업안전 및 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vice)

직업안전 및 보건국은 고용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에 근거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적극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종 상해·질병·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국은 위해물질 및 신유기물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에 따라 규정된 규제사항들과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부가하여 고용보건안전법에서는 작업장으로부터 발

생한 위해(hazards)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 하에서, 직업안전 및 보건국에서는 작업장과 관련된 조사, 평가, 정보 제공, 관련교육, 필요한 경우 법률적 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4. 이민국(Immigration New Zealand)

이민국에서는 뉴질랜드로 이주 혹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주 희망자들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점검·평가하여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않고 뉴질랜드에 도착한 여행객들의 관리 및 이민법 위반여부 조사
- 이주민들의 뉴질랜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 및 “뉴질랜드 이주민 적응사업(New Zealand refugee programme)” 집행·관리
- 뉴질랜드로의 망명자 혹은 피난민들이 UN헌장에 근거한 피난민(refugees)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 3개의 난민지위 소청본부(three Immigration Appeal Authorities)에 관련공무원 파견

제16절 사회개발부<sup>45)</sup>(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1) 연 혁

뉴질랜드 사회개발 정책은 1904년 노인연금부(Old Age Pensions Department)의 설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 후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및 강화정책에 따라 1913년 연금부의 설립, 1972년 사회복지부의 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경제위기 도래와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부가 3개의 기능별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소득지원 서비스청(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 뉴질랜드 아동청소년 지원청(New Zealand Children and Young Persons Service), 뉴질랜드 지역사회 지원국(New Zealand Community Funding Agency) 등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99년 사회복지부가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Policy)”로 이름이 변화되었고, 2001년 10월 사회정책부와 직업소득부(Department of Work and Income)를 통합하여 오늘날의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로 통합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사회개발부는 아동청소년가족국(Child, Youth and Family)의 기능을 이관 받아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 2) 주요업무

사회개발부는 정부에 사회정책과 관련된 자문과 조언을 제

---

45) <http://www.msd.govt.nz/>

공하고 국민들의 소득 및 고용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의 직업 및 소득향상을 위한 정보기술의 관리와 2006년 7월 당해부처로 기능이 이관된 아동·청소년·가족부의 사무도 함께 관장하고 있다. 사회개발부는 약 130억 달러(뉴질랜드화 기준)에 달하는 부처 예산을 갖고 있으며, 1백만명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에게 소득 원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의 주요업무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 및 고용서비스 지원,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뉴질랜드 퇴직연금 제공
- 아동·청소년 보호업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사범 체계조정, 아동·청소년·가족부를 통한 자금지원 및 정보 제공
- “StudyLink”를 통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수당 및 대부제공
- “Heartland Services”를 통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아동·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빈곤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각종 관련 프로그램들의 조정노력 수행

### 3) 조 직

사회개발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정책관련 부서군(Policy cluster), 관련 서비스 전달부서군(Service Delivery cluster), 그리고 행정관리 및 위험조정 부서군(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cluster) 등 3개의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군(Cluster)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부서 간에는 상호 연계방식을 통해 기관성과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부서군별 조직구조 및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관련 부서군은 다시 사회개발정책 및 지식국과 사회서비스정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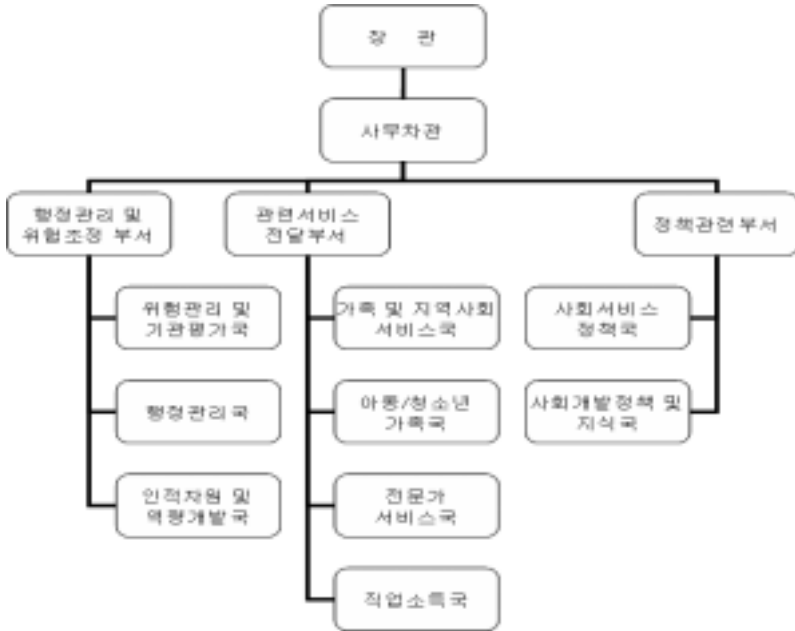
사회개발정책지식국(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Knowledge)에서는 뉴질랜드 사회부문 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4개의 기능별 하위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연구평가 및 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연구 및 평가센터와 사회정책전략팀, 지역사회정책팀, 사회통합 및 참여촉진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정책국(Social Services Policy)에서는 아동 및 가정, 청소년, 근로연령대의 뉴질랜드 국민, 노년층 인구들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당해부서에는 4개의 부문별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는 자국내 사회·경제·문화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연령 인구정책국(Working Age People's Policy)에서는 근로연령대 자국 국민들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lt; 그림 3-21 &gt; 사회개발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6: 13)

아동·가정 및 지역사회 정책국(Child, Family and Community Policy)에서는 아동과 가정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년인구 정책국(Older People's Policy)에서는 노년층들의 취업 및 은퇴 후 소득원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부서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국,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국, 직업 및 소득국, 전문가 서비스국 등 4개의 하부조직을 갖고 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국(Child, Youth and Family)에서는 문제적 행태를 지녔거나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지닌 뉴질랜드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권위를 지닌 정부기관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간 선의의 관계를 유도하고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및 사업들의 조정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 및 소득국(Work and Income)에서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소득 및 고용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서비스국(Specialist Services)에서는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수당제공 및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StudyLink, 저소득자들이 보조금이 제공된 정부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mmunity Services Card제도가 있다.

이주민 지원 서비스국(International Services)에서는 해외로부터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 및 평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쟁연금 서비스국(War Pension Services)에서는 전쟁연금 및 우대카드(concessions) 서비스, 자활을 위한 대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득과약국(Benefit Control)에서는 소득 거짓신고(benefit fraud)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확한 소득원 파악과 이를 통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증진 노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관리팀(Debt Management team)에서는 사회보장금이나 수당 등을 더 이상 수급하지 못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대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리 및 위험조정 부서군은 인적자원 및 역량개발국과 위험관리 및 기관평가국, 행정관리국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원 역량개발국(People, Capability and Resources)에서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적자원 및 재정관리, 그리고 정보기술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관리 및 기관평가국에서는 부처의 위험관리 및 기관내부 감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며, 부처장관 및 고위관리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관리국은 부처의 전략적 기획 및 기관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법률적 사무담당과 의사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직업 및 소득국(Work and Income), 뉴질랜드 학생수당(StudyLink), 가정 및 지역사회국, Heartland Services, 장애인 사무청, 노인청,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 청소년 개발부, 사회정책평가 및 연구위원회(Social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Committee), 뉴질

랜드 가정지원국(Working for Families) 등 10개 기관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개발부의 직속기관 형태를 지니고 있거나, 또는 별도의 지원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

### 1. 직업 및 소득국(Work and Income)

직업 및 소득국은 사회개발부의 소속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취업희망자들의 소득증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쟁연금의 집행과 더불어 은퇴자들에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부 및 자금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소득국은 뉴질랜드 11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웰링톤에 있다.

### 2. 뉴질랜드 학생수당(StudyLink)

뉴질랜드 학생수당(StudyLink)은 뉴질랜드 학생수당, 학자금 융자 및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및 지역교육기관과 학생대표기관들간 협조 하에 자금지원 및 대부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2만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학자금융자 및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보조금 및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신청서를 받고 있다.

### 3. 가족 및 지역사회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가족 및 지역사회국은 뉴질랜드 가정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되었다. 당해 기관은 정보제공 업무 이외에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위한 관련 사업들의 기획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 4. Heartland Services

Heartland Services는 뉴질랜드 지방 및 격오지에 떨어져 사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정부기관 담당자들이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각 지역에 설치된 서비스 센터(Service Centre)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23개의 서비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방 및 격오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대면서비스(face to face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1달에 1~2회에 걸쳐 해당지역에 여러 행정기관 업무담당자들이 동시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 5. 장애인 사무청(Office for Disability Issues)

장애인 사무청은 뉴질랜드 사회 내 장애인들이 당당한 구성

원으로서 그들의 속한 기관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뉴질랜드 장애인 전략(New Zealand Disability Strategy)의 성공적인 집행을 모니터링 및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차원의 장애인 고용 및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뉴질랜드 장애인 전략”의 모니터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 정부차원의 장애인 이슈와 관련된 전략적 정책개발 주도
-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
- 장애인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책적 자문제공

## 6. 노인청(Office for Senior Citizens)

1990년 설립된 노인청은 노령인구층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정부차원의 뉴질랜드 노인복지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모니터링 및 개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청은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들과 광범위한 부분에서 협조체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 7.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Office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은 정부기관과 관련업무의 조정

및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사회 및 자발적 부문들<sup>46)</sup>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정부 내 부문간 기능의 명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에 기여하고 이러한 양태가 하나의 문화적 의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고도의 자발성이 체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은 자발적으로 행정사무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파트너들간의 건설적인 협조체계 구축모델의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 8. 청소년 개발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청소년 개발부는 뉴질랜드 12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진 이해관계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뉴질랜드의 사회·교육·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개발부는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 사무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청소년개발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공공기

46)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이란 사회부문 중 정부부문을 제외한 부문으로서 비영리부문, 비정부부문, 제3섹터라고도 한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hly&query](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hly&query))

관 및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9. 사회정책평가 및 연구위원회(Social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Committee)

2001년 11월 “지식기반을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검토 (*Improving the Knowledge Base for Social Policy Review*)”의 결과로 설립된 사회정책평가 및 연구위원회는 뉴질랜드 사회정책연구 및 평가분야의 조정역할을 하는 일종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당해분야와 관련된 정부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의 설정 및 이의 적절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책 연구자들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정부기관별 사회연구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노력
-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연구 및 평가의 질 제고
- 정부의 사회정책 우선순위에 근거한 사회연구 및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영역간 우선순위 · 설계전략의 집행노력
- 사회연구부문간 의사소통 장소 및 연계형성
- 사회정책연구 및 평가결과와 정책적 결정간 연계추진

## 10. 가정지원국(Working for Families)

가정지원국은 각 가계 구성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보다 높은 소득을 얻도록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수천만 가구에 가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간소득이 10만 달러미만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상당수 가정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지원사업은 대개 4가지 형태의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가족지원사업, 비아동부양 저소득층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계세금공제제도 및 육아관련 조세감면제도 등이 있다.

제17절 환태평양지역부<sup>47)</sup>(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 1) 연 혁

환태평양지역부는 환태평양 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 및 고유한 전통을 보존·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해지역 주민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뉴질랜드의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환태평양지역부는 환태평양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부정책 및 이슈들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정부기관들에게 양질의 정책적 자문 및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환태평양지역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적 자문 및 의사소통의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적 자문 측면에서 환태평양지역부는 ① 환태평양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및 생활실태에 대해 정부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② 기타 정부기관들이 환태평양 주민들의 생활실태 및 다양한 욕구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며 ③ 이러한 지역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④ 환태평양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

47) <http://www.minpac.govt.nz/>

정부정책들의 개발 및 집행을 점검한다. 한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환태평양지역부는 ① 정부기관들이 환태평양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② 정부관계자들간에 환태평양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 모임의 정례화, ③ 환태평양 주민들의 수요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의의 촉진노력,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설립 및 유지, ⑤ 환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뉴스레터 및 우편 등의 정기적인 발송, ⑥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 3) 조 직

환태평양지역부는 4개의 기능별 하위조직과 2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오uckland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다. 기능별 하위조직들은 의사소통국, 행정서비스국, 정책국, 거버넌스 및 활동평가국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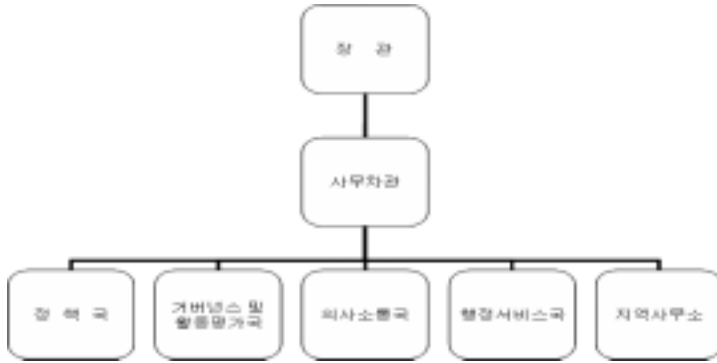
의사소통국(Communications)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정부기관 및 환태평양 지역사회간 관련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서비스국(Corporate Services)에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과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정책국(Policy)에서는 환태평양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들과 관련하여 정부 및 기타관련기관, 그리고 당해부처 장관 등에게 정책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 및 활동평가국(Governance and Monitoring)에서는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정책적 활동들에 대한 기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환태평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이슈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그림 3-22 > 환태평양지역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Pacific Inland Affairs (2006:18).

환태평양지역부의 소속기관에는 조직도표상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사무소와 별도의 지원조직인 환태평양사업신탁(Pacific Business Trust) 등이 존재하고 있다.

### 1. 오클랜드 지역사무소

오클랜드 지역사무소는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지역과 관련하여 환태평양지역부의 기관운영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이슈들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환태평양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이슈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기관 등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당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역량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정부기관들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환태평양 지역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 2.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사무소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사무소는 남섬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태평양 지역사무부의 기관운영을 지원하며 지역개발 이슈들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사명은 오클랜드 지역사무소와 동일하다.

## 3. 환태평양사업신탁(Pacific Business Trust)

환태평양사업신탁은 환태평양 지역주민들이 수행하는 기업활동의 촉진 및 수익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1985년 설립되었다. 당해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환태평양 원주민들의 후손들이나 사업 확장 노력을 하는 이들에게 사업등록, 벤처자금지원, 재정관리 등 경제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사업신탁은 매주 지역주민들의 기업활동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무료로 발간하고 있으며 'Achievers' 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거주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제18절 여성부<sup>48)</sup>(Ministry of Women's Affairs)

## 1) 연 혁

여성부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부처로 1984년 설립되었다. 현재 30명의 구성원들과 약 3백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의 연간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현재 여성부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 중 가장 소규모 조직이다.

## 2) 주요업무

여성부의 주요업무는 뉴질랜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 마련된 5개년에 걸친 정부의 활동계획인 뉴질랜드 “여성활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해결책과 관련된 자문제공
- 정부여성사무위원회에 참여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여성을 추천
- “UN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해서 국제협력 주도 및 참여
-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수행기관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가적인 리더십이 요구될 때 새로운 정책적 프로세스의 주도
- 여성정책과 관련된 핵심 업무수행기관들에 의한 정책적

---

48) <http://www.mwa.govt.nz/>

프로세스의 지원 등을 통해 당해부처가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방향설정 및 영향력 강화노력

### 3) 조 직

여성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공무원법(State Sector Act, 1988)에 근거하고 있다. 장관은 부처의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부처의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집행관리팀을 두고 있다. 집행관리팀은 당해부처 장관과 3개 하위부서장들(정책국장, 교섭관계국장, 행정서비스국장)이 포함한다. 전체적인 여성부의 조직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 3-23 > 여성부 조직도



출처: <http://www.mwa.govt.nz/about/overview>

정책국(Policy)에서는 정책적 자문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여성사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노력의 공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섭관계국(Treaty Relationships)에서는 마오리 원주민 여성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한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성별분석(gender analysis)을 보완하는 내부 분석장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서비스국에서는 당해 부처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적·재정·정보기술 등에 대한 원활한 제공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9절 국세청<sup>49)</sup>(Inland Revenue Department)

## 1) 연 혁

국세청은 정부의 조세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국세청은 1878년 “토지세부(Land Tax Department)”의 설립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1892년 “토지 및 소득세부(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이름을 개명하고 웰링톤에 본부를 둔 정부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후 국세청은 1952년에 인지세부(Stamp Duties Department)<sup>50)</sup>와 통합되어 오늘날의 국세징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국세청은 뉴질랜드 전국에 걸친 17개 도시 및 타운들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가 개소되지 않은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방문센터(visiting smaller centres)를 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4,900여 명의 구성원들을 갖고 있다.

## 2) 주요업무

국세청은 뉴질랜드 국세청법(Inland Revenue Acts) 및 기타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세입으로 각종

49) <http://www.ird.govt.nz/contact-us/>

50) 인지세(Stamp Duties)란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되는 조세를 말한다(<http://blog.naver.com/lstypeace?Redirect=Log&logNo=3677618>)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세입의 80% 징수
- 뉴질랜드 조세의 약 2/3의 집행 및 관리
- 아동양육비의 징수 및 분배
-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가정지원
- 학자금대출제도의 징수 및 관리업무

### 3) 조 직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집행이사회와 관리이사회 등 2개의 운영이사회를 갖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장기적인 기관운영 전략과 기관윤리 설정, 전략적 위험관리 및 발전전략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이사회는 기업운영 성과평가, 성과달성시 직면하는 위험요인, 구성원 인식조사 등 주요 운영이슈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장 겸 집행이사의 지휘아래 6개의 기능별 하부조직들이 있다. 즉 직원역량개발 및 거버넌스국, 운영개발 및 체제국, 서비스 전달국, 정책자문국, 분쟁조정국, 행정소송 관리국 등이 있다. 국세청의 전체적인 조직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lt; 그림 3-24 &gt; 국세청 조직도



출처: Inland Revenue Department (2005: 8).

직원역량개발 및 거버넌스국(People Capabilities and Governance)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개발 및 장기적인 기관운영 방향과 기획, 행정관리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기관 내 고위관리팀에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개발 및 체제국(Business Development and Systems)에서는 장·단기적인 기관운영 기획을 포함한 핵심사업체제의 운영 및 지속적인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국(Service Delivery)에서는 조세납부자 및 다른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와 아동양육비 지원, 부채관리 및 관련정보 제공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문국(Policy Advice)에서는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조세법 및 개혁사안, 그리고 사회지원 이슈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조세관련 입법개발, 세입예측, 다른 국가들과 이중과세협약(double tax agreements) 등에 대한 협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분쟁조정국(Adjudication & Rulings)에서는 이해당사자들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입법 및 사례법 등에 대한 법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관리국(Litigation Management)에서는 조세납부자들이 분쟁조정국이 제시한 결과 및 권고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등을 다루고 있다.

전술한 포괄적인 조직집행 구조이외에, 국세청은 고위관리자들로 구성된 관리이사회에 의해 핵심정책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이사회 지휘아래 5개의 분과위원회(committees)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집행이사회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위원회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집행·승인 및 추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적자원 및 역량개발 위원회(People and Capability Committee)구성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원평가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조정위원회(Technical Issues Committee)에서는 핵심적인 조세사무 등과 관련된 부처차원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 및 보증위원회(Risk and Assurance Committee), 재정기획위원회(Finance & Planning Committee)는 효과적·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책임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된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20절 교육부<sup>51)</sup>(Ministry of Education)

## 1) 연 혁

교육부는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1989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육부가 6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조직형태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개혁의 일환으로 종래 지방교육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초·중등교육을 위한 개별신탁이사회(individual Boards of Trustees)로 대체하였다.

## 2) 주요업무

교육부의 조직사명은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업무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신탁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은 교육정책 수행에 있어 정부를 대신하고 교육자원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정책수행과 관련된 규제집행 및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특화된 교육관련 분야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51) <http://www.minedu.govt.nz/>

-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기반을 제공
-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강한 교육적 성취가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 향상노력
-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이 직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노력
- 교육이 뉴질랜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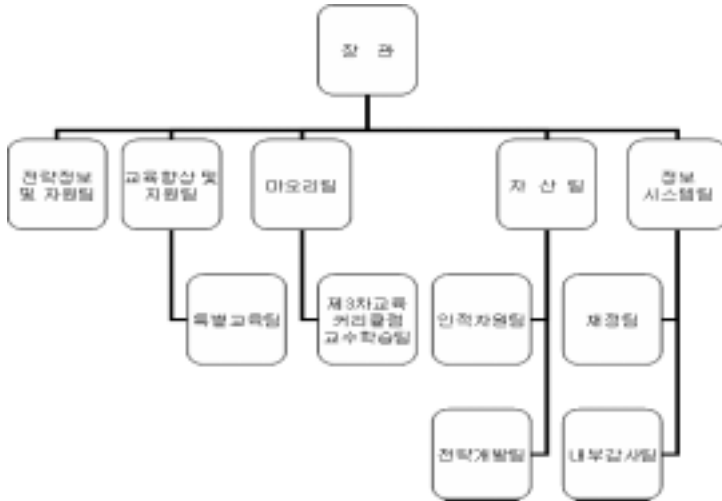
### 3) 조 직

교육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장관의 지휘아래 11개의 팀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다. 즉 전략정보 및 자원팀, 교육향상 및 지원팀, 특별교육팀, 마오리팀, 자산팀, 정보시스템국, 제3차교육커리큘럼교수학습팀, 인적자원팀, 전략개발팀, 재정팀, 내부감사팀 등이 있다.

전략정보 및 자원팀(Strategic Information & Resources Group)에서는 교육영역, 양질의 교사제공, 초등교육기관들의 관련 인프라 제공 등을 위한 전략적 기관운영의 방향제시 및 연구, 자료관리 및 분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향상 및 지원팀(Education Improvement & Support Group)에서는 교육규제 관련이슈, 유아교육 정책 및 운영방향, 특별교육정책, 교육과 연계관계를 지니는 사회정책 영역 연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t; 그림 3-25 &gt; 교육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05: 32-33).

교육향상 및 지원팀에서는 교육규제 관련이슈, 유아교육 정책 및 운영방향, 특별교육정책, 교육과 연계관계를 지니는 사회정책 영역연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교육팀(Group Special Education)에서는 전문가 교육서비스 제공, 운영정책, 연구 및 특별교육담당팀 운영 등을 수행하며 21세미만 청소년들 중 교육기회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특별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오리팀(Maori Group)에서는 마오리인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뉴질랜드 사회 내 마오리인들의 영향력 강화노력, 마오리어 교육 강화 및 마오리인들의 영어교육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산팀(Property Group)에서는 2,300여개의 공립학교들과

2,500여개의 주거시설 등 학교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시스템팀(Information Systems Group)에서는 교육부내 하위부서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정부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3차교육·커리큘럼·교수·학습팀(Tertiary, Curriculum, Teaching & Learning Group)에서는 교육기관 및 유아교육시설, 제3차 교육기관들(tertiary education)의 커리큘럼 및 교수법, 학습방법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적자원팀(Human Resources)에서는 부처 직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전략, 관련정책 및 정책기획, 고용관계 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략개발팀(Strategic Development Group)에서는 기관운영성과 및 행정관리 역량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팀(Finance)에서는 부처의 재정관련 서비스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성과 및 재정책임성 제고 등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부감사팀(Internal Audit Group)에서는 당해부처 장관에게 부처운영과 관련된 절차·체계·운영방향 등의 적절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는 교직구인센터(TeachNZ), 교육심사청(Education Review Office), 뉴질랜드 학력심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직업서비스청(Career

Services Rapuara), 뉴질랜드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 등 5개 기관들이 있다.

### 1. 교직구인센터(TeachNZ)

뉴질랜드 교직구인센터는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 교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정보들은 교수법과 관련된 훈련, 장학금, 교직지원 방법 및 해외에서 교직과 관련된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2. 교육심사청(Education Review Office)

교육심사청은 뉴질랜드 전국에 산재한 교육기관들과 유아 교육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간·공표하고 있다. 조사대상 교육기관들은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마오리어 교육기관, 특별교육기관, 홈스쿨 등이 포함된다. 교육심사청은 교육기관별로 다양한 유형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조사(education reviews), 홈스쿨 조사(homeschool reviews), 교육기관 및 서비스의 응집도 조사(cluster review), 교육이슈와 관련된 전국적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학력심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학력심사청에서는 중등교육 및 졸업 후 교육의 질을 평가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가 추구하는 학력과 관련된 국가적 기준을 유지·관리하며 뉴질랜드 대학진학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학력심사청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등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및 훈련 등의 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실시
- 중등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국가기준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노력
- 개별훈련규정(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의 등록을 위한 정책 및 기준설립
- 개별훈련규정 및 교육기관의 훈련과 학습과정의 승인기준 및 관련정책개발 노력
- 각급별 교육기관들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적합하며, 일관되고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응하는 절차에 준하여 시험 및 교육체계 등이 평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 해외정부 및 교육관련 정부기관들의 교육평가 및 시험체계 등에 대한 조언 및 지원수행
- 뉴질랜드의 졸업 후 교육 및 직업교육의 질 및 내용 등이 국제적인 양질의 교육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확인

#### 4. 직업서비스청(Career Services Rapuara)

직업서비스청은 뉴질랜드 직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관련된

직업 정보와 기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제반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사명을 위해, ‘Career Services’라는 기치아래 직업관련 정보와 자문, 그리고 자격요건 등을 통해 구직희망자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집행전략을 개발·집행하고 있다. 현재 Kiwi Careers, Career Point 그리고 Career Centres 등 3가지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서비스 등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정보취득이 가능하다.

## 5.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

교사위원회는 초·중등교육 및 기타 교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교사위원회는 교육기준법(Education Standards Act, 2001)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2002년 2월 교직등록청(Teacher Registration Board)을 대체하였다. 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의 권익 대변 및 전문적인 리더십 제공
- 바람직한 교수법 제공
- 신입교사 교육프로그램의 집행 및 관련기준 설정
- 교사 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승인
- 부적격 교사 및 각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집행
- 교사 전문성을 위한 윤리강령 개발노력

제21절 수산부<sup>52)</sup>(Ministry of Fisheries)

## 1) 연 혁

수산부는 뉴질랜드 해안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증진으로 국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수산부는 1995년 뉴질랜드 정부조직구조개편 과정에서 수산업 관련 입법들의 대규모 검토이후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 농업해양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의 형태로 농업사무와 수산업 분야가 통합부처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임업부(Ministry of Forestry)가 농림부와 통합되면서 수산업무가 농업해양부에서 분리·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 2) 주요업무

수산부는 뉴질랜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산부는 정부의 주요당국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자원 계획(fisheries plans)의 기준설립 및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부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양자원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제공
-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발노력

---

52) <http://www.fish.govt.nz/en-nz/default.htm>

- 뉴질랜드 영리목적의 수산업 활동을 규제하는 쿼터관리제(Quota Management System)의 시행
- 해양수산물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수산전문가 양성노력

### 3) 조 직

수산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약 400여명의 구성원들을 갖고 있고, 운영부서와 관리부서로 나눌 수 있다. 운영부서는 다시 5개의 팀조직을 가지고 있다. 즉 해양정책팀, 대외협력팀, 해양연구개발팀, 해양운영팀, 그리고 해양관련 규제팀 등이 있다.

해양정책팀(Fisheries Policy)에서는 뉴질랜드 해양 및 수산 자원과 관련된 정책개발, 입법개발 및 전략적 운영계획 등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양정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해양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협력팀(International)에서는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 체결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연구개발팀(Fisheries Science)에서는 수산자원량의 추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거나 관련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당해부처 운영부서들에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운영팀(Fisheries Operations)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뉴질랜드 원주민들 중 하나인 tangata whenua와의 연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수산자원 계

획, 쿼터관리제에 근거한 수산자원 관리, 해양자원 차단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관련 규제팀(Fisheries Compliance)에서는 국민들이 해양자원 관련법 및 각종 규제들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암시장이나 밀렵활동의 규제, 희귀 수산자원들의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부서에서는 당해부처의 커뮤니케이션, 인적자원, 법률사무, 재정 및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행정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산부의 관리부서는 총 6개의 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부처의 전반적인 조직 도식은 아래와 같다.

< 그림 3-26 > 수산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Fisheries (2005: 83).

전술한 운영·관리부서 이외에도 수산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총괄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고위관리팀(Senior Managers' Team)이 있다. 고위관리팀에는 장관과 차관, 하위 조직별 팀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산부의 소속기관에는 관련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해양 및 대기연구소가 있다.

#### 1. 국립해양 및 대기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ic Research Limited)

국립해양대기연구소는 뉴질랜드 대기환경 및 해양자원을 비롯하여 해수의 질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즉 전술한 담수(freshwater)와 해양,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관리를 비롯하여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부흥 등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22절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1) 연 혁

외교통상부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관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국을 대표하며 대외무역을 수행하는 뉴질랜드인들을 정책적으로 보조·지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1919년 대외사무를 담당하는 "외무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외무부는 대외무역 협상 업무를 포함하는 외교통상부로 변화되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600명의 직원들과 연간 약 1억 8,400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48개 해외담당 업무부서를 비롯하여 대사관 및 영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통상부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연합이나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나 포럼을 포함하여 대외국가 및 조직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뉴질랜드를 대표
- 해외, 안보 및 대외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자국을 홍보
- 해외거주 뉴질랜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업무 수행
- 기타 뉴질랜드 정부기관들과 협조업무 수행
- 뉴질랜드 국제원조를 비롯하여 개발기구를 통한 개발 및

대외원조 업무 제공

- 자국의 전략적 재화 및 상품들과 관련된 대외수출 통제와  
규제업무 수행
- 국제조약 체결 및 집행

### 3) 조 직

외교통상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48개 국가에 대사관을 파견하고 있고, 대사관, 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s) 및 영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장관의 지휘아래 5개의 사업팀 조직과 별도의 독립된 지원조직인 뉴질랜드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NZIAD), 그리고 영사국 등을 갖고 있다. 또한 5개의 세부사업팀에는 제1사업팀(Programme One)인 정치안보국(Political and Security), 제2사업팀인 무역경제국(Trade and Economic), 제3사업팀 대외협력국(Multilateral), 제4사업팀 행정서비스국(Corporate Services), 제5사업팀 환태평양 및 호주국(Pacific/Australia) 등이 있다.

제1사업팀에서는 아메리카 대륙 및 동북·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사업팀은 인접국가인 호주와의 대외업무를 비롯하여 대외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대외무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노력 등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제3사업팀에서는 남극정책(Antarctic policy)과 영사 및 법률사무, 국제기관과의 협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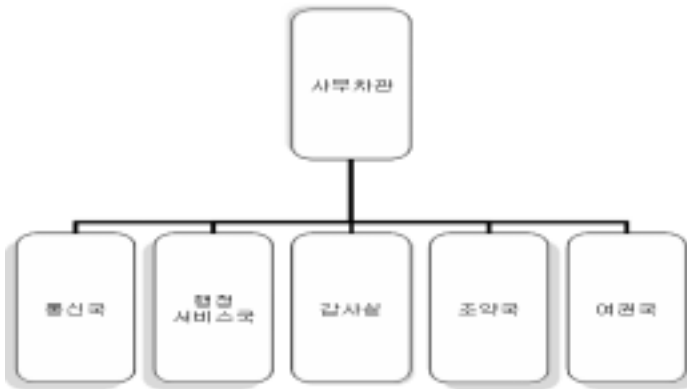
제4사업팀에서는 부처감사, 정보기술업무, 조직기획 및 성

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5사업팀에서는 뉴질랜드 원주민(마오리족 등)과 중동·아프리카 등과의 외교 및 대외협력 사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영사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의 이해관계 및 복지를 위한 관련서비스 및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현재 32개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독립된 소속기관으로 뉴질랜드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NZIAD)가 있다. 외교통상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27 > 외교통상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5: 14).

이 밖에 외교통상부의 소속기관에는 뉴질랜드 남극연구소, 뉴질랜드 무역투자진흥공사,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 환태평양 협력재단, 뉴질랜드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 등 5개 기관이 있다.

### 1. 뉴질랜드 남극연구소(New Zealand Antarctic Institute)

뉴질랜드 남극연구소는 남극 및 Ross Sea을 포함한 남해의 연구를 위해 1996년 설립되었고, 뉴질랜드 남극연구소법(New Zealand Antarctic Institute Act, 1996)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남극연구소는 남극연구를 위한 전략적·운영상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활동 등을 통해 뉴질랜드 국익과 환경보호 후원(과학적 지원 및 전략개발, 남극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인식제고, 국제사회에서 뉴질랜드의 영향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남극연구소는 크라이스트처치지역에 근무하는 26명의 전임직원 및 뉴질랜드 방위군으로부터 파견된 임시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무역투자진흥공사(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뉴질랜드 경제개발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 세계 48개 사무소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무역증진과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무역투자진흥공사는 OECD 가입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국민들의 평균소득 향상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3.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은 아시아 대륙과 뉴질랜드간 우호적인 연계관계 형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아시아와 관련된 교육, 사업, 미디어 및 문화연구사업 등을 통해 뉴질랜드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환태평양 협력재단(Pacific Cooperation Foundation)

환태평양 협력재단은 환태평양 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익의 제고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뉴질랜드 및 주변 국가들간 공동발전과 정체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홍보강화 등 대중인식 제고 노력
- 뉴질랜드 및 환태평양 지역주민들이 수행하는 각종사업 및 기업들의 수익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세계화 되어가는 추세에 근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욕구에 근거한(needs-based training) 구성원 훈련 및 민간기업들간 네트워크 강화, 파트너십 강화노력
- 환태평양 관련사무 등에 있어 핵심 공헌자로서 당해기관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및 지식제공

- 뉴질랜드 및 환태평양 지역간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의 촉진자로서, 뉴질랜드 공공·민간부문들과의 상호협력 추진
- 뉴질랜드 교육기관들의 환태평양 관련연구 및 교육기회 강화 노력
- 민간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스폰서십(sponsorship) 제공

### 5.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New Zealand's International Aid & Development)

국제원조개발기구는 뉴질랜드 개발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되었다. 당해기관은 환태평양 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빈곤주민들을 대상으로 빈곤퇴치(poverty elimination)·사회갈등·인간성 파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개 핵심양방협조사업(core bilateral programmes)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제원조개발기구의 사업들은 주로 지역교육, 지역보건, 거버넌스 및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제23절 교통부<sup>53)</sup>(Ministry of Transport)

## 1) 연 혁

뉴질랜드 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이며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교통부는 교통국 및 민간항공국의 합병을 통해 1968년 현행부처 체제로 설립·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교통부는 1970년초 육상교통과 기상서비스, 해양관련 부처 등을 포함한, 뉴질랜드 내 모든 교통관련 기관을 통합한 거대(super) 부처로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쳐 1990년 들어 공공부문 개혁에 따라 종래 부처기능을 독립행정기관 및 민간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99년 노동당 행정부가 출범한 후 준비단계를 거쳐 2002년 11월 ‘뉴질랜드 교통전략(New Zealand Transport Strategy)’에 근거한 교통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2) 주요업무

뉴질랜드 정부의 교통정책과 관련된 주요정책 추진자로서, 교통부의 주요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즉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정책개발 업무의 수행과 자문을 제공하고 교통관련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계약체결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통전략은 교통정책이

---

53) <http://www.transport.govt.nz/home/>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부처의 주요업무사명은 다음과 같다.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상경보 및 기상예측 제공을 위해 뉴질랜드 기상청과의 기관운영 성과계약 및 집행지원
- 육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노력
- 교통관련 사고 및 각종 상해감소 노력
- 항공 및 해운업 관련 테러피해 예방노력
- 뉴질랜드 국민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 개발
- 뉴질랜드 교통체계가 공공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 차원의 기관운영 방향설정 및 정책추진
- 국제교통의 효율성 제고노력
- 자동차 등록서비스청의 운영 · 관리
- 자동차 등록 및 등록비용, 도로사용비, 연료관련 특별소비세 징수
- 뉴질랜드 영공을 통과하는 해외항공사들의 영공통과 허가를 위한 등록업무
- Milford Sound/Piopiotahi 비행장 운영
- 민간항공사 등과의 합작 벤처항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부처 독립행정기관들의 운영지원 및 기관성과평가

### 3) 조 직

교통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교통본부와 본부산하

에 6개의 독립행정기관과 3개의 공기업,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지원조직 형태를 지닌 뉴질랜드 경찰청(New Zealand Pol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조직은 장관아래 7개의 기능별 하위조직들과 부처운영을 지원하는 부처 리더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조직 내 하위조직들을 살펴보면, 전략적 기관운영국(strategic directions)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대국민 지원서비스국(Access and Services)에서는 수송체계를 통해 자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다 양질의 경제사회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통인프라국(Infrastructure)에서는 경제·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투자 및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송안전국(Safety and Security)에서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수송시스템 개발·집행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국(Environment)에서는 수송시스템이 자국의 공공보건 및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독립행정기관 관계국(Agency Relations)에서는 당해부처의 지휘를 받는 독립행정기관들과의 관계설정 및 기관운영성과 협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지원국(Finance and Support Services)에서는 부처의 재정성과를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해부처의 조직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lt; 그림 3-28 &gt; 교통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Transport (2006: 9).

교통부의 소속기관에는 6개의 독립행정기관, 3개의 부처소속 공기업, 그리고 별도의 지원조직인 뉴질랜드 경찰청, 독립행정기관들이 설립한 운송안전신탁(Road Safety Trust) 등이 있다.

독립행정기관에는 항공안전국, 민간항공청, 육상운송국, 해상안전국, 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부 소속의 공기업에는 뉴질랜드 항공조정공사, 기상공사, 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 있다.

## 1. 항공안전국(Aviation Security Service)

1977년 설립된 항공안전국은 교통부장관 산하 집행이사에

게 기관운영 성과를 보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뉴질랜드 8개 지역사무소에 47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영내를 통과하는 모든 국제항공사 승객들 및 승객들이 소지한 수화물 검색
- 90석 혹은 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국내항공기의 승객 및 수화물들의 조사
- 항공안전경비대 및 응급조치구조대 운영
- 항공안전과 관련된 실험 및 관련연구 등을 통한 승객 및 수화물의 안전한 운송노력
- 시민항공법(Civil Aviation Act, 1990)) 제80조에 근거하여 당해기관에 부여된 기타업무 및 기능 수행

## 2.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민간항공청은 뉴질랜드 민간항공기관들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부 소속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민간 항공사들에 속한 비행사·항공관련 엔지니어·항공사 및 비행기 등이 항공관련 해당규칙을 준수하도록 조사·평가하고 있다. 또한, 당해 규칙을 어길 경우 공권력을 통해 제재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당해 기관은 항공기 규모에 따른 항공안전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항공기들이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련정보의 출판을 비롯하여 안전교육

과정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육상운송국(Land Transport New Zealand)

육상운송국은 육상운송관리개정법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수송 기금과 육상운송안전청이 합병되어 2004년 11월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지속가능한 육상운송 시스템 구현을 위해 설립된 당해 기관은 육상운송과 관련된 면허 및 관련규제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 육상운송과 관련된 자금모집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해상안전국(Maritime New Zealand)

해상안전국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해상환경을 보존·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통부 산하 독립행정기관이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존기준의 설립 등과 관련된 규제준수 여부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해면허(seafarer licences) 발급을 비롯하여 항해 및 해난 사고시 해상보조 등의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난사고 원인규명 및 분석과 사후 사고예방 노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름유출 등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5. 도로공사(Transit New Zealand)

도로공사는 뉴질랜드 도로의 약 12%(10,894 km)를 차지하는 고속도로의 관리·유지·개발업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다. 도로공사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도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조직목표이다. 도로공사법(Transit New Zealand Act, 1989)에 따라 설립된 당해 기관은 한해 평균 5억 5천만 달러(뉴질랜드화 기준)의 예산을 갖고 있고, 이 중 약 절반이상을 신규도로 관련사업 및 유지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 6. 수송사고조사위원회(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수송사고조사위원회는 1990년 의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뉴질랜드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항공·철도·해상사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각종 운송사고의 원인규명 작업과 사고발생시 이해관계자들간 중재·조정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이와 관련된 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7. 항공조정공사(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뉴질랜드 항공조정공사는 1987년 설립되었고, 국내외 항공기들을 관리하는 전세계 주요 항공운항업무 서비스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2003년도에 전 세계 280개 국제항공운송사들 중 지출가치(value for money)와 서비스의 질 측면에 있어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뉴질랜드 영공 내에서 비행기간 총

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조정공사는 항공교통통제와 항공기 흐름관리 및 항공기 정보 등의 항공운송관리업무와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navigation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각 국가소속 항공기들간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8. 기상공사(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 Limited)

기상공사에서는 국민들의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소비자들을 위해 뉴질랜드 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1861년 최초로 기상예측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이르러 관련부문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는 정부차원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후 1992년 공공부문의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지금과 같은 공기업 운영체제로 변경되었다.

#### 9. 철도공사(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법(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Act, 1981)과 철도공사구조조정법(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Restructuring Act, 1990), 공기업법(State Owned Enterprises Act, 1986)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철도공사는 1993년부터 현행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이 철도운송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철도운송 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의 제공
- 철도관련 독립행정기관들에게 자문제공
- 철도운송을 위해 필요한 토지관리 및 임대관련 업무수행
- 각종 공익사업 수행

## 10. 경찰청(New Zealand Police)

뉴질랜드 경찰청은 범죄행위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통제·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권력을 지닌 규제기관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 중에서 음주운전자 적발,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점검, 주행속도 위반점검 등 도로운송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 11. 운송안전신탁(Road Safety Trust)

운송안전신탁은 뉴질랜드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이슈나 교육훈련, 국제운송 관련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심포지엄 등에 참석하거나, 도로안전에 필요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기관이다. 운송안전신탁은 각 개인별 운전자들에게 차량번호판 판매 과정을 통해 얻어진 수익 중 일부를 지원자금으로 취득하고,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신탁인 혹은 이사들은 교통부장관에 의해 추천·임명되고 있다.

제24절 자연보호부<sup>54)</sup>(Department of Conservation)

## 1) 연 혁

자연보호부는 과학·역사·문화적 가치 혹은 휴양차원에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뉴질랜드 국유지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 국유지·삼림·해양공원·4,000여개의 특별지정공원 및 기타 해안선과 인근 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보호부는 1987년 기존의 토지조사부(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와 삼림서비스청(Forest Service), 야생동물청(Wildlife Service)을 통합한 부처로서, 뉴질랜드 보존법(Conserv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설립되었다. 자연보호부는 뉴질랜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국가의 역사·문화적 유산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자연보호부의 주요업무는 위험에 처한 자연 동·식물들의 보존과 생태계 보존노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생물들의 보호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에 따른 역사적 유적지들의 보호 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생물종의 다양성 확대노력과 차단방역을 통한 전염병 등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보존노력의 시행, 모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

---

54) <http://www.doc.govt.nz/index.html>

휴양지 장소 등을 포함하는 휴양지 제공업무가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해부처가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 국립공원 및 국유지 삼림
- 특별지정공원 및 보존지역
- 내수면 및 해양에 거주하는 야생동물
- 비영리 목적의 민물고기류
-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유적지나 가옥
- 보존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국 내 해안에 인접한 섬

### 3) 조 직

자연보호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주요업무와 관련된 13개 자연보존(conservancy) 권역별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분권화된 체제를 갖고 있다. 현장사무 및 자연보호 업무와 관련된 성과들은 주로 자연보존 권역 내 지역사무소에서 평가하고 있다. 각 지역사무소들은 자연보호청(conservancy office)에 의해 기술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으며 부문별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자연보호부의 본부는 웰링톤에 있고, Hamilton과 Christchurch에 있는 2개의 지역사무소들은 당해지역 및 자연보호부장관의 총괄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보호부는 2005년 기준으로 전임직원 1,582명과 임시계약직원 3,6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관의 지휘아래 7개의 기능별 부서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영관리국(Business Management Division)에서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설정 및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연구개발향상국(Research, Development & Improvement Division)에서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자연보호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국(Operations Division)에서는 지역사무소별 보존권역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협력팀(External Relations Group)에서는 보존관련 이슈들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효율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적자원 및 조직개발국(People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Division)에서는 당해부처의 인적자원 및 조직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전략적 정책팀(Strategic Policy Group)에서는 자연보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포괄적인 전략 및 방향설정,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우선순위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오리부족 자문국(Tumuaki, Kahui Kura Taiao)에서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역사 및 문화유적들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운영국 산하에 보호관리위원(Conservator)제도를 둠으로서, 3년~5년 단위의 정해진 기간동안 이들의 책임 하에 권역별 보호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개 권역별 보호관리위원들은 분야별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7개 기능별 하위조직들의 국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당해부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성과를 산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자연보호부의 세부적인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 3-29 > 자연보호부 조직도



출처: Ministry of Conservation (2006: 127).

자연보호부의 소속기관에는 뉴질랜드 자연보호청, 퀸 엘리자베스 2세 내셔널 트러스트, 뉴질랜드 낚시 및 사냥협회, 뉴질랜드 토착삼림 보호기금, 자연유적기금,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등 6개 조직이 있다.

## 1. 자연보호청(New Zealand Conservation Authority)

자연보호청은 자연보호부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당해부처가 수행하는 각종 보존전략과 정책, 관리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자연보호청은 자연보호법(Conservation Act, 1987), 국립공원법(National Parks Act, 1980), 보행법(Walkways Act, 1990), 특별지정공원법(Reserves Act, 1977)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보호청은 팀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4개(자연보호부 하위부서별 위원회+ Chatham 섬 보존위원회 포함)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보호전략 및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결과와 관련된 보고서 발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2. 퀸 엘리자베스 2세 내셔널 트러스트(QEII National Trust)

퀸 엘리자베스 2세 내셔널 트러스트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보호개발 등을 위해 1977년 설립된 기관이다. 설립모범으로 퀸 엘리자베스 2세 내셔널 트러스트법(Queen Elizabeth the Second National Trust Act, 1977)을 갖고 있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내 습지나 호수지역, 삼림지대, 해안, 문화유적지 등의 지역거주민 혹은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이 점유한 다양한 토지들과 관련된 특성들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보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호활동 및 협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당해 기관은 자치단체들이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습지나 해양 환경, 토착군락이나 동물군(indigenous fauna) 등의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3. 낚시 및 사냥협회(Fish and Game New Zealand)

낚시 및 사냥협회는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낚시와 조류사냥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어류판매 및 사냥을 위한 허가증(hunting licences) 판매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낚시가 가능한 어종은 송어와 연어 등이다. 그 외 서식지 보호업무(Habitat protection work)는 당해 기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동식물 및 역사적 유적지의 환경보존 업무를 통해 자국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4. 토착삼림 보존기금(Nga Whenua Rahui)

Nga Whenua Rahui는 뉴질랜드 토착삼림 보호 및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자연보호부 산하 지원기금의 일종이다. 현재는 삼림분야 이외에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분야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내 토착주민인 마오리족들이 거주하는 삼림지역에 대한 보호

협정체결(Covenanting), 개발제한구역 설정, 삼림보호를 위한 울타리 형성(fencing costs) 업무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 5. 자연유적기금(Nature Heritage Fund)

자연유적기금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자국 내 산재한 삼림의 자발적인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여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삼림에 거주하는 동식물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1990년 이래 다양한 자연보존 정책을 통해 뉴질랜드 내 약 2만 3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을 보존하고 있다.

## 6.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

### (Royal Forest and Bird Protection Society)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는 뉴질랜드 내 가장 큰 규모의 동식물 보호기관이다.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는 보호 및 환경관련 이슈들에 있어 정부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해 기관의 주된 활동분야는 자연삼림, 습지, 해안 지역 및 해양생태계, 에너지 및 자원보호, 지속가능한 어종 및 토지관리 등이다.

제25절 교정부<sup>55)</sup>(Department of Corrections)

## 1) 연 혁

교정부는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구류, 수형판결(custodial sentences) 및 사회봉사나 집행유예 등 구류이외의 판결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 2) 주요업무

교정부가 수행하는 2가지 핵심업무에는 효율적인 범죄자 관리와 재소자 관리를 비롯하여 법규위반 후 재범죄의 경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교정부는 뉴질랜드 사회내 범법자들의 갱생과 국민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다 살기 편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정부의 주요업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따른 범법자 관리
- 법원판결의 적절한 집행 및 준수노력
- 최종법원 판결에 따른 형 집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사법부에 제공
- 범죄행위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 등 재정적 지원
- 범법행위자들에 대한 교화교육,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기술습득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출소이후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55) <http://www.corrections.govt.nz/public/index.html>

-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각종 유인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내 법률 위반행위의 경감에 기여하도록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 범법행위자들이 저지른 범법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욕구 등을 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

### 3) 조 직

교정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교정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5개의 기능별 분화된 하위서비스 조직들(service)을 갖고 있다. 또한 행·재정적 지원업무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조직들을 갖고 있고, 이들은 팀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다.

5개 기능별 서비스 조직에는 수형자 서비스국, 사회처우개선국, 심리치료국, 교화국, 전략서비스국 등이 있다. 관리팀에는 정책개발팀, 기업관리팀, 내부감사팀, 재정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안전하고 공정하며 인간적인 재소자들의 관리를 위한 교정부 장관직속의 교정시설 사찰단(Prison Inspectorate) 등이 별도 지원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5개 기능별 서비스 조직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형자서비스국(Public Prisons Service)에서는 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인간적인 수형생활을 위한 욕구관리, 갱생 및 교화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처우개선국(Community Probation Service)에서는 매년 약 4만여건의 새로운 사회처우개선과 관련된 형 선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뉴질랜드 법원 및 뉴질랜드가석방위원회(New Zealand Parole Board) 등에 보고 및 관련정보의 제공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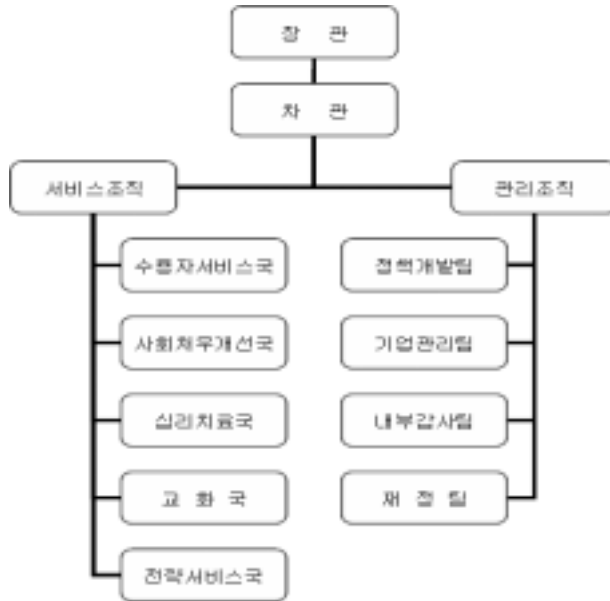
심리치료국(Psychological Service)에서는 재소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임상치료 및 자문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화국(Intervention Services)에서는 재소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략적 사고촉진사업(motivational programme Straight Thinking) 및 범죄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각성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전략서비스국(Strategic Services)에서는 부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운영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들의 경우, 정책개발팀은 기관운영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전략적 추세분석(trend analysis)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정정책의 개발 및 관련입법 등의 검토와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협조·조정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lt; 그림 3-30 &gt; 교정부 조직도



기업관리팀에서는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교정 행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구매를 비롯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품질기준의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감사팀에서는 당해부처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운영 및 핵심적인 주요 수행사무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팀에서는 부처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산권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정부 소속에는 각 지역별 산재된 교정시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부교정시설(Northland Region Corrections Facility)과 Otago 지역 교정시설(Otago Region Corrections Facility) 등이 있으며 그 외 뉴질랜드 집행유예위원회(New Zealand Parole Board) 등이 설치되어 있다.

### 1. 북부교정시설(Northland Region Corrections Facility)

북부교정시설은 2005년 5월 설치되었고, 뉴질랜드 북부지역 사회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당해 시설은 종래 재소자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북부교정시설은 수감되는 재소자들은 범죄행위의 원인과 영향력,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수감자의 교화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 및 교화노력, 그리고 형 집행마감이 후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다양한 갱생절차를 받게 된다.

### 2. Otago 지역 교정시설(Otago Region Corrections Facility)

오타고 교정시설은 Otago 지역사회의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사회통합 및 재소자들의 교화노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 중 하나이다. 2007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해시설 역시 재소자들의 잘못된 의식 및 행태를 교화하고 출소이후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직업교육 및 갱생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3. 집행유예위원회(New Zealand Parole Board)

집행유예위원회는 2002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서 17개 지역별 재소자위원회 및 국립가석방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 기관은 범법행위자들의 집행유예 및 가택구금과 관련된 집행여부의 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위원회는 20인의 배심원과 17인의 비판결 배심원들(non-judicial members)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발생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매달 1회에 걸쳐 3인(1인의 판사+2인의 비판결 배심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패넬회의가 열리고 있다. 또한 매 3개월마다 5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확대패넬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 생명과 관련된 판결이나 예방적 구금(preventive detention), 그리고 장기간 복역집행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례 등을 심의하고 있다. 당해위원회에 의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모든 재소자들은 판결 후 12개월 이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당해위원회에 출두하여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26절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1) 연 혁

국방부는 영토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방위법(Defence Act, 1990) 제24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국토방위와 관련된 적절한 방위력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및 관련자문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병력 및 재원마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방업무는 자국의 방위를 위한 정책결정 및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조직 형태의 국방부와 이를 육군·해군·공군 등 병종에 따라 실행하는 뉴질랜드 방위군이 함께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 2) 주요업무

국방부는 정부에 의해 승인된 군사무기 및 설비 등의 주요 목록 등을 구매하고 인도(delivery) 등을 통해 각 계약 등을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방위군의 기능과 의무, 사업 및 주요설비 구매현황 등을 평가 및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안보 및 관련사무 등에 대해 정부에 양질의 정책결정과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3) 조 직

국방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책기획국과 평가국, 설비

인도국, 행정관리국, 재정국 등 5개 기능별 국을 가지고 있다.

정책기획국(Policy and Planning Division)에서는 국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역량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기획국에는 3개의 세부기능조직, 즉 전략정책실과 국제안보관계실, 그리고 전략 및 역량분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국(Evaluation Division)에서는 설립모법에 근거하여 뉴질랜드 방위군의 역할과 기능, 활동사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군사설비 구매과정과 관련된 당해부처의 역할 등에 대한 내부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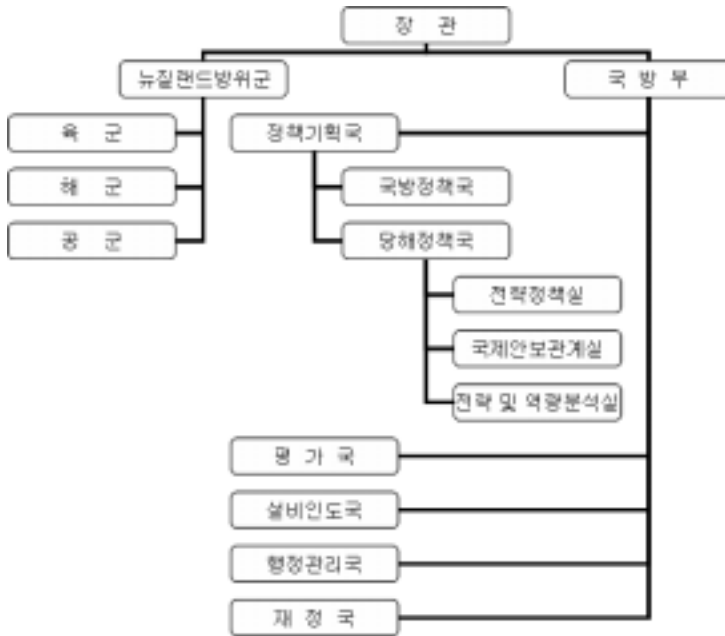
설비인도국(Acquisition Division)에서는 뉴질랜드 육·해·공군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군사설비들에 대한 획득 및 인도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대개 7백만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군사설비 등과 관련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행정관리국(Corporate Division)에서는 부처 내 정보관리 및 기술, 법무, 인적자원, 위험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들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당해부처 내 통합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재정국(Finance Division)에서는 부처운영 및 자금관리, 재정서비스 및 관련분야 자문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기관운영과 관련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운영계획

설정과 예산관리, 재정정보체계의 구현, 부처의 현금자본 운영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현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책기획국의 경우 국방부와 뉴질랜드 방위군이 협력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그림 3-31 > 국방부 조직도



출처: <http://www.defence.govt.nz/reports-publications/soi-2006/structure-roles-ministry.html>

국방부의 소속기관들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방위군과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정보수집기관으로서 국가정보 및 안보이사회, 연합 대기권 지원처 등 6개 기관들이 있다.

### 1.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

뉴질랜드 방위군은 각종 외부 위협으로부터 뉴질랜드를 지키고 배타적 경제수역 등 뉴질랜드의 영토상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자국 안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 사안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발적인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국 및 연안지역과 관련하여 방위군은 영공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주권의 수호업무와 남해지역 섬 및 로스 속령(Ross Dependency)과 관련된 영토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리즘이나 각종 자국영토 내 파괴행위에 의하여 야기되는 각종 위협의 예방 및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방위 및 기타 응급상황시 지원제공, 영토보존을 위한 인접국 방위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전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육군(New Zealand Army)

육군은 뉴질랜드 영토를 사수하는 병력으로서, 약 4,500여 명의 정규군과 2,500명의 비정규 및 민방위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육군의 핵심부분은 육상부대와 병력국이며, 자국 국민

들과 영토를 보존하고 안보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해군(Royal New Zealand Navy)

해군은 1921년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친 후 1941년 현행체제와 유사한 조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2006년 현재, 해군이 보유한 함대는 10척이며 2척의 중형전함을 포함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이 국민들과 영토수호를 위해 수행하는 주요 업무사명들은 다음과 같다.

- 자국 해상무역 보호
- 이웃국가 및 인접해안 보호
- UN 평화유지활동 지원
- 젊은 뉴질랜드 해군생도들의 군사교육 및 훈련
- 응급사태 및 인명구조, 각종 사고 등의 복구지원
- 민방위 병력지원
- 뉴질랜드 영해보존 및 해도작성
- 기상상태 보고

### 4. 공군(Royal New Zealand Air Force)

공군은 자국영공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1923년 통합방위군에서 독립된 병력이 된 영국 공군(British Royal Air Force)의 뉴질랜드 지부로부터 태생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공군은 50개의 전투용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UN평화유지군 등 국제사회에서 일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군의 핵심 업무는 뉴질랜드 육권 및 공군이 수행하는 국토 방위 업무의 지원과 해안경비 및 수송안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역별 안보활동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 5. 국가정보안보이사회(Directorate of Defence Intelligence and Security)

국가정보안보이사회는 국방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서, 특수 정보 및 군사시설과 다른 나라들의 군사동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업무 등 군사정보를 수집 및 국방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군부대내 비밀취급인가 업무의 수행과 기밀군사재원 및 설비 등에 대한 감독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6. 연합 대기권 지원처(Joint Geospatial Support Facility)

연합대기권지원처는 국가정보안보이사회와 연계하여 방위군 및 국방부에 대기권 및 데이터 매핑(mapping data)을 제공하는 등 대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일반국민들에게 수로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군사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제27절 국가정보국<sup>56)</sup>(New Zealan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 1) 연 혁

국가정보국은 뉴질랜드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들의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956년 설립된 국가정보국은 1969년까지 입법적인 기반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후 1969년 제정된 국가정보국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정보국은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나 제재 등을 가하는 공권력이나 법률시행과 관련된 권능을 가지지 못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 민간 기구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 2) 주요업무

국가정보국의 주요업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를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역할로 규정할 수 있다. 업무사명은 설립근거법인 국가정보국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연관성 조사 및 평가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인정되는 사안들에 대해 담당 주무장관과 연락 및 상호협조 체제유지
-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정부에 자문제공
- 이민 및 시민권 사안들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

---

56) <http://www.nzsis.govt.nz/>

한 조언제공

- 특정인들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맡길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인 신상조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성 여부결정

### 3) 조 직

국가정보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7월 기준 전체 144명의 구성원들과 국가정보국장 아래 부국장 1인과 2인의 부국장보들이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기관장을 별도로 지원하는 집행국(Executive Branch)이 별도조직으로 있다. 부국장은 정보수집 및 지역국(Collection and Regional Branches)을 두고 있으며, 2인의 부국장보의 지휘아래 정보 및 분석국과 국가정보국, 그리고 행정관리국 등이 있다.

정보분석국(Intelligence & Analysis Branches)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기밀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안보국(Protective Security)에서는 공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점검(vetting work) 및 정부기관들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관리국(Corporate Support)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자원의 기획 및 집행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림 3-32 > 국가정보국 조직도



출처: <http://www.nzsis.govt.nz/who/structure.html>

제28절 국립도서관<sup>57)</sup>(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1) 연 혁

국립도서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문화·경제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정부가 공인하는 법적인 보존도서관(legal deposit library)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제정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 2) 주요업무

국립도서관의 주요업무는 뉴질랜드 및 환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문헌과 정보원 등을 보관·유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관련정보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노력
- 뉴질랜드 후세대들을 위한 뉴질랜드기록유산의 보존·관리
- 정보관리와 서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뉴질랜드 및 해외국가들의 도서관 관련사무 등에 대한 상호협조 및 자료공유 서비스 제공
- 도서관 및 정보이슈 등과 관련하여 국립도서관 장관에게 자문 및 지원업무 수행

---

57) <http://www.natlib.govt.nz/>

### 3) 조 직

국립도서관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본부는 Wellington에 있고, 약 400여명의 직원들과 7개의 관리부서가 있다. 즉 정보수집국과 관리국, 전자도서관국, 정책전략개발국과 학교도서관국, 마오리서비스국, 그리고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팀(management team) 등이 존재하고 있다.

자료수집국(Collection Services)에서는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수집방법 개발 및 수집관리, 서지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Corporate Services)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 재정 · 정보관리 · 인적자원관리 · 기획 및 행정 책임성 제고 · 지적재산권 관련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전자도서관국(Electronic Services)에서는 각종 자료 및 문헌들의 디지털화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자도서관의 구현 및 정보관리의 전자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전략개발국(Policy and Strategic Development)에서는 정보관리 및 전달과 관련된 정부의 핵심자문자로서 문헌정보 및 서지관련 연구 및 정책적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국(School Services)에서는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및 개발과 관련된 자문제공과 초·중등교사 및 예비교원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 커리큘럼과 관련된 정보자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오리서비스국(Services to Māori)에서는 도서관 서비스가

지향하는 뉴질랜드 전역의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리족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그림 3-33 > 국립도서관 조직도



고위관리팀은 당해부처 장관과 7개 세부국별 국장들이 모인 조직이다. 그 외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관으로서 Alexander Turnbull 도서관 자문위원회(Guardians/Kaitiaki of the Alexander Turnbull Library), 도서관 및 정보자문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Advisory Commission), 마오리족 자문위원회(Komiti Māori)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국립도서관의 소속기관에는 Alexander Turnbull 도서관이 있다.

## 1. Alexander Turnbull Library

웰링톤에 위치한 Alexander Turnbull 도서관은 1918년 뉴질랜드 자료연구 및 수집에 남다른 업적을 남긴 Alexander Horsburgh Turnbull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기관이다. 당해 도서관은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도서관이 소장한 각종 자료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자국과 환태평양 지역연구분야의 도서들에 대한 자료연구서들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29절 특수사기 조사청<sup>58)</sup>(Serious Fraud Office)

## 1) 연 혁

특수사기조사청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특수사기 및 중대범죄, 그리고 복합사기(Complex fraud) 등을 예방하기 위해 뉴질랜드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특수사기조사청은 특수사기 조사청법(Serious Fraud Office Act, 1990)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 2) 주요업무

특수사기조사청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수사기 및 중대·복합범죄 등에 대한 조사·고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중대·복합범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50만달러(뉴질랜드화 기준) 이상의 사기범죄
- 복합적 수단(complex means) 등이 연관된 모든 사기범죄
- 공익과 연관되거나 관련성이 농후한 사기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행위
- 기소된 각종 중대범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수사협조 및 연계업무
-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asset forfeiture)

---

58) <http://sfo.govt.nz/>

### 3) 조 직

특수사기조사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청장아래 2인의 부청장과 5개의 기능별 하위조직들을 갖고 있다. 2인의 부청장들은 조사 및 기소 분야를 각각 전담하고 있다.

5개 기능별 조직들에는 기소국과 행정국(Office administration), 시스템관리국(System administration), 조사국(Investigation), 법률전문 회계국 등이 있다.

법률전문회계국(Forensic accountant)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사기조사청 내 고위관리팀의 총괄지휘를 받고 있다.

기소국(Prosecutors)에서는 각 범죄사건별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사기조사청에는 40인의 전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는 오클랜드에 있다. 소속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인 조직구성은 아래의 도식과 같다.

< 그림 3-34 > 특수사기조사청 조직도



출처: Serious Fraud Office (2005: 50).

제30절 통계청<sup>59)</sup>(Statistics New Zealand)

## 1) 연 혁

통계청은 통계청법(Statistics Act, 1975)에 의거하여 뉴질랜드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생성과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통계청은 1994년까지는 통계부(Department of Statistics)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었으나, 이후 현행체제로 변화되었다. 통계청은 뉴질랜드 국민, 가구, 기업 및 경제활동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국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통계청의 주요업무는 “뉴질랜드 사회·경제분야와 관련된 독립적이고 양질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자가 되는 것(*to be the most efficient provider of independent, quality information relating to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New Zealand*)”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계청은 제공하는 정보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립 근거법인 통계청법에 따른 통계청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의 공식적인 통계치 제공을 위한 노력 및 리더십 제공
- 뉴질랜드 경제·환경 및 사회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

---

59) <http://www.stats.govt.nz/default.htm>

료의 수집·분석 및 그 결과의 출간 및 일반대중들에게 공개

- 공식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유지노력
- 일반대중들에게 효용성을 지닌 통계자료의 생산
- 통계정책과 관련된 사무들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며 기타 모든 정부부처들에게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사업들의 범위·목적·유용성 등을 홍보
- 공식통계치의 사용을 위한 기본개념과 절차, 정의, 구분 작업의 시행
- 당해기관이 생산한 각종 분야별 통계자료들에 대한 평가
- 5년에 한 번씩 수요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사용자들과의 모임 정례화
- 통계사무와 관련하여 UN내 관련기관들과 국제협력 추진 및 환태평양 지역 및 인접 개발도상국들의 국가통계자료 생산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기술적 자문제공
- 뉴질랜드 통계양식 및 기준설정 및 적절한 통계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

### 3) 조 직

통계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청장 아래 10개의 세부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직에는 하위기관들을 갖고 있다. 각 하위조직들은 부청장이나 조직별 일반관리자가 분야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들은 미시경제, 지리학 및 환경관련 통계국과 통계방법론 서비스팀, 크라이스트처치지역사무소,

산업 및 노동관련 통계국, 행정서비스국(Corporate Services), 정보 및 운영서비스국, 오클랜드 지역사무소, 마오리족 관련 통계국, 전략 및 의사소통국, 사회 및 인구통계학 관련통계국 등이 있다. 또한 통계청에는 별도의 소속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 그림 3-35 > 통계청 조직도



## 제4장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

뉴질랜드 독립행정기관(Crown Entities)들은 정부부처·청 등의 행정조직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 형태를 갖고 있다. 독립행정기관들은 독립행정기관법(Crown Entities Act, 200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들은 다른 나라들의 책임운영기관들과 형태가 유사하다. 일부기관들의 경우 독립행정기관의 기관장 등을 임명할 때 관련부처 장관 등의 추천 내지 임명권을 위임하기도 하지만, 실제 기관운영 과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2개 주요 독립행정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 음주자문위원회(Alcohol Advisory Council of New Zealand)

음주자문위원회는 1976년 뉴질랜드 의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음주자문위원회법에 명시된 사항에 준하여 기관운영을 실시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음주자문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적당한 술 섭취를 권장하고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 등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다. 음주자문위원회의 운영자금은 자국 내 판매·생산되는 술 등에 부과되는 조세(levy)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 2. 회계기준검토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Review Board)

회계기준검토위원회는 1993년 재정기록법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다. 회계기준검토위원회는 재정성과 보고내용을 규정하는 회계기준인 재정보고기준의 조사 및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4인내지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재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기업경영이나 회계·재정·경제학 및 법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고 있다.

### 3. 아시아 협력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아시아 협력재단은 뉴질랜드와 아시아의 연계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비정치적인 기관으로서 1994년 설립되었다. 당해 재단은 뉴질랜드인과 아시아인들간 관계와 상호이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커뮤니티 서비스·문화탐방·미디어 연구 등 광범위한 여러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장학금 수여, 각종 세미나 개최, 교육자료 공유, 특별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

### 4. 상업감독국(Commerce Commission)

상업감독국은 민간부문의 경쟁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규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부부처로부터 직접적인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당해기관은 1986년 제정된 뉴질랜드 상업법(Commerce Act, 1986)

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상업감독국은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입법(전력, 전기통신사업관련 입법 및 낙농업 관련입법 등)을 집행하며 특정 이해집단들에 의해 불공정한 무역이나 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지진피해보상국(Earthquake Commission)

지진피해보상국은 화재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진이나 각종 전쟁피해에 대해 보상 등 각종 혜택을 주기위해 1945년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그 후 각종 자연재해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상영역이 확장되었다. 지진피해보상국은 국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의료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6 전력감독국(Electricity Commission)

뉴질랜드 전력감독국은 뉴질랜드 전력산업 및 관련시장을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며, 전력법(Electricity Act)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당해기관은 설립근거법인 전력법 및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준하여 전력산업 및 시장의 운영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생산·전송 및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7. 에너지효율보존청(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에너지효율보존청은 2000년 '에너지효율보존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립행정기관법(Crown Entities Act, 2004)에 근거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보존청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며 모범에 근거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의 사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보존청은 뉴질랜드 환경부와 협력하여 국가에너지 효율 및 보존전략(National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sup>60)</sup>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개발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 에너지 개발 및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국가적 전략의 마련
- 에너지 관련이슈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및 홍보
- 에너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노력
- 현 에너지 효율 및 보존실태 검토
- 에너지 관련정보 및 연구결과물 발간

에너지효율보존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주요업무의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이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사무국이 있다. 이사회 위원들은 에너지효율보존청의 장기적인 재정계획, 활동사업, 예산 및 정책이슈 등을 포함한 당해기관

60) 국가에너지 효율 및 보존전략(NEECS)은 EECA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2001년 9월 27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당해전략의 2가지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2년까지 20%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
- 2012년까지 뉴질랜드 내에서 재생 가능한 소비자 에너지 30 petajoules 생산 및 소비의 증가노력

의 감독 및 집행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부와 체결한 정책보고 및 구매협약(Statement of Intent and Purchase Agreement)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에너지효율보존청이 수행하는 일상업무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청장(Chief Executive)이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 위원들은 10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8인은 위원)으로 구성되며 에너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보존청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톤 등 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부는 웰링톤에 있고, 6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2개 지역에는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에너지효율보존청의 기관들은 팀(Team) 조직 형태를 유지하며, 에너지 공급국, 경영국, 검토 및 기술보조국, 이해관계국, 정부자문국, 에너지 마케팅 및 연계국, 사무국, 기업사무부 등 8개의 기능별 조직을 갖고 있다.

## 8.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연구재단은 과학기술연구재단법(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90)과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과학기술 분야연구들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연구

부 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며 뉴질랜드 과학기술체계에 준하여 기술혁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당해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과학기술·연구부 장관을 통해 정부에 기관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 9. 공무원연금청(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공무원연금청은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노후연금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당초에는 경제개발부가 담당하다가 2001년 10월 공무원연금청 설립과 함께 이관되었다. 1956년 제정된 뉴질랜드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청은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군인·경찰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8개 분야별 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 10. 연금자산관리청(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연금자산관리청은 2001년 뉴질랜드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연금자산관리청은 영리목적으로 뉴질랜드 연금 및 관련 자산 등을 운용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과 위험부담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연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연금관리 및 투자수익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11. 보건 및 장애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보건 및 장애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건 및 장애서비스 규약(Code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nsumers’ Rights)’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이래 당해규약은 보건 및 장애서비스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10가지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위원회는 본 규약과 관련된 조사 및 민원제기를 비롯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당해기관의 조사결과 보건 및 장애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의료인 징계심판소(Health Practitioners Disciplinary Tribunal)나 인권심의 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 이첩하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 12.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인권위원회는 1993년 제정된 인권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2001년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인종 및 민족 관련 이슈 등을 담당하는 세부국(Race and Ethnic Relations Unit) 조직이 설립·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깔, 민족과 출생국 등과 관련된 이슈들은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가내 각종 차별행위를 경험하거나 보호를 원하는 국민들은 당해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종교적 신념체계나 민족적 배경, 인종이나 출생국, 연령이나 고용

상태, 학력이나 정치적 신념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차별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13. 사법개혁청(Law Commission)

사법개혁청은 뉴질랜드 법률체계의 개발과 체계적인 조사 및 개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정부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개혁청의 설립 목적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가진 열정과 역사적인 유산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구현(*help achieve law that is just, principled, and accessible, and that reflects the heritage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s of New Zealand*)”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목적을 위해, 뉴질랜드 사법개혁청은 뉴질랜드 법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회 등에 조사 및 연구결과 등을 보고하며,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제기된 특정분야 법률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및 기타 독립행정기관들과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한 검토 및 의회소위원회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4. 교재지원청(Learning Media Limited)

교재지원청은 영어, 마오리어, 환태평양 지역어 및 스페인어로 된 교재의 발간과 이들을 교육부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처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뉴질랜드에

산재한 교육기관들에게 교육자원들을 판매 및 지원하고 있으며, “Learning Media Direct”이라는 판매루트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관련 교재들을 공급하고 있다.

### 15. 법률서비스청(Legal Services Agency)

법률서비스청은 2000년 제정된 법률서비스청법(Legal Services Act,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법률서비스청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련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청은 민·형사적 지원 및 국선변호인제, 그리고 구금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항소, 법률자문지원 및 사법개혁·법률정보와 관련교육 등을 포함한 지역 사회 사법센터 등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6. 마오리 TV 서비스국(Māori Television Service)

마오리 TV서비스국은 2003년 제정된 마오리 TV서비스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모든 뉴질랜드인 들이 이루어온 역사적 유산과 마오리인 들의 생득적 권리(birthright)인 문화와 마오리 언어를 유지·발전·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오리 TV 서비스국은 마오리어의 교육 및 마오리어로 된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TV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오리어

를 학습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과 마오리어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학습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다.

### 17. 마오리어언어위원회(Maori Language Commission)

마오리어언어위원회는 마오리어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1987년 제정된 마오리어언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마오리어 집중훈련, 마오리어 검토 및 개선 서비스, 당해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뉴스레터 서비스 등을 통해 구어 및 문어 포함한 양질의 마오리어 진흥노력
- 마오리어 전문해석자 양성을 위한 공식자격증제도 도입 및 시험관리
- 마오리어의 발전 및 유지와 관련된 정책연구 및 형성노력
- 마오리어 용어집 발간 및 일반인들에게 무상제공 등을 포함한 사전편찬 노력

마오리어언어위원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실제 당해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성과를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집행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5인의 위원들 중 1인이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마오리어언어위원회는 6개의 기능별 운영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편찬·용어연구국, 마오리 언어개발 및 표준설정국, 마오리어공동체국,

진흥국, 정책국, 재정행정국 등이 있다.

사전편찬·용어연구국에서는 마오리 언어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체계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오리 언어개발 및 표준설정국에서는 양질의 마오리어 발전 및 언어해석자 양성 및 훈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언어개발 팀과 마오리어 숙달을 위한 관련연구를 담당하는 효능성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오리언어공동체국에서는 마오리어 보존 및 개발을 위한 관련기금의 관리 및 언어개발을 위한 의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진흥국은 마오리어 사용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국에서는 마오리어 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장관 및 각급 교육기관들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행정국은 당해기관과 관련된 행·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8. 해상보호청(Maritime Safety Authority)

해상보호청은 자국 수역내 편안하고 안전한 해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해상보호청에서는 해상안전과 환경보호기준의 개발 및 모니터링, 항해면허의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상조난을 비롯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라디오 방송서비스 등 해상구조 활동, 해난사고 원인분석 및 조사, 해양오염 예방노력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19. 정신건강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정신건강위원회는 1993년 제정된 “보건 및 장애서비스법(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Act)” 제46조와 1996년 보고된 Mason 정신건강서비스 보고서(Mason Inquiry into Mental Health Services)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보건관련 핵심기관들의 성과보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정신보건전략의 내실 있는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 보호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 20. 의수·의족국(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의수·의족국의 설립 근거법에는 1990년 제정된 사회복지법과 1989년 제정된 공공재정법 등이 있다. 의수·의족국은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손이나 발이 일부 절단된 장애인들에 대한 의수를 제공하는 국가유일의 독립행정기관이다. 의수·의족국에서는 인공의수의 제공·조정 및 유지와 사고자의 재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웰링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관련 사무들에 대해 사회개발부 장관에게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21. 혈액서비스센타(New Zealand Blood Service)

혈액서비스센타는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품의 제공을 위해 1998년 설립되었고, 통합적인 국립혈액 수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혈액서비스센타는 혈액기증자들로부터 이를 채취하여 수혈이 요구되는 이들에게 수혈을 제공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국 4개지역(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처리기관을 두고 있다. 그 외 기증된 혈액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시행하는 승인실험 업무와 채취된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 22. 소방위원회(New Zealand Fire Service Commission)

소방위원회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등하고 이를 예방하며 기타 다른 응급사태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소방위원회는 1,600여명의 전임 소방관들과 8,000명의 자원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기관에는 소방서비스사무소와 국립지역소방국을 두고 있다.

## 23. 사냥새 거주지 보호청(New Zealand Game Bird Habitat Trust Board)

사냥새들과 조류들이 살아가는 습지대나 관목지대와 같은 서식지(habitats)들이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해 점차 줄어들어 이

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냥새 거주지 보호청(New Zealand and Game Bird Habitat Trust Board)이 설립되었다. “사냥새 거주지보호사업(Game Bird Habitat Stamp)”은 사냥새 거주지 보호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며 사냥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및 이의 갱신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냥을 원하는 사람들은 당해기관이 발급하는 사냥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 24. 복권위원회(New Zealand Lotteries Commission)

뉴질랜드 복권위원회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 사행산업법(Gambling Act, 2003)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뉴질랜드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이익의 사회공유를 위해 뉴질랜드 복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행하는 복권들의 종류는 Lotto, Powerball, Keno와 Instant Kiwi 등이 있으며, 이들은 뉴질랜드 전역을 걸쳐 약 600여개의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25. 스포츠약물방지청(New Zealand Sports Drug Agency)

스포츠약물방지청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캐나다 육상선수인 벤 존슨의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시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후 1995년 1월 독립행정기관 형태로 설립되었다. 스포츠약물방지청은 뉴질랜드 체육 및 운동선수들을 금지약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뉴질랜드 체육협회 등과 공동사업 및 연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

## 26. 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Limited)

1946년 설립된 교향악단은 1989년까지 뉴질랜드 공영라디오방송국의 소속기관이었고, 이후 독립행정기관으로 변화되었다. 교향악단은 국립 오케스트라이며 뉴질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관리하고 있다. 교향악단의 구성원은 90명이고, 매년 100여회의 공연을 수행하고 있다.

## 27. 관광위원회(New Zealand Tourism Board)

관광위원회는 관광위원회법(New Zealand Tourism Board Act, 199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당 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관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자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개발 및 이의 집행·추진을 비롯하여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28. Ngai Tahu 부가보상재단(Ngai Tahu Ancillary Claims Trust)

1997년 11월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로 부터 역사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던 마오리족 일원 중 하나인 나이타후(Ngai

Tahu)간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지난 과거사에 대한 과오를 청산하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Ngai Tahu 부가보상재단(Ngai Tahu Ancillary Claims Trust)은 당해 화해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영토지역 내 거주하는 나이타후족들에 대한 추가보상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수혜자 범주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9. 의약품 조제관리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의약품 조제관리청은 지역보건위원회를 대신하여 국가적인 조제약 처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당해기관은 공공보건 및 장애인법(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자국 내에서 이용 가능한 3,000여종의 처방약 등이 당해계획 실행에 포함되고 있다. 의약품조제관리청의 주요 목적은 당해 조제약품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30. 위법행정행위 항소청(Police Complaints Authority)

위법행정행위 항소청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뉴질랜드 경찰이 국민들에게 불법행위 및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시 행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위법행정행위항소청은 위법행정행위항소법(Police Complaints Authority Act, 1988)에 따라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법행정행위항소청의 주요업무에는 경찰관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시 이의 조사, 경찰의 조사보고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민원신청인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잘못된 행정행위 발견시에는 해당경찰관 제재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31. 사생활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사생활보호위원회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사생활보호법에 제시된 12가지 사생활 보호원칙에 따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국민 개개인과 민간·공공조직들이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생활보호위원회는 1993년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들과 관련된 규정설정
- 사생활 보호위반에 대한 민원조사
-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교육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정보기술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니터링 및 조사
- 개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연구 및 검토
- 정부 부처들간 소유한 각종 정보들에 대한 일치여부 검토

### 32. 공인신탁국(Public Trust)

공인신탁국은 공인신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873년 뉴질랜드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민간은행이나 변호사사무소와 달리, 당해기관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한 법률 및 재정지원 서비스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 노인들을 위한 사전 유언(Will) 작성 및 변호사에게 관리
- 주택구매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 현재 재정상태 및 조세납부 현황 등의 파악 및 조언제공
- 저소득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마련 노력
- 가족 및 자녀교육 기회제공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제공
- 안정적이고 편안한 은퇴 및 노후생활을 위한 계획마련
- 장례 및 사후 재정관리 계획
-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이 재정관리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를 대신하여 각종 관련사무의 관리
- 사후 유산으로 남겨진 부동산 및 수혜자 관리

### 33. 자산정보청(Valuation New Zealand Limited)

자산정보청은 뉴질랜드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자산정보청은 뉴질랜드 전역에 22개 지역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호주 3개지

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현재 자산정보청은 부동산 가치평가국(Valuations), 온라인 서비스국(Online Services), 가치평가 및 조세부과국(Rating and Taxation)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34. 공영라디오방송(Radio New Zealand Limited)

공영라디오방송은 공영라디오법(Radio New Zealand Act, 1995)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뉴질랜드 라디오 규정에 준하여 청취자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해 기관은 3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National Radio, Concert FM 그리고 AM Network 등이다. 그 외 환태평양 지역 및 해외에 초단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국제공영라디오 방송과 포괄적이고 최신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공영 라디오 뉴스 등이 있다.

### 35. 지역보건기관 재정관리청(Crown Health Financing Agency)

지역보건기관 재정관리청은 1993년 설립된 후 지역보건관리국으로 불리다가 2005년 개정된 뉴질랜드 공공보건 및 장애인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기관 재정관리청으로 변경되었다.

당해 기관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지역보건기관, 보건관련 독립행정기관 및 보건부의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별 보건위원회(Health Board)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각종 휴양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보건기관들이 소유한 잉여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36. 노후준비청(Retirement Commissioner)

노후준비청은 1993년 제정된 뉴질랜드 퇴직소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 퇴직소득과 관련된 이슈 및 경향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인 들이 일생동안 수득한 그들의 가계소득의 일정부분을 징수 및 분급하고(sorted), 퇴직이후 적절한 생계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납부자들에게 월별 혹은 주기적으로 퇴직소득을 제공한다. 그 외 퇴직소득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연구 및 퇴직소득 재정현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7.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증권위원회는 뉴질랜드 및 관련 국제시장들의 효율성과 통합성,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뉴질랜드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지향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국내외 자본투자 활동의 검토 및 자본투자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투자자 이익관계의 상충 시 이의 조정을 비롯하여 자본투자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검토, 관련법률 개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8. 표준규격위원회(Standards Council)

표준규격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상품들의 표준규격을 선정하는 정부기관이다. 독립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규격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및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당해 기관은 뉴질랜드 표준규격법(Standards Act, 1988)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약 50여명의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39. 기업인수 위원단(Takeovers Panel)

기업인수 위원단은 기업인수법(Takeovers Act, 1993)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이다.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정 등의 검토 및 기업인수 규칙의 시행, 기업인수와 관련된 법률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 제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40. 공영방송(Television New Zealand Limited)

공영방송은 뉴질랜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방송 및 이의 전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공영방송은 독립행정기관법(Crown Entities Act,

2004)에 준하여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독립적 혹은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청각 방송의 제작·구매 및 소장
- TV 채널과 관련방송 등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
-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이를 통한 홍보, 스폰서 서비스 등의 제공
- TV,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 국내외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서비스 제공

#### 41. 고등교육진흥재단(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고등교육진흥재단은 교육법(Education Act, 1989) 제15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고등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업무와 대학·전문대학·민간훈련기관·교육재단을 비롯하여 산업훈련기관·성인 및 지역사회 교육제공자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훈련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 외 5년 단위로 추진되는 뉴질랜드 5개년 고등교육 전략 및 뉴질랜드 고등교육 우선추진 정책규정(*Statement of Tertiary Education Priorities*)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프레임워크에 준한 교육예산의 집행과 국가경제 및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고등교육 및 훈련역량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 및 성과 등과 관

런하여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학교(Charter) 체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42. 기술적합성평가위원회(Testing Laboratory Registration Council)

기술적합성평가위원회는 1972년 뉴질랜드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 뉴질랜드 기술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발행하는 인증 및 교육훈련 사업들은 뉴질랜드 국제인증협회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들의 규정 및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다.

## 제5장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

뉴질랜드 공기업은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s Act, 1986)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들이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전에 정부부처 및 독립행정기관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가 최근 들어 공기업으로 변화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14개 공기업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에서는 농림업·원예업·산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 각종 생산물의 해충통제 관련연구·설계 및 제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에서는 자연보호부와 지역별 위원회, 전문해충박멸기관 등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약 150여개의 소매가로 판매하는 직판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충관련 방법연구를 위해 Landcare Research 등 뉴질랜드 우수한 연구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2. 농업품질관리주식회사(AgriQuality Limited)

농업품질관리주식회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및 관련정보를 호주·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지역의 식품안전 및 차단방역 서비스 분야와 연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뉴

질랜드 식품 생산업체들이 다양한 식품생산 및 국제적인 허용치에 부합되는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종 인증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차단방역 위험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 3. 식품안전관리주식회사(Asure New Zealand Limited)

식품안전관리주식회사에서는 복잡다기한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육류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 기업은 육류 제품 조사와 관련해서 육류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본 샘플링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래 질병 및 유해물 반응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뉴질랜드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4. 전력주식회사(Electricity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전력주식회사는 뉴질랜드 내 전력(송·배전업무 포함)을 가정 및 기업들에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1986년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력주식회사는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기존 위험자본 및 채무이행 의무를 관리하고 이미 발행된 주식의 결의 및 기존자산의 유동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5. 전력개발주식회사(Genesis Power Limited)

전력개발주식회사에서는 수력 및 화력발전의 결합을 통해 전력개발 및 이의 무역·판매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당해 기업은 뉴질랜드 북부지역에 위치한 섬 지역에 7개의 발전소를 두고 연간 1,640 메가와트(MW)의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최대의 에너지 소매기업으로서 약 7만명의 전력 및 가스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 6. 농업토지관리주식회사(Landcorp Farming Limited)

농업토지관리주식회사는 뉴질랜드 최대 농·목축업 기업으로서 1백5천만 마리의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다. 당해산업과 관련된 대부 및 리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농업투자주식회사(Landcorp Investments Ltd)와 목초지 및 농업지대의 보다 높은 지가로 매매하는 농업토지평가주식회사(Landcorp Estates Ltd) 등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당해 기업의 주력사업은 수익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의 관리 및 이의 지속적인 개발업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사명은 다음과 같다.

- 가축사육 및 가축을 통해 생산되는 유제품 등 각종 생산물로 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효율적인 가축 및 재산관리
- 수입증대를 위해 적합한 가축관리 방법의 개발 및 적용
- 시장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의 질 개선 및 혁신적인 관리방법의 개발

- 뉴질랜드 국내 및 해외에 당해가축 및 가축을 통해 출하되는 각종 생산물들의 효율적인 마케팅 노력

## 7. 메리디언 에너지관리주식회사(Meridian Energy Limited)

Meridian Energy은 뉴질랜드 전력공사(Electricity Corporation of New Zealand)가 1999년 3개의 기업으로 분리되면서 설립된 공기업 중 하나이다. 전력 생산과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마케팅과 교역, 판매 및 보완전력의 생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해기업은 뉴질랜드 남섬에 9개의 수력발전과 북섬에 뉴질랜드 최대의 풍력발전, Wellington에 1기의 풍력터빈(wind turbine)을 운영하고 있다.

## 8. 기상정보주식회사(Metra Information Limited)

기상정보주식회사에서는 뉴질랜드 기상서비스주식회사의(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 Ltd)의 자회사로서, 뉴질랜드 및 전 세계의 기상정보를 원하는 이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운영체제를 가진 Metra는 뉴질랜드 Wellingto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각종 전문적인 기상정보 및 자료 분석을 통한 주기적인 기상관련 예측과 이를 통한 high resolution regional models 등을 운영하고 있다.

## 9. 마이티 수력관리주식회사(Mighty River Power Limited)

Mighty River Power는 뉴질랜드 전력공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분리된 3개 기업들 중 하나로서, 199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당해기업은 Waikato 강에 9기의 수력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체 전력의 13%, 피크타임시 25%의 전력생산 및 소비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당해기업은 Maori geothermal resource, Mokai 지역에 Tuaropaki Power Company, Taupo 지역에 Ngatamariki geothermal field 등과도 활발한 경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협력 체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10. 우정관리주식회사(New Zealand Post Limited)

우정관리주식회사는 우정서비스 환경의 규제완화에 따라 1987년 공기업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뉴질랜드 국민들의 서신 등의 전달을 비롯하여 전신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포 및 택배서비스와 수신·여신 등의 금융서비스, 항공기열차 등의 운송수단들의 매표시스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뉴질랜드 우표 및 각종 자료처리시스템과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있다.

#### 11. 선거인등록청(Electoral Enrolment Centre)

선거인등록청은 우정국의 산하기관이면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의회의원 선거인 명부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거관리 조직을 두고 있다. 선거인 명부의 월별·주기별 관리작업 뿐만 아니

라 주요 선거 이전에 각 선거후보자들의 공약과 약력갱신 작업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12. 석탄관리주식회사(Solid Energy New Zealand Limited)

석탄관리주식회사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석탄채광 및 판매기업이다. 연간 채굴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백14만 톤의 석탄을 철강제조를 위한 탄소 공급원으로서 세계각지에 수출하고 있다. 당해기업은 뉴질랜드내 Huntly, Westport, Grey-mouth 및 Invercargill 지역 7개 지하 및 지상탄광으로부터 연간 4백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 13. 팀버랜드 서해안관리주식회사 (Timberlands West Coast Limited)

팀버랜드 서해안관리주식회사는 뉴질랜드 남섬지역의 서부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삼림녹화, 식림법 연구, 수확 및 이의 시장판매 등을 관장하고 있다. 1990년 공기업 형태로 설립된 이후, 당해기업은 뉴질랜드 서부해안 지역의 외래종으로 구성된 인공삼림의 조성 및 관리를 비롯하여 1만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 내 고부가가치 삼림의 조성 및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14. 전력거래주식회사(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뉴질랜드 전력거래주식회사는 "국가전력 전송망(National

grid)”으로 알려진 전송망과 하위전력발전소, 전력통제소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일종의 네트워크이다. 전력발생업자 및 설비로부터 이를 송·배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력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세부업무로서 당해기관은 National grid의 지속적인 관리와 실시간 전력공급 실태파악 및 조정(system opearator), 비상시 전력공급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제6장 결 론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웨스트민스터식의 의회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과 헌법상의 연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영국여왕인 Elizabeth 2세(Silvia Cartwright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이다. 여왕은 뉴질랜드 수상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정책결정기구인 내각으로서 내각은 주요정책과 법률안의 결정 및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의 중요 결정사항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합의도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 군대, 경찰등 기타부처, 독립행정기관(Crown Owned Entities),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핵심부처는 다시 내각사무처, 공관리위원회, 재무부(Treasury)등 3개의 중앙관리기구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계선기구(Line Departments)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무부와 관세청의 경우는 1840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부부처이다. 소속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내무부·법무부(14개), 교통부(11개)이고, 인력규모가 가장 작은 부처는 여성부(30명)이다.

독립행정기관은 2004년 제정된 독립행정기관법에 의해 운

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과 조직성격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공무원연금청, 과학기술연구재단, 사법개혁청, 마오리언어위원회, 국립학교, 국립도서관 등 종류가 다양하고 현재 2,800여개의 독립행정기관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영역의 능률 인센티브와 공공분야의 책임성을 혼합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개발주식회사, 농업토지관리주식회사, 석탄관리주식회사, 동식물해충통제주식회사, 선거인 등록청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정부부처에서는 주로 정책결정, 정책자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행정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정책집행,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 공공부문의 인원은 3,000개의 조직에 약 350,00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는 재무부나 내각사무처처럼 영향력 있는 조직부터 눈에 띄지 않는 조직까지 포함된다. 공공부문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박물관, 학교, 병원, 카지노나 민간항공까지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정부 부처의 수와 명칭은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우선순위가 변함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있다. 정부조직은 내무부, 외교통상부 등 35개 국, 실, 부처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관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관 1인이 여러부처를 담당하는 복수장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선거이후 클락 행정부의 내각은 20명의 각료, 내각 밖의 6명의 장관, 2명의 정무차관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17개 이상의 업무·책임과 58개의 주요 포트폴리오가 있다. 또한 42명의 부장관의 책임·업무가 맞물려 있다. 각 부처장관은 정책결과를 결정하는

정치적 업무에 책임을 지는 반면에 사무차관은 그의 부서가 제공해야하는 정책이 정책 기본원칙에 부합한 산출물을 제공하였는지와 그 산출물에 관해서 장관에게 직접적인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료 임명에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 및 정책자문기능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정책집행과 서비스집행은 독립행정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많은 편이다.

셋째, 부처별 기능을 살펴보면 업무연계가 복잡한 편이다. 특히 내각사무처에서 정책조정 업무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영화, 문학,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부에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청도 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넷째,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로서 농림부는 농업, 임업, 차단방역 및 식품안전, 농산물 등의 관리로 국민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뉴질랜드의 공무원들은 1962년 Royal Commission에서 정치적 중립성, 충성, 청렴함을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공무원 윤리 강령(the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반영되어 성문법화되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지키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

사이에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 실장급 고위관료들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최근 몇 년간 정부조직의 개혁은 새로운 책임성을 통한 수직적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State Sector Act)과 재정법(the Public Finance Act)에 의해 제도화되는 책임성의 메커니즘은 의회, 내각, 공공서비스 간의 헌법적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근세. (1997). “권위에서 시장으로: 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6(2): 247-272.
- 김근세. (2004).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
- 정광렬 (2004). 주요국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문화관광부.
- AgResearch (2005). Corporate Profile: Farming, Food and Health First.
- Biosecurity New Zealand (2005). Briefing for Incoming Ministers.
-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2008.
- Career Services rapuara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 Crown Minerals (2004). Strategic and Business Plan: 2004-2007.
-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2004). Annual Report: 2004-2005.
-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 (2005).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Department of Labor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7.
- DPMC (2005).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Drug Free Sport New Zealand (2005). Annual Report 2004-2005.
- (2004). New Zealand Sports Drug Agency Strategic

- Plan 2004-2008.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2005a). Statement of Intent: 2005-2008.
- (2005b). Annual Report 2004/05.
- 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2005). Strategic & Business Plan: 2005-2008.
- Environment Canterbury (2005). Annual Report 2005-2006.
- (2004). Environment Canterbury Community Plan 2004-2014.
-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2006.
- Environment Southland (2006). A Guide to Your Long-term Council Community Plan.
- (2005). Environmental Southland: Leading and Involving the Southland Community in Managing Our Natural Resources of Air, Water, Land & Coast.
- Environment Waikato (2005). 2005/2006 Annual Plan.
- Export Credit Office (2002). Review of the New Zealand Export Credit Office. prepared by the Export Credit Office's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 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 Technology (2004). Annual Report 2004/05: Investing in Innovation for New Zealand's Future.
-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2008: Investing in

Innovation for New Zealand's Future.

Geoffrey. P. & Matthew. P.(2004), BRIDLED POWER : New Zealand's Constitution and Government

Health Research Council of New Zealand (2004). Performance Highlight 2004/05.

Health Sponsorship Committee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2006.

Hon Judith Tizard (2006). NZSO Statement of Intent: for the three years to June 2008.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Horman, Greg (2002). Public Debt Management in New Zealand. New Zealand Debt Management Office.

Housing of New Zealand Corporation (2005a). Annual Report 2004-2005.

----- (2005b). Statement of Intent: 2005-2008.

Inland Revenue Department (2005). Annual Report 2005.

-----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09.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2005). Report of Commissioner of Patents, Trade Marks and Designs.

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2005). Report of 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Trust.

Maori Broadcasting Funding Agency (2005). Te Māngai Pāho Statement of Intent 2005.

Maori Language Commission (2005). Statement of Interest:

2005-2008.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2005).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Annual Report 2004/2005.

Ministry for Culture & Heritage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10.

----- (2005). Annual Report 2005.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5). Report of th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Ministry of Conservation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Ministry of Defence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 (2000). The Government's Defense Policy Framework.

Ministry of Education (2005). Annual Report.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5a). Annual Repor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2005b). The Corporate Profile: Our Strategy for Growth 2005-2008.

Ministry of Fisheries (2005). Annual Report 2004/2005.

-----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5). Annual Report 2004/05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Ministry of Health (2005). Annual Report 2004/05 including the  
Health and Independence Report.

-----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Ministry of Justice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7.

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2006). Statement of Intent  
covering the 2006-2009 Year.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6). Moving forward with  
Confidence: Statement of Intent 2006-2007.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Ministry of Transport (2005). Annual Report 2005.

----- (2006). Continuing the Journey: Statement of Intent  
2006-09.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05). Annual Report.

New Zealand Film Commission (2005). Report of 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2004). Heritage Management  
Guideline for Resource Management Practitioners.

New Zealand On Air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06.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2005). Statement of Intent  
2005/2006 to 2007/2008.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Palmer, G. & Palmer, M. (2004). Bridled Power: New Zealand's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Public Sector Training Organization (2005). Profile 2006-08.  
written by Jay Lamburn.
- QEII National Trust (2005). Annual Report 2005.
- Raymond Miller. (1998). New Zealand Politics in Transitions
- Richard S. & Chris E. (2005). Public Policy in New Zealand :  
Institutions, Processes and outcomes.
- Serious Fraud Office (2005). Annual Report.
- Social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Committee (2003). Annual  
Report 2003.
- 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2005a). Statement of Intent:  
2005-06.
- (2005b).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2006). SPARC: Our Vision and Direction: Strategies  
for Success from 2006.
- State Service Commission (2005). State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2005.
- The Treasury (2005).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05.
- 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2006). Statement  
of Intent 2006-2009.
- Wood, G. A & Rudd, Chris (2004). The Politics and Government  
of New Zealand: Robust, Innovative and Challenged.  
University of Ontago Press.

## 인터넷 사이트

AgResearch, <http://www.agresearch.co.nz/aboutus.asp>

AgriQuality Limited, <http://www.agriquality.com/>

Asure New Zealand Limited, <http://www.asure.co.nz/>

Centerbury 환경청(Environment Centerbury),

<http://www.ecan.govt.nz/home/>

Genesis Power Limited, <http://www.genesisenergy.co.nz/>

Heartland Services, <http://www.heartlands.govt.nz/>

Meridian Energy Limited, <http://www.meridianenergy.co.nz/>

Metra Information Limited, <http://www.metra.co.uk/>

Southland 환경청(Environment), <http://www.es.govt.nz/>

Waikato 환경청(Environment Waikato), <http://www.ew.govt.nz/>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국(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http://www.familyservices.govt.nz/>

건설주택부(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http://www.dbh.govt.nz/>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http://www.med.govt.nz/>

공공관리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

<http://www.ssc.govt.nz/display/home.asp>

공공보건 정보청(Public Health Intelligence),

<http://www.moh.govt.nz/phi>

공무원훈련기관(Public Sector Training Organization),

<http://www.psto.govt.nz/display/home.asp>

- 과학기술연구부(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morst.govt.nz/>
-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 Technology),  
<http://www.first.govt.nz/>
- 관세청(New Zealand Custom Services),  
<http://www.customs.govt.nz/default.htm>
-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  
<http://www.corrections.govt.nz/public/index.html>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inedu.govt.nz/>
- 교육심사청(Education Review Office),  
<http://www.ero.govt.nz/ero/publishing.nsf/Content/Home+Page>
- 국립검역국(National Screening Unit),  
<http://www.healthywomen.org.nz/>
- 국립삼림 및 조류보호협회(Royal Forest and Bird Protection Society),  
<http://www.forestandbird.org.nz/>
- 국립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ttee),  
<http://www.nhc.govt.nz/>
- 국립여성고용관련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Employment of Women), <http://www.nacew.govt.nz/>
- 국립해양 및 대기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ic Research Limited),

<http://www.niwa.co.nz/flash/>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기업사무국 (Companies Office), <http://www.companies.govt.nz>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t.nz/>

노인청(Office for Senior Citizens), <http://www.osc.govt.nz/>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ttp://www.maf.govt.nz/>

농산물 시장연구 및 개발기금(Agricultural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rust),

<http://www.agmardt.org.nz/>

가정지원국(Working for Families),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건전체육 조성국(New Zealand Sports Drug Agency),

<http://www.drugfreesport.org.nz/Home.html>

방역국(MAF Quarantine Service),

<http://www.maf.govt.nz/quarantine/about/index.htm>

경정산업 위원회(New Zealand Racing Industry Board),

<http://nzzracingboard.co.nz/>

경찰청(New Zealand Police), <http://www.police.govt.nz/>

고등교육 진흥재단(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http://www.tec.govt.nz/>

공군(Royal New Zealand Air Force), <http://www.airforce.mil.nz/>

공무원 연금청(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Authority),

<http://www.gsfa.govt.nz/>

공영라디오방송(Radio New Zealand Limited),

<http://www.radionz.co.nz/>

공영방송(Television New Zealand Limited), <http://tvnz.co.nz/>

관광청(Ministry of Tourism), <http://www.tourism.govt.nz/>

광물국(Crown Minerals), <http://www.crownminerals.govt.nz/>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

<http://www.teacherscouncil.govt.nz/>

교직원인센터(TeachNZ), <http://www.teachnz.govt.nz/>

국립교향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http://www.nzso.co.nz/html/>

국가정보국(New Zealan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http://www.nzsis.govt.nz/>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http://www.natlib.govt.nz/>

국립박물관(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http://www.tepapa.govt.nz/>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http://www.ird.govt.nz/contact-us/>

국제원조 및 개발기구(New Zealand's International Aid & Development),

<http://www.nzaid.govt.nz/>

기상서비스(Meteorological Service of New Zealand Limited),

<http://www.metservice.co.nz/default/index.php>

기업인수 위원단(Takeovers Panel),

<http://www.takeovers.govt.nz/>

남극연구소(New Zealand Antarctic Institute),

<http://www.antarcticanz.govt.nz/>

도로공사(Transit New Zealand), <http://www.transit.govt.nz/>

동식물 해충통제국(Animal Control Products Limited),

<http://www.pestoff.co.nz/>

무역투자진흥공사(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http://www.nzte.govt.nz/>

문화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

<http://www.creativenz.govt.nz/>

방송위원회(New Zealand On Air), <http://www.nzonair.govt.nz/>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 <http://www.nzdf.mil.nz/>

벤처투자 재단(New Zealand Venture Investment Fund),

<http://www.nzvif.com/index.html>

보건 스폰서쉽 위원회(Health Sponsorship Committee),

<http://www.hsc.org.nz/>

복권보조금이사회(New Zealand Lottery Grants Board),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  
-Lottery-Grants-Index](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Lottery-Grants-Index)

복권위원회(New Zealand Lotteries Commission),

<http://www.nzlotteries.co.nz/>

부채관리청(New Zealand Debt Management Office),

<http://www.nzdmo.govt.nz/>

사고보상국(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http://www.acc.co.nz/wcm001/idcplg?IdcService=SS\\_GET\\_PAGE&nodeId=1494](http://www.acc.co.nz/wcm001/idcplg?IdcService=SS_GET_PAGE&nodeId=1494)

사법개혁청(Law Commission), <http://www.lawcom.govt.nz/>

상업감독국(Commerce Commission),

<http://www.comcom.govt.nz/>

석탄공사(Solid Energy New Zealand Limited),

<http://www.solidenergy.co.nz/>

선거관리위원회(Chief Electoral Office),

<http://www.elections.org.nz/>

소방청(New Zealand Fire Service), <http://www.fire.org.nz/>

뉴질랜드 수출신용청(Export Credit Office),

<http://www.nzeco.govt.nz/>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http://www.nzfsa.govt.nz/>

국립관현악단(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http://www.nzso.co.nz/html/>

아시아 협력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http://www.asianz.org.nz/>

안전의료장치청 (Medsafe),

<http://www.medsafe.govt.nz/sitemap.htm>

연금 및 자산관리청(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http://www.nzsuperfund.co.nz/>

영화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http://www.nzfilm.co.nz/>

우정공사(New Zealand Post Limited), <http://www.nzpost.co.nz/>

유적관리재단(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http://www.historic.org.nz/>

육군(New Zealand Army), <http://www.army.mil.nz/>

육상운송국(Land Transport New Zealand),

<http://www.landtransport.govt.nz/>

음주자문위원회(Alcohol Advisory Council of New Zealand),

<http://www.alcohol.org.nz/>

의수 · 의족국(New Zealand Artificial Limb Board),

<http://www.nzalb.govt.nz>

의약품 조제관리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http://www.pharmac.govt.nz/>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http://www.hrc.co.nz/home/default.php>

자본투자 촉진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http://www.sec-com.govt.nz/>

자산정보청(Valuation New Zealand Limited), [https://](https://www.qv.co.nz/)

[www.qv.co.nz/](http://www.qv.co.nz/)

전력감독국(Electricity Commission),

<http://www.electricitycommission.govt.nz/>

전력거래소(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http://www.transpower.co.nz/>

- 뉴질랜드 정부(New Zealand Government), <http://www.govt.nz/>  
 정신건강 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http://www.mhc.govt.nz/>  
 주택보급촉진청(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http://www.hnzc.co.nz/>  
 주택공사 (Housing of New Zealand Corporation),  
<http://www.hnzc.co.nz/>  
 지역환경 보존청(Environmental Bay of Plenty),  
<http://www.envbop.govt.nz/About-us/About-Us.asp>  
 지진피해보상국(Earthquake Commission),  
<http://www.eqc.govt.nz/>  
 직업서비스청(Career Services rapuara),  
<http://www.careers.govt.nz>  
 집행유예 위원회(New Zealand Parole Board),  
<http://www.paroleboard.govt.nz/nzpb/index.html>  
 차단방역국(Biosecurity New Zealand),  
<http://www.biosecurity.govt.nz/>  
 철도공사(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http://www.ontrack.govt.nz/>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http://www.sparc.org.nz/>  
 체육활동관련 약물방지청(Drug Free Sport New Zealand),  
<http://www.drugfreesport.org.nz/>  
 표준규격위원회(Standards Council), <http://www.standards.co.nz/>

학력심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http://www.nzqa.govt.nz/>

뉴질랜드 학생수당(StudyLink),

<http://www.studylink.govt.nz/tools/contact/contact.html>

학술원(Royal Society of New Zealand), <http://www.rsnz.org/>

항공조정공사(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

<http://www.airways.co.nz/>

항소법원(Court of Appeal),

<http://www.courts.govt.nz/family/home.asp>

해군(Royal New Zealand Navy), <http://www.navy.mil.nz/>

해상안전국(Maritime New Zealand),

<http://www.maritimenz.govt.nz/>

혈액서비스(New Zealand Blood Service),

<http://www.nzblood.co.nz/>

독립행정기관관리자문단(Crown Company Monitoring Advisory Unit),

<http://www.ccmau.govt.nz/>

라디오 주파국(Radio Spectrum Management Group),

<http://www.rsm.govt.nz/>

리더쉽 개발센터(Leadership Development Centre),

<http://www.ldc.govt.nz/>

마오리 TV 서비스국(Māori Television Service),

<http://www.maoritelevision.com/>

마오리 개발부(Ministry of Maori Development)

<http://www.tpk.govt.nz/default.asp>

마오리 방송기금청(Maori Broadcasting Funding Agency),

<http://www.tmp.govt.nz/about/about.html>

마오리 언어위원회(Maori Language Commission),

<http://www.tetaurawhiri.govt.nz/english/>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 Heritage),

<http://www.mch.govt.nz/>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http://www.caa.govt.nz/>

민방위 및 위험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se and Emergency Management),

<http://www.mcdem.govt.nz/memwebsite.nsf>

민족관련 사무청(Office of Ethnic Affairs),

<http://www.ethnicaffairs.govt.nz/oeawebsite.nsf/>

방송표준원(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http://www.bsa.govt.nz/>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http://www.justice.govt.nz/>

보건 및 장애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http://www.hdc.org.nz/>

보건부(Ministry of Health), <http://www.moh.govt.nz/moh.nsf>

보건연구위원회(Health Research Council),

<http://www.hrc.govt.nz/>

자연보호부(Ministry of Conservation),

<http://www.doc.govt.nz/index.html>

사생활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http://www.privacy.org.nz/>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http://www.msd.govt.nz/>

사회정책평가 및 연구위원회(SPEaR),

<http://www.spear.govt.nz/SPEAR/common/home.do>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http://www.fish.govt.nz/en-nz/default.htm>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http://www.transport.govt.nz/home/>

수송사고조사위원회(Transport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http://www.taic.org.nz/>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

<http://www.asianz.org.nz/>

에너지 효율 및 보존청(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http://www.eeca.govt.nz/>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http://www.mwa.govt.nz/>

영화 및 문학 등급분류 사무국(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http://www.censorship.govt.nz/>

와이탕기 재판소(Waitangi Tribunal),

<http://www.waitangi-tribunal.govt.nz/>

운송안전신탁(Road Safety Trust), <http://www.roadsafety.govt.nz/>

위법행정행위 항소청(Police Complaints Authority),

<http://www.pca.govt.nz/>

입법자문위원회(Legislation Advisory Committee),

<http://www.justice.govt.nz/lac/contact/index.html>

자선사업위원회(Charities Commission),

<http://www.charities.govt.nz/>

장애인 사무청(Office for Disability Issues),

<http://www.odi.govt.nz/>

재무부(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t.nz/>

전기사업자 등록위원회(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http://www.ewrb.govt.nz/>

정부정보보안국(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http://www.gcsb.govt.nz/>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

<http://www.lgc.govt.nz/lgcwebsite.nsf>

지역보건기관 재정관리청(Crown Health Financing Agency),

<http://www.rhmu.govt.nz/>

지역사회 및 자발적영역청(Office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http://www.ocvs.govt.nz/>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http://www.iponz.govt.nz/pls/web/dbssiten.main>

직업 및 소득국(Work and Income),

<http://www.workandincome.govt.nz/>

청소년 개발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http://www.myd.govt.nz/>

내각사무처(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http://www.dpmc.govt.nz/>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http://www.stats.govt.nz/default.htm>

특수사기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http://sfo.govt.nz/>

판사행동조사국(Office of the Judicial Conduct Commissioner),

<http://www.jcc.govt.nz/>

항공안전국(Aviation Security Service), <http://www.avsec.govt.nz/>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http://www.mfe.govt.nz/>

환경위험관리청(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http://www.ermanz.govt.nz/>

환태평양사업신탁(Pacific Business Trust),

<http://www.pacificbusiness.co.nz/default.asp>

환태평양 지역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http://www.minpac.govt.nz/>

환태평양 협력재단(Pacific Cooperation Foundation),

<http://www.pcf.org.nz/>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tate\\_sector\\_organizations\\_in\\_New\\_Zealand](http://en.wikipedia.org/wiki/State_sector_organizations_in_New_Zealand)

[http://webzine.madang21.or.kr/no\\_96/join/jo-04.htm](http://webzine.madang21.or.kr/no_96/join/jo-04.htm)

##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

### ◆ 1992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2-01   |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방안                         | 남현욱        |
| 92-02   | 지방자치시대의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구축방안                   | 김재훈        |
| 92-03   |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 체계 개편 방안      | 진재구        |
| 92-04   |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박영기        |
| 92-05   | 중장기 정부인력규모 예측                             | 송하중        |
| 92-07   |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 방안                        | 이성우        |
| 92-08   |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 구축                     | 박세정        |
| 92-09   |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                  | 남현욱        |
| 92-10   | 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수철        |
| 92-11   |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발전 방향                         | 정하경        |
| 92-12   |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 김재훈        |
| 92-13-1 |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br>-1992년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서원석<br>김광주 |
| 92-13-2 |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br>-1992년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서원석<br>김광주 |

## ◆ 1993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3-01 | 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 연구                                 | 이성우        |
| 93-02 |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 방안                              | 박영기        |
| 93-03 | 유교권 국가(한·중·일)간의 관료문화 비교 연구                     | 황성돈        |
| 93-04 | 한국 행정에 적합한 사무혁신방안의 모색<br>-기법 개발을 위한 탐색적 기초 연구- | 박세정        |
| 93-05 |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임용체계 개선                     | 진재구        |
| 93-06 |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배분에 관한 연구<br>-중소기업지원부문을 중심으로-      | 김재훈        |
| 93-07 | 행정통계자료집 1993                                   | 서원석        |
| 93-08 |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 의식 비교                           | 서원석<br>김광주 |
| 93-09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통상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이수철        |
| 93-12 | 신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br>-여론 선도층 및 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    | 이수철<br>박세정 |

## ◆ 1994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4-01 | 개방화 시대의 경제행정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수철        |
| 94-02 | 정부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기법 개발                       | 이성우        |
| 94-03 | ILO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 연구                    | 서원석        |
| 94-04 | 한국행정에 접합한 사무혁신방안에 관한 연구<br>-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수철<br>박세정 |
| 94-05 |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측정                        | 유재원        |
| 94-06 |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 및 기준의 설계                      | 진재구        |
| 94-07 | 한국행정사 문헌목록집                               | 서원석        |
| 94-08 | '94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                           | 황성돈        |
| 94-10 | 정부행정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 송하중        |
| 94-11 | 정책정보체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                         | 박영기        |
| 94-12 |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                         | 김재훈        |
| 94-13 |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에<br>관한 연구      | 박영훈        |
| 94-15 | 정부 산하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 분석                  | 이수철        |
| 94-16 | 조달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달수요기관 의견 조사              | 김재훈        |

## ◆ 1995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5-01   | 정부 인력관리의 신축성 제고 방안                | 박중훈 |
| 95-02   |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                 | 하상묵 |
| 95-03   | 국가기록물 관리의 발전 방안                   | 최유성 |
| 95-04   | 행정의 위기관리능력 제고 방안                  | 이성우 |
| 95-05   | 정부인력의 국제화 방안                      | 이수철 |
| 95-06   |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 유재원 |
| 95-08   | 지방화시대의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 김재훈 |
| 95-0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 최유성 |
| 95-10   |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인력관리의 과제와 대책         | 박응격 |
| 95-11-1 | 한국행정사료집<br>-제1편 인사행정-             | 서원석 |
| 95-11-2 | 한국행정사료집<br>-제2편 조직 및 행정관리-        | 서원석 |
| 95-12   |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기법 개발('96년도 계속과제)      | 조성한 |
| 95-13   | 행정 및 정책사례                         | 송하중 |
| 95-14   |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조사('95)        | 조성한 |
| 95-15   |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 박중훈 |
| 95-16   | 수평적 정부간 협력체제 정립 방안<br>-수도권을 중심으로- | 유재원 |
| 95-17   |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 방안              | 박재희 |

## ◆ 1996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6-01-1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독일의 정부조직-              | 양현모        |
| 96-01-2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일본의 정부조직-              | 조성한<br>문신용 |
| 96-01-3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싱가포르의 정부조직-            | 서진완        |
| 96-02   | 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 최유성        |
| 96-03   | 시·군 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                 | 홍준현        |
| 96-04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 방안                  | 문신용        |
| 96-05   |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Ⅰ)<br>-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 박중훈<br>김판석 |
| 96-06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 개편 방안                        | 박중훈<br>최유성 |
| 96-07   | 행정사무자동화의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서진완        |
| 96-08   | 공무원 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 하상묵        |
| 96-09   |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 한국행정학회     |
| 96-10   | 행정개혁안의 집행실태조사                              | 한국행정학회     |
| 96-11   |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기법 개발                           | 조성한        |
| 96-12   | 중앙정부의 직무분석                                 | 조성한<br>김병섭 |
| 96-13   |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제3섹타 활용 방안                    | 박재희        |
| 96-14   | '96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KIPA DB-96)                | 서원석        |
| 96-15   | 한국의 영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양태진        |

## ◆ 1997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7-01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방안                              | 박재희               |
| 97-02   |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조성한               |
| 97-03   |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 진재구<br>(한국행정학회)   |
| 97-04   | 공직 조기퇴직자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 서원석               |
| 97-05   | Administrative Reform and Korean Transformation | 노정현<br>Roy W Shin |
| 97-06   |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 하상묵               |
| 97-07   |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 사공영호              |
| 97-08   |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를 위한 직제분석                          | 김근세               |
| 97-09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 97-10   | 행정정보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 서진완               |
| 97-11   |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문신용               |
| 97-12   |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br>-행정통합을 중심으로-       | 양현모               |
| 97-13   | 지방 행정계층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 방안                          | 홍준현               |
| 97-14-1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미국의 연방정부조직-                 | 홍준현<br>조진래        |
| 97-14-2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영국의 중앙정부조직-                 | 박재희               |
| 97-14-3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중국의 중앙정부조직-                 | 진재구<br>박기철        |
| 97-15   | '97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KIPA DB-97)                     | 정보관리실장            |
| 97-16   |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Ⅱ)<br>-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 박중훈               |
| 97-17   | 영국·일본의 행정개혁사례                                   | 박중훈               |

## ◆ 1998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8-01   | 사회보험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성한                |
| 98-02   |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박중훈                |
| 98-03   | 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 오성호<br>이선우         |
| 98-04   | 행정윤리와 깨끗한 정부건설                   | 서원석<br>왕 위         |
| 98-05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 권미수                |
| 98-06   |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활성화 방안                 | 문신용                |
| 98-07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과정의 혁신 지침          | 서진완                |
| 98-08   |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개선 방안            | 홍준현                |
| 98-09   | 특별지방행정관청의 효과적 운용 방안              | 박재희                |
| 98-10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선 방안               | 최유성                |
| 98-11   |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임승빈                |
| 98-12   |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 양현모                |
| 98-13-1 |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계속과제)              | 이현수                |
| 98-13-2 |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계속과제)         | 이현수                |
| 98-14   | 행정DB 구축(계속과제)                    | 맹보학                |
| 98-15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민고객만족도 조사(계속과제)      | 조성한<br>강정석         |
| 98-17-1 |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도입 방안 | 홍준현<br>윤태범         |
| 98-17-2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프랑스의 중앙정부조직- | 안영훈                |
| 98-18   | 도시행정관리체계의 혁신에 관한 연구              | 박경원                |
| 98-19   |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기법            | 김태윤                |
| 98-20   |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강인재<br>(한국행정문제연구소) |

## ◆ 1999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99-01 |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 박중훈 |
| 99-02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 박재희 |
| 99-03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효과적 운영 및 조기정착 방안<br>-3개 시범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 주재현 |
| 99-04 |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이근주 |
| 99-05 |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개발                                   | 김태운 |
| 99-06 | 행정정보화와 조직운영의 혁신방안                                | 문신용 |
| 99-07 | 공무원 계약임용의 방법에 관한 연구                              | 서원석 |
| 99-08 | 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 임승빈 |
| 99-09 |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 최유성 |
| 99-10 | 한국과 중국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 양현모 |
| 99-11 | 중소기업과 출연연구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김준모 |
| 99-12 | 행정DB 구축                                          | 맹보학 |
| 99-13 | 미국 행정부 공무원의 윤리행동 준칙                              | 권영철 |
| 99-14 | 행정개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전략                       | 유홍림 |
| 99-15 |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 관리                             | 이근주 |

## ◆ 2000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0-01 | 미국 정부의 직위분류제                 | 서원석        |
| 2000-02 |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 박재희        |
| 2000-03 | 정부간 관여                       | 최유성        |
| 2000-04 | 행정절차와 부패                     | 강정석        |
| 2000-05 | 글로벌 스탠다드의 행정                 | 김준모        |
| 2000-06 | 인터넷기술과 행정서비스                 | 문신용        |
| 2000-07 |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 김태운        |
| 2000-08 | 한·중 인사개혁                     | 임승빈        |
| 2000-09 | NGO 의사결정과정<br>-경실련과 참여연대 사례- | 양현모        |
| 2000-10 | NGO 지원과 정부                   | 이근주        |
| 2000-11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br>-환경규제 정책사례-   | 주재현        |
| 2000-12 | 행정DB 구축(계속과제)                | 맹보학        |
| 2000-13 |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립배경 및 과정           | 하미승        |
| 2000-14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중국편-     | 최월화        |
| 2000-15 | 전자민원정보시스템                    | 문신용        |
| 2000-16 | 한국행정문화의 순기능성                 | 박동서<br>이근주 |
| 2000-17 | 목표관리제와 실적평가                  | 박중훈        |

## ◆2001년도 연구보고서◆

|           |                                                       |                 |
|-----------|-------------------------------------------------------|-----------------|
| 2001-01   |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 서원석             |
| 2001-02   | 공무원 직무수행역량 평가모델                                       | 권용수             |
| 2001-03   |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박재희             |
| 2001-04   |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 강정석             |
| 2001-05   | 정책추진역량평가 개선방안(1)                                      | 이근주             |
| 2001-06   |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 양현모             |
| 2001-07   |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분석<br>-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 허만형<br>(한국정책학회) |
| 2001-08   | 웹 민원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 문신용             |
| 2001-09   |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br>-산업안전보건 규제 사례-                        | 주재현             |
| 2001-10   | 지방자치시대의 정부간 인사교류 실태분석 및 활성화<br>방안                     | 조성호<br>(한국행정학회) |
| 2001-11   |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실효성 분석                                    | 박중훈             |
| 2001-12   | 대안적 근무형태와 공직사회                                        | 김준모             |
| 2001-13   | 2001년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 분석                          | 박중훈             |
| 2001-14   | 한국행정연구원 10년사                                          | 기획조정실           |
| 2001-15   | 한국의 기술발전과 산업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비교 연구                         | 유홍립<br>(한국정치학회) |
| 2001-16   | 행정DB구축(계속과제)                                          | 전산실             |
| 2001-17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영국 개정관 (계속과제)                     | 이남국             |
| 2001-18-1 |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계속과제)                                 | 서성아<br>강경희      |
| 2001-18-2 |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계속과제)                                | 황성원<br>함종석      |

## ◆ 2002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2-01 | 기관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 박재희           |
| 2002-02 | 행정서비스 현장제도의 효과적 이행요인            | 윤광재           |
| 2002-03 |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방안                   | 김 신           |
| 2002-04 | 행정정보서비스 상업화 가능성과 그 한계           | 김준모           |
| 2002-05 |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모색            | 서원석           |
| 2002-06 |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권용수           |
| 2002-07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 양현모           |
| 2002-08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 문신용           |
| 2002-09 |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계약제도         | 강정석           |
| 2002-10 | 성과계약과 인사관리<br>-개방형 임용제-         | 이근주           |
| 2002-11 | 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 방안    | 남기범<br>(성결대)  |
| 2002-12 |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 방안               | 최유성           |
| 2002-13 |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박재완<br>(성균관대) |
| 2002-14 |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한 개혁방안 모색            | 서원석           |
| 2002-15 | 최근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 양현모           |
| 2002-16 |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2년)      | 최유성           |
| 2002-17 | 성과계약과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제 구축          | 이재원           |
| 2002-18 | 효과적인 민원행정 관리방안                  | 조성한<br>(중앙대)  |
| 2002-19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br>-일본의 중앙정부조직- | 서성아           |
| 2002-20 | 기관행정만족도 조사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홍재환           |
| 2002-21 |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개발          | 김성준           |
| 2002-22 | 기관역량평가모형 개선방안(Ⅱ)                | 윤기석           |
| 2002-23 | 주요정책과제 평가방법 연구                  | 원필욱           |
| 2002-24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         | 윤수재           |

|         |                          |                   |
|---------|--------------------------|-------------------|
| 2002-25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 홍재환               |
| 2002-26 | 정책사례집                    | 원필욱<br>이근주<br>윤기석 |
| 2002-27 | 정부기관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 방향 | 이근주               |
| 2002-28 |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 윤수재<br>김성준        |

## ◆ 2002년 NGO 협동연구과제 ◆

|         |                                        |                               |
|---------|----------------------------------------|-------------------------------|
| 2002-01 | NGO와 21세기 사회발전<br>-한국 NGO의 활동 실태와 과제 - | 박재희                           |
| 2002-02 | 한국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 김준모                           |
| 2002-03 | 한국NGO활동의 법적 한계<br>-시민불복종운동을 중심으로-      | 조은형<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2-04 | NGO 성(Gender)평등 운동의 실태와 과제             | 한정자<br>(한국여성개발원)              |
| 2002-05 | 한국NGO 통일운동의 실태와 한계                     | 이우영<br>(통일연구원)                |
| 2002-06 | 경험을 통해 본 한국NGO 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            | 김동준/김태룡<br>(참여사회연구소)<br>(경실련) |
| 2002-07 | 한국NGO 반부패운동의 실태와 과제                    | 김병진<br>(한국정책학회)               |

## ◆ 2003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3-01 | 공무원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 강성철<br>(한국인사행정학회)  |
| 2003-02 | 신정부 최우선 추진 정책과제                          | 임승빈<br>(한국정책학회)    |
| 2003-03 | 정부조직에서의 민주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서원석                |
| 2003-04 |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제고방안                | 문신용                |
| 2003-05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활성화 방안<br>에 관한 연구 | 이남국                |
| 2003-06 |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윤광재                |
| 2003-07 | 국가중장기발전 전략                               | 양현모                |
| 2003-08 |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개선방안                          | 강정석                |
| 2003-09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 이종수<br>(한국행정학회)    |
| 2002-10 | 정부의 국제지원사업의 운영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승중<br>(성균관대)      |
| 2003-11 | 기관평가 개선방안 연구                             | 이근주                |
| 2003-12 |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br>선방안       | 이진국<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3-13 | 기관장의 성과평가 시스템<br>-장관을 중심으로-              | 이근주                |
| 2003-14 | 성과계약 기반의 책임운영기관제도 확대방안                   | 이재원<br>(부경대)       |
| 2003-15 |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목표관리제 재평가와 개선방안<br>모색        | 최창수<br>(고려대)       |
| 2003-16 |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안                 | 박중훈                |
| 2003-17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                   | 윤수재                |
| 2003-18 | 주요정책과제 평가방법 연구                           | 이광희                |

|         |                                   |            |
|---------|-----------------------------------|------------|
| 2003-19 |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 강은숙        |
| 2003-20 | 기관역량평가모형 개선방안(Ⅲ)                  | 윤기석        |
| 2003-21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 이근주        |
| 2003-22 | 기관행정만족도 조사·분석                     | 홍재환        |
| 2003-23 | 기관업무 성과지표 연구                      | 한종희        |
| 2003-24 |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연구                    | 이광희        |
| 2003-25 | 기관평가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공병천        |
| 2003-26 | 기관평가 우수사례 분석<br>-환경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 윤수재<br>이광희 |
| 2003-27 |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 홍재환<br>윤기석 |
| 2003-28 | 정부개혁과 정책평가(연구총서)                  | 정책평가센터     |
| 2003-29 |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정창화        |
| 2003-30 | 선진국 규제영향분석 제도 비교 연구               | 최유성        |
| 2003-31 | 분야별 규제영향분석<br>-경제분야를 중심으로-        | 이종한        |
| 2003-32 |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 윤종설        |
| 2003-33 | 분야별 규제영향분석<br>-환경규제를 중심으로-        | 최무현        |
| 2003-34 |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 김 신        |
| 2003-35 | 규제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범        |
| 2003-36 |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br>-산업안전분야-       | 김정해        |
| 2003-37 |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br>-공장설립 규제를 중심으로- | 방민석        |
| 2003-38 |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 이성우        |

## ◆ 2003년 NGO 협동연구과제 ◆

|         |                                          |                  |
|---------|------------------------------------------|------------------|
| 2003-01 | 정부정책결정 및 평가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기능             | 서원석              |
| 2003-02 |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책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 이동수<br>(경희대)     |
| 2003-03 | 환경정책수립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과 기능                 | 이미정<br>(한국여성개발원) |
| 2003-04 | 정책평가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 조성한<br>(중앙대)     |
| 2003-05 | 정부기업정책형성과정에서의 NGO역할<br>-소액주주 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조희연<br>(참여사회연구소) |
| 2003-06 | NGO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br>-대안학교 운동-         | 김태룡<br>(서울행정학회)  |

## ◆ 2004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4-01 |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및 시정방안                       | 한중희          |
| 2004-02 | 통합적 민원상담·안내시스템 구축                           | 강정석          |
| 2004-03 | 지역균형발전 전략<br>-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 윤광재          |
| 2004-04 |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관한 연구                        | 양현모          |
| 2004-05 |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 박중훈          |
| 2004-06 |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인사관리시스템                         | 홍재환          |
| 2004-07 | 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 방안                             | 박재희          |
| 2004-08 |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 황성원          |
| 2004-09 |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방안                      | 윤경준<br>(충주대) |
| 2004-10 |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br>-통합성과 관리의 모색- | 박중훈          |

|         |                                            |                   |
|---------|--------------------------------------------|-------------------|
| 2004-11 | 주요제국의 행정 동향조사<br>-미국의 연방정부조직-              | 윤광재               |
| 2004-12 |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조사                       | 홍인수<br>안상현<br>서성아 |
| 2004-13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br>-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 나태준<br>(연세대)      |
| 2004-14 |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                         | 윤수재<br>공병천        |
| 2004-15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 강정석               |
| 2004-16 |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 이광희               |
| 2004-17 | 기관업무 성과지표 연구(II)                           | 한종희               |
| 2004-18 |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 및 활성화 방안                     | 황성원               |
| 2004-19 | 효율적인 정책관리 방안                               | 윤수재               |
| 2004-20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개선 방안                          | 공병천               |
| 2004-21 |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II)                | 강은숙<br>(한국해양대)    |
| 2004-22 | 정책평가 우수사례                                  | 정책평가센터            |
| 2004-23 | 노동시장 규제 of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br>-고용보호규제를 중심으로- | 최무현<br>(상지대)      |
| 2004-24 | 대기업규제의 변화와 재규제에 관한 연구                      | 김정해               |
| 2004-25 | 규제의 효과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 이종한               |
| 2004-26 | 환경규제 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 윤종설               |
| 2004-27 | 규제편익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 이영범               |
| 2004-28 | 전자정부를 통한 규제관리 방안                           | 방민석<br>(단국대)      |
| 2004-29 |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 김 신               |
| 2004-30 |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 최유성               |
| 2004-31 | 단계별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 방안                         | 정창화<br>(단국대)      |
| 2004-32 | 규제개혁 평가모형 및 규제개혁지수의 개발                     | 김태윤<br>(한국규제학회)   |
| 2004-33 | 금융규제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이재연<br>(한국금융연구원)  |
| 2004-34 | 직업훈련부문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성우<br>(한국정책학회)   |

- 2004-35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하미승  
(한국인사행정학회)
- 2004-36 고위공무원단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황인수
- 2004-37 정무직 인사평가 실시방안 연구 이근주  
(이화여대)
- 2004-38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임두택  
(전남대)
- 2004-39 공무원 노사담당 전문인력 육성방안 서원석
- 2004-40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방안 강여진
- 2004-41 공무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은  
(충북대)
- 2004-42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방안 박홍엽
- 2004-43 정부산하단체 인사시스템 연구 최호택  
(한국국정관리학회)
- 2004-44 참여정부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 하태권  
(서울산업대)
- 2004-45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최순영
- 2004-46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강성철  
(부산대)
- 2004-47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체계 정비방안 조경호  
(국민대)
- 2004-4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구축방안 남궁근  
(서울산업대)
- 2004-49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박천오  
(명지대)
- 2004-50 민·관 보수비교 진재구  
(청주대)
- 2004-51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 홍길표  
(천안대)
- 2004-52 정부산하단체임원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원석
- 2004-53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강인재  
(서울행정학회)
- 2004-54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영국·뉴질랜드·프랑스- 김재훈  
(한국정부회계학회)

|         |                                 |                   |
|---------|---------------------------------|-------------------|
| 2004-55 |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정비방안                | 김경호<br>(한국회계학회)   |
| 2004-56 |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권오성               |
| 2004-57 | 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br>-외국사채연구를 중심으로- | 김 혁<br>(한국정부회계학회) |
| 2004-58 |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 박재용<br>(경북대)      |
| 2004-59 |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 이남국               |
| 2004-60 | 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연구총서)              | 혁신변화관리센터          |

## ◆ 2004년 NGO 협동연구과제 ◆

|         |                                                |                    |
|---------|------------------------------------------------|--------------------|
| 2004-01 |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Ⅲ)<br>-정부와 NGO간의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박중훈                |
| 2004-02 | 형사사법분야에서의 NGO의 역할                              | 이진국<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4-03 | 시민단체 발전방향 및 과제                                 | 정무성<br>(숭실대)       |
| 2004-04 | 교육개혁과 NGO의 역할                                  | 이승중<br>(서울대)       |
| 2004-05 | 21세기 한국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                          | 차명제<br>(성공회대)      |
| 2004-06 | 지역사회 발전과 NGO                                   | 최승범<br>(국립한경대)     |

## ◆ 2005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5-01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윤광재          |
| 2005-02 |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 박중훈          |
| 2005-03 |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 최유성          |
| 2005-04 |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윤광재<br>장지원   |
| 2005-05 | 부패실태 추이분석                                    | 박중훈<br>서성아   |
| 2005-06 |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 최유성          |
| 2005-07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                      | 윤수재          |
| 2005-08 |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 이광희          |
| 2005-09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홍재환          |
| 2005-10 | 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 공병천          |
| 2005-11 | 정부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BSC(Balanced ScoreCard)모델 활용방안  | 윤수재          |
| 2005-12 |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연구<br>-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 홍재환          |
| 2005-13 | 공공부문에서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방안                      | 이광희          |
| 2005-14 | 생산성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br>-일선서비스 행정기관 중심으로-        | 한중희          |
| 2005-15 | 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연구총서)                       | 한중희          |
| 2005-16 |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이영범<br>(건국대) |
| 2005-17 | 환경부문 규제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연구                        | 노화준<br>(서울대) |
| 2005-18 |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 정준호          |

|         |                                               |                   |
|---------|-----------------------------------------------|-------------------|
| 2005-19 | 분야별 규제영향분석(금융분야)                              | 이종한               |
| 2005-20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 김 신               |
| 2005-21 |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 윤종설               |
| 2005-22 | 규제개혁의 변화관리에 대한 연구                             | 김정해               |
| 2005-23 | 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의 비교 및 분석                       | 김명환               |
| 2005-24 | 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안혁근               |
| 2005-25 |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br>-주요국가 사례 연구- | 남궁근<br>(한국행정학회)   |
| 2005-26 |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 백종섭<br>(한국인사행정학회) |
| 2005-27 |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역량분석                            | 강여진               |
| 2005-28 | 정부산하단체 인력관리 합리화 방안                            | 서원석               |
| 2005-29 | 특정직 공무원 인사심사 강화방안                             | 최순영               |
| 2005-30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진종순               |
| 2005-31 | 주요 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 분석<br>-공무원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 배귀희               |
| 2005-32 | 인사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박홍엽               |
| 2005-33 |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 진종순               |
| 2005-34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 인적자원센터            |
| 2005-35 | 정부투자기관 예산과목 구조개편                              | 정민근<br>(한국안전회계법인) |
| 2005-36 |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개선연구                              | 조택<br>(한국정책학회)    |
| 2005-37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 권오성               |
| 2005-38 |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조남건<br>(국토연구원)    |

|         |                                         |     |
|---------|-----------------------------------------|-----|
| 2005-39 |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 (연구총서)                    | 권오성 |
| 2005-40 | 정부혁신의 이해<br>-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논리-          | 강정석 |
| 2005-41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br>-해외 정부혁신사례와의 비교- | 은재호 |
| 2005-42 | 역대 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br>혁신      | 황혜신 |
| 2005-43 | 공공부문에 효과적인 Action Learning 도입방안         | 황성원 |
| 2005-44 | 정부혁신과 감사의 연계화 방안                        | 강정석 |

## ◆ 2005년 NGO 협동연구과제 ◆

|          |                                          |                    |
|----------|------------------------------------------|--------------------|
| 05-17-01 |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IV)<br>-국제 NGO 활동 실태분석- | 박중훈                |
| 05-17-02 | 국제 NGO 활동과 한국의 정책과정                      | 차재권<br>(동의대)       |
| 05-17-03 | 주요 국제 NGO 활동사례 분석                        | 원준호<br>(한국NGO학회)   |
| 05-17-04 | 국제기구의 활동과 NGO와의 관계                       | 연성진<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05-17-05 | 국내외 NGO간 교류활동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박재창<br>(한국미래정부연구회) |

## ◆ 2006년도 연구보고서 ◆

|         |                                           |                     |
|---------|-------------------------------------------|---------------------|
| 2006-01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                    | 박중훈 외               |
| 2006-02 |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Ⅱ)<br>-차기정부의 국정관리 정책과제- | 최유성 외               |
| 2006-03 | E-Governance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             | 문신용                 |
| 2006-04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계속)<br>-뉴질랜드의 정부조직-       | 장지원                 |
| 2006-05 | 부패실태 추이분석(계속)                             | 박중훈<br>서성아          |
| 2006-06 | 정책과정별 부패방지시스템 혁신방안                        | 윤종설                 |
| 2006-07 |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및 동향                      | 김정해<br>임준형<br>박형준   |
| 2006-08 | 행정부담의 측징 및 국가간 비교분석                       | 이종한                 |
| 2006-09 |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이종한                 |
| 2006-10 | 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작성                             | 김명환                 |
| 2006-11 |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 방안                        | 안혁근                 |
| 2006-12 |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강화 방안                         | 김정해                 |
| 2006-13 | 고객만족도 조사·분석<br>-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홍재환                 |
| 2006-14 | 정책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강영철                 |
| 2006-15 | 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연구                    | 한종희                 |
| 2006-16 | 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 방안             | 이광희                 |
| 2006-17 | 주요국 성과평가시스템 비교연구                          | 김 신<br>서원석,<br>배귀희  |
| 2006-18 | 인사개혁 로드맵 과제 성과평가                          | 정재명,<br>박홍엽,<br>강여진 |
| 2006-19 | 21C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 연구                   | 배귀희                 |
| 2006-20 |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 정착방안                          | 최순영                 |

|         |                                                 |                 |
|---------|-------------------------------------------------|-----------------|
| 2006-21 |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                            | 권경득<br>(객원)     |
| 2006-22 |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 박홍엽             |
| 2006-23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황혜신             |
| 2006-24 | 정부부문 팀제와 인사제도의 정합성                              | 서원석             |
| 2006-25 | 주요국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정재명             |
| 2005-26 | 공무원단체교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강여진             |
| 2006-27 | 공공기관 기능 및 인력 재검토 추진방안                           | 권오성             |
| 2006-28 | 정부산하기관 예산과목구조 표준화에 관한 연구                        | 이권훈<br>(삼일회계법인) |
| 2006-29 |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 권오성             |
| 2006-30 | 예산관리시스템 개혁연구 총서                                 | 혁신변화관리센터        |
| 2006-31 | 정부혁신의 이해Ⅱ<br>-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론구조와 실천논리-            | 은재호             |
| 2006-32 |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 은재호             |
| 2006-33 | 혁신과제 추진상의 저해요인 분석                               | 윤경준<br>(충주대)    |
| 2006-34 | 정부혁신이 행정문화와 공무원 행태에 미치는 영향                      | 황성원             |
| 2006-35 | 정부혁신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민정             |
| 2006-36 | 혁신평가 시스템 진단<br>-평가방식을 중심으로-                     | 장현주             |
| 2006-37 | 정부혁신 성과지표 개발                                    | 황성원             |
| 2006-38 |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                                     | 이중수<br>(한국행정학회) |
| 2006-39 | 정부부처 성과관리 혁신방안 연구                               | 박광국<br>(서울행정학회) |
| 2006-40 | 한국 정부혁신의 남미전과 및 확산 연구<br>-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이윤식<br>(한국정책학회) |

## ◆ 2006년 NGO 협동연구과제 ◆

- |          |                                                                    |                    |
|----------|--------------------------------------------------------------------|--------------------|
| 06-20-01 |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V)<br>-국정운영과정에서의 NGO 활동실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 박중훈                |
| 06-20-02 | 국정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NGO 참여실태분석<br>및 관계 개선 방안                         | 윤광재<br>(영남대)       |
| 06-20-03 |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 김선희<br>(고려대 산학협력단) |
| 06-20-04 | 남북관계 개선 및 활성화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과<br>지원방안 모색<br>-NGO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 양현모                |
| 06-20-05 | 주요 국제 NGO와 국내 NGO간 교류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김태룡<br>(한국행정학회)    |

### ◆ 학술행사 · 정책세미나 보고서 ◆

- 21세기를 향한 행정개혁의 방향과 전략 (1991. 11)
- 21세기 동북아의 정치 · 사회 변동과 행정의 대응 (1992. 10)
- 유럽공동체의 행정제도와 통상정책 (1992. 5)
- 정부의 조직과 인력관리, 이대로 좋은가? (1993. 5)
-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 개선 (1994. 6)
- 2000년대의 국가경영전략 (1994. 12)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사행정체계 구상 (1995. 9)
- 21세기 한국행정의 과제와 전망 (1995. 10)
- 정부 조직 · 인력관리 어디까지 왔나? (1996.12)
- 새시대의 국정관리(Governance)와 행정 (1997. 9)
- 규제혁파, 새로운 전략과 과제 (1997. 11)
- 정부조직,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1998. 2)
- 지식기반 사회와 정부인력자원관리 (1999. 11)
- 행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000. 7)
- 국민의 정부 중반기 평가 대토론회 (2000. 8)
-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와 전망 (2001. 11)
- 2002년 국정평가 시스템의 진단과 발전과제 (2002. 5)
-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2002.9. 10)
- 정부기관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2002. 10)
- 깨끗한 자치행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2002. 12)
- 아시아지역IASIA회원국간의 네트워크 구축 (2003. 3)
- 정부업무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3. 7)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혁신 (2003. 7)
- IIAS-"e-거버넌스: 민주주의, 행정 그리고 법을 위한 도전과 기회"
- IASIA-정부의 현대화와 거버넌스의 공유를 위한 리더쉽의 구축 (2004. 7)
- 21세기 행정관리 New Paradigm(2005. 10)
- 정부혁신의 추진전략과 미래전망(2005. 12)
-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미래전망(2006. 6)
- 참여정부 정부혁신관리의 이론과 실제(2006. 12)

## ◆ 학 술 지 ◆

계간학술지 『한국행정연구』 60회 발간('92년 봄호~2006년 겨울호)

## ◆ 연구총서 ◆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I (일본의 행정개혁)  
행정개혁추진심의회 최종건의서 및 행정개혁의 추진방안 (1994.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II  
Korea in the Era of Post-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Tasks of Public Administration (1996. 4)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III  
Confucian Thought and Bureaucracy in East Asia (1997. 9)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IV  
지구촌 시대의 한국 V: 회고 50년, 전망 50년 (1998.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V  
정부개혁론 (2002.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VI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002.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VII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2003.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VIII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2004.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IX  
A New Paradigm for Public Management in the 21<sup>st</sup> Century  
(2005.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X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 (2005. 12)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XI  
중국공무원법 입법과정 (2006. 5)
- KIPA 연구총서 시리즈 XII  
Civil Service Reform and Prospect in the future (2006. 8)

## 『KIPA』 정보자료 회원 모집안내

한국행정연구원(KIPA)에서는 아래와 같이 『KIPA 정보자료회원』을 모집합니다.

### 1) 회원의 구분

#### ■ 평생회원:

- a.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 계간지 『한국행정연구』 등의 정보자료를 영구적으로 제공
- b.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초청 및 자료제공
- c. 가입회원: 50만원

#### ■ 일반회원:

- a. 위의 a,b를 1년단위로 제공
- b. 연회비: 6만원

#### ■ 일반구독자:

※ 낱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원으로 연락하시거나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원가입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02) 2007-0602-4 (운영지원부 행정지원팀)로 연락후에 해당되는 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예 금 주: 한국행정연구원
- b. 계좌번호: 839-01-0030-147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

## 〈〈기관회원제 안내〉〉

### 1. 제공자료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계간학술지 『한국행정연구』 등의 정보자료를 제공함.

### 2. 가입기간

연중 언제나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됨.  
계속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종료전에 재가입 요망.

### 3. 연 회 비: 10만원

### 4. 가입방법: 아래 은행예금계좌로 회비를 불입함과 동시에 회원이 됨.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 839-01-0030-147(예금주: 한국행정연구원)

※ 주 소: (135-08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서울상록회관]  
한국행정연구원

※ 문 의 처: KIPA 정보자료회원 담당자 정환집 직통 (02) 2007-0604  
운영지원부 행정지원팀 / FAX : (02) 564-2013



## KIPA 연구간행물 위탁판매 실시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실무자와 행정학자, 행정학도들의 연구간행물 구입편의를 위해서 각종 연구보고서와 계간지 『한국행정연구』를 서울과 지방의 아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 지 역       | 서 점 명        | 전 화 번 호           |
|-----------|--------------|-------------------|
| 서울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02) 394-0337      |
|           | 정부간행물센터 직영서점 | 02) 734-6818      |
|           | 교보문고(광화문)    | 02) 397-3628      |
|           | 영풍문고(종로점)    | 02) 399-5632      |
|           | 영풍문고(강남점)    | 02) 6282-1353     |
|           | 리브로(을지점)     | 02) 757-8991      |
|           | 반디앤루니스       | 02) 6002-6071     |
| 부산        | 영광도서         | 051) 816-9500     |
|           | 동보서적         | 051) 803-8000     |
| 광주        | 삼복서점         | 062) 222-0258     |
| 인터넷<br>서점 | yes 24       | www.yes24.com     |
|           | 알라딘          | www.aladdin.co.kr |

### KIPA 연구보고서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

2006년 12월 27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연구책임자 장 지 원  
발행인 정 용 덕  
발행처 韓國行政研究院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전화 : 2007-0513  
팩스 : 564-2006  
인쇄 대한인쇄사  
전화 : 2279-7834

© 韓國行政研究院 2006  
ISBN 89-5704-177-X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